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773-01

대외협력

국가별 환경분석 ...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모델 연구

A Study on Model For Establishing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2020. 12.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2020년도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대외협력 - 국가별 환경분석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모델 연구

International Cooperation

A Study on Model For Establishing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2020.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외협력 - 국가별 환경분석 -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모델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 구 기 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연 구 책 임 자 :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참 여 연 구 원 : 장인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국문 요약



본 연구는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IP 환경분석 및 전략도출을 위한 분석 방법 및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 (ii)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절차, (iii)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지표, (iv)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모델 구축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하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WIPO에서 발간한 국가 IP 전략방법론(2016)과 이미 국가 IP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IP 전략 수립 절차 및 지표를 상세히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 국가 IP 전략 수립 프로세스

1. 사전준비단계

- (1) 국가 IP 전략 수립 목적 파악: 전략 수립국의 IP 전략을 수립하는 이유와 목적을 파악한다.
- (2) 컨설팅 팀: 해당국의 국가 IP 전략 수립을 지원할 컨설팅 팀을 설치한다.
- (3) IP 분야별 이해관계자 선정: IP 창출, 활용, 보호, 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 등 컨설팅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를 구성한다.

▼ 표 1 | 국가 IP 시스템의 주요 분야(예)

IP 분야	내용
IP 창출	IP 창출을 지원하는 구조 및 정책을 의미
IP 활용	IP 권리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구조 및 정책
IP 보호	IP 권리의 보호 범위나 대상 등을 포함한 국가의 IP 법률을 의미. IP 법률에 포함된 세부 사항은 IP 권리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권리침해에 적용되는 집행 관련 조항을 포함
IP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출원 및 등록을 포함하여 IP 권한을 관리하는 정부 기능과 이러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자원을 의미 • IP 권리를 침해 할 경우 민사, 행정 및/또는 형사 절차와 구제 수단을 통해 IP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IP 집행 메커니즘을 의미

2. 제1단계: 컨설팅 팀의 사전준비

대상국 국가 IP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컨설팅 팀이 사전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1) 대상국에 대한 프로 파일 검토

국가 IP 전략 수립 대상국이 지식재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이는 대상국의 사회 전반적인 환경과 지식재산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 표 2 | 대상국가의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요소

구분	검토 항목
1. 지리적 현황	지역, 평균고도, 지형, 기후 등
2. 인적 요소	인구, 연간 인구 증가율, 종교 등
3. 경제적 현황	GDP, GDP 성장률, 일인당 GDP, 천연자원, 무역 현황 등
4. 정부 형태	정부유형, 헌법, 행정구역 등
5. 교육	초, 중, 고, 대학의 교육, 대학 수, 연구소 수 등
6. IP 관리 기관	산업재산, 저작권, 식물 육종가 권리, 전통지식 및 유전 자원 등 IP 분야별 관리기관 현황 등
7. IP 법률 현황	IP 관련 각종 법률 현황

(2) IP 전문가 확보 및 과업준비

대상국의 국가 IP 전략 수립을 자문해 줄 수 있는 현지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대상국에서 IP 전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과업을 준비한다.

(3) 대상국의 IP 전략 수립팀과의 국가 IP 전략 수립 프로그램 협의

컨설팅 팀과 대상국 IP 전략 수립팀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 IP 전략 수립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 표 3 | 국가 IP 전략 개발을 위한 작업계획

S/N	활동	년(분기 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	국가 IP 전략 수립 승인					
2	프로젝트 팀을 임명					
3	전체 프로세스에서 프로젝트 팀을 교육					
4	데스크 조사 수행					
5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데이터 수집).					

S/N	활동	년(분기 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6	IP 환경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국가 전문가 회의					
7	최종 환경분석 보고서 준비					
8	최초의 국가 IP 전략 초안을 개발.					
9	최초 국가 IP 전략의 초안 검증을 위한 전문가 회의					
10	국가 IP 전략 초안 준비					
11	이해관계자 포럼에 초안 발표.					
12	국가 상담 중에 얻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최종안을 준비					
13	최종 전략 문서를 준비					
14	도입을 위해 정부에 제출					
15	도입 전략 수립					

3. 제2단계: 데이터 수집절차의 기획과 관리(환경분석단계)

(1) 데스크조사

일반적인 문헌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1. 국가의 장기개발 계획의 존재여부와 전략 목표
2. 국가의 주요 경제 및 사회적 목표와 관련된 주요 전략 부분
3. IP 전략을 통해 위의 국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컨설팅 팀과 대상국 국가 IP 전략 수립팀은 다양한 기관 및 정부 부처의 웹사이트, 도서관 등에 접속하여 국가 IP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1. IP를 담당하는 사무소의 위치, 해당 사무소가 정부 부처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부서인지의 여부, 또는 반자율 단체인지 여부
2. 해당 국가의 다양한 유형의 IP 권리(산업재산, 저작권, 식물품종법 및 전통지식)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
3. 해당 국가의 다양한 유형의 IP 권리에 적용되는 법률
4. IP 권리의 활성화, 창출, 사업화, 법집행을 위해 해당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인프라
5. IP 시스템과 관련한 해당 국가의 국제적 의무

(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1) 데이터 수집계획: 대상국의 IP 환경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계획을 마련한다.

2) 수집이 필요한 데이터

1. IP 권리와 관련된 기존의 법적, 행정적 및 법집행 구조는 물론 경제, 사회 및 문화 개발과 관련된 국가 정책 및 전략에 대한 데이터
2. 기존의 비즈니스 및 혁신 지원 인프라와 국가 정책 및 전략 등이 있는 경우, 이것들은 비즈니스를 촉진 및 지원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대학 및 연구 개발 기관이 IP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3. IP 시스템의 사용 수준은 각 부문과 각 유형의 출원인과 관련된 IP 권리의 출원, 등록 및 허여 수를 고려
4.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IP와 공공 정책 영역 관계성이 있는 데이터
5. IP가 개발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재의 IP 시스템과 국가의 전략적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채우기 위한 국가적 요구
6. 유엔 및 기타 정부 간 기구(IGO)에 의해 수행된 IP 및 기존에 있는 관련 이니셔티브.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무역 지원, 민간 부문 개발, 무역 관련 기술 지원 및 입법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다른 IP 관련 기술 지원 제공자(즉, 미국 특허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과 같은 조직),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를 지원도 포함
7. 해당국의 국내외 거시경제, 산업동향 분석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를 발굴하고, 대상국에 필요한 지식재산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변화될 세상에 대한 지식재산 이슈를 예측하여 정책화할 수 있는 데이터

3) 데이터 수집 대상자

기본적으로 IP 관련 업무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IP 법률 제정 또는 IP 권리 출원 처리를 담당하는 지식재산청(특허청) 공무원
2. IP 변호사, 기술 관리자, IP 평가자 및 감사자와 같은 IP 전문가
3. IP 권리 법집행을 다루는 공무원 및 대리인
4. 공공 부문 또는 민간 부문에서 활동하는 발명가 및 창작자
5. 단체 관리 조직, 출판사 협회, 음악 협회, 발명가 및 제작자 협회와 같은 비즈니스 지원 협회
6. 혁신적인 상업 기업 개발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및 기관
7. IP 자산의 상업적 이용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책임이 있는 공무원 및 대리인
8. 산업, 무역, 농업, 건강 및 환경과 같은 주요 경제 부문의 공무원

4) 데이터 수집절차

기관에 대한 개별 방문하거나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인터뷰 또는 이들 2가지 방법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4. 제3단계: 국가 IP 전략 수립 대상국의 전문가에 대한 의견 청취

지식재산 현안 및 핵심 어젠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민간위원, 관계부처,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현안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정부,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집된 데이터 공유 및 이해관계자의 국가 IP 전략 참여를 권장하기 위함이다.

5. 제4단계: 국가 IP 전략 초안 작성의 기획 및 관리

(1) 전략적 목적과 목표의 기준

IP 환경분석 단계에서 밝혀진 약점 부분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강점 부분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IP 시스템 요소의 분석이다.

(2) 초안 작성시 고려 사항

- 1) IP 전략과 국가개발 아젠다와의 연결
- 2) 비전, 미션 및 목표 설정
- 3) 목적 및 전략설정: 주요 지표를 고려
- 4) 특정 프로젝트 등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 5) 국가 IP 전략 조정기구: 국가 IP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 조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
 - 첫째, 국가 IP 전략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부처 간 기구)로 구성된 상위 기관
 - 둘째, 국가 IP 전략 운영위원회 설치
 - 셋째, 단위조직 마련. 즉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전략 수행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 / 그룹에 일상적인 지원 제공

6. 제5단계: 벤치마킹 및 대표사례 적용

(1) 대표사례 벤치마킹

국가 IP 전략을 이미 수립한 국가가 운영하는 IP 시스템 중에서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2) 벤치마킹 절차

1) 아래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1. IP 시스템의 어떤 측면이 벤치마킹되는가
2. 어느 국가의 IP 전략이 벤치마크로 사용되는가
3.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는가

2)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비교

1. 대표사례 벤치마크 국가의 성과는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성과는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3. 그 나라들은 어떤 면에서 더 우수한가.
4. 우리는 그 나라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5. 우리는 어떻게 그들 나라에서 배운 교훈을 우리나라의 IP 전략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가.

3) 벤치마크 국가 선택기준

이하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벤치마크 국가를 선택한다.

- 경제발전의 같은 단계에 있는 국가
- 더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달성한 국가
- 자원이 비슷한 국가.
- 귀하의 국가에서 구현하려는 IP 시스템의 특정 요소에 대해 최근에 경험이 있는 국가
- 미래의 경제 개발 계획이 유사한 국가
- 특정 IP 요구 사항이 유사한 국가
- 귀하의 국가가 속한 것과 동일한 경제 블록에 속하는 국가
- 국제 조약, 의정서 및 협약
- 경쟁력

7. 제6단계: 국가 IP 전략 초안 마련

□ 국가 IP 전략 수립 지표 설정

1. 단계별 주요 고려

IP 환경은 대상국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개도국과 같은 경우에는 IP에 대한 기본적인 거버넌스, 즉 지식재산청의 기능이나 역할, IP 출원 등에 대한 시스템, 각종 국제규범 등을 비롯하여 IP 거버넌스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 1단계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사용하여 IP 환경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대상국의 IP 전략을 수립하여 전략을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지표(안)

지표는 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IP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한 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2단계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표 4 | IP 거버넌스 구축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지표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1단계	IP 거버넌스	1. IP 행정 및 관리	특허청의 법적 지위	
			특허청의 자율성	
			특허청의 주요 기능	
			특허청의 직원 및 인적자원 개발 계획	
			방식 및 실제 심사	
			특허청의 자동화 및 현대화	
			산업 재산권	IP 출원 및 권리부여
			IP에 대한 국내법	
			IP 법원	
			TRIPS 준수	
		TRIPS에서의 유연성(강제 라이선스 및 병행 수입)		
		국제 계약, 조약 및 의정서 준수		
		IP 등록 전문가(변호사 및 대리인)		
		저작권	저작권 부서의 법적 지위	
			저작권 부서의 자율성	
			저작권 부서의 주요 기능	
			저작권 부서의 직원 및 인적자원 개발 계획	
			국가 문화 정책	
			저작권 및 관련 산업의 경제적 영향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신지식 재산권		창조적 산업 촉진	
			단체 관리 조직	
			전통지식과 민속	
			IP 및 정보 통신 기술(ICT)	
		신지식 재산권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법적 지위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자율성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주요 기능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 직원 및 인적 자원 개발 계획	
			농업 정책	
			유전자원과 제품	
			지리적 표시	
			식물 다양성 권리의 사업화	
		사업 협회		
		IP 권리 집행	지적재산권 집행에 적용되는 법률	
			IP 집행 범위	일반
				민사(또는 행정) 절차 및 구제
	임시 조치			
	국경 조치			
			형사 절차 및 처벌	
			IP 집행 기관	
			IP 집행 담당자	
			대중/소비자 교육 및 인식 제고	
	IP 창출		과학 기술 및 혁신(STI) 정책	
		산업 혁신 및 특허 프로모션		
		IP 정책		
		연구 개발 자금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국가 혁신 시스템		
		기술 및 IP 정보 서비스		
		IP 인식 및 홍보 프로그램		
	IP 활용	기술 이전 기관(TTO)		
		IP 자산의 평가		
P 자산의 상업화 자금 조달		금융 상품		
		담보		
		사업 계획		
		재무보고		
		민영화		
		수익 창출 또는 유동화		
	벤처 캐피탈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조인트 벤처 또는 합병
		정부 금융 기관
		IP 자산의 라이선싱
		비즈니스(기술) 인큐베이션
		제품 및 프로토타입 개발 시설
		과학 기술 단지
		기술 이전 정책
		IP 상업화 전문가(평가, 감사, 라이선스 및 기술 관리자)
		저작권 부서의 법적 지위
		저작권 부서의 자율성
		저작권 부처의 주요 기능
		저작권 부서의 직원 및 인적자원 개발 계획
		국가 문화 정책
		저작권 및 관련 산업의 경제적 영향
		창조적 산업 촉진
		단체 관리 조직
		전통지식과 민속
		IP 및 정보 통신 기술(ICT)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법적 지위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자율성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주요 기능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 직원 및 인적 자원 개발 계획
		농업 정책
		유전자원과 제품
		지리적 표시
		식물 다양성 권리의 상업화
		사업 협회
		지적재산권 집행에 적용되는 법률
	IP 집행 범위	일반
		민사(또는 행정) 절차 및 구제
		임시 조치
		국경 조치
		형사 절차 및 처벌
		IP 집행 기관
		IP 집행 담당자
		대중/소비자 교육 및 인식 제고

▼ 표 5 | IP 전주기적 세부 정책 강화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지표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정의/의미	측정방법
2단계	IP 창출체계 촉진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R&D 전 과정에서 IP 전략 적용 및 확대, 특허전담관제도 도입, IP-R&D 지원 등으로 특허의 질적 수준 제고	정부R&D 우수 IP 비율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추진	국가R&D-특허-표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표준화 성과 평가	표준특허 확보 비율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R&D 기획 시 특허정보 활용 확대, 지재산 선점 가능성을 고려한 기술 로드맵 구축 지원 성과 평가	특허동향조사 분석 실시 비율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기기-콘텐츠-플랫폼 통합 추세 대응, 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융합형 콘텐츠(가상현실 3D 홀로그램) 육성 성과 평가	콘텐츠 수출액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유망 문화기술 *에 대한 R&D 투자 확대	문화기술R&D에서 콘텐츠 스타트업비중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창출 기반 마련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 권리화 및 해외진출 지원, 디자인과 기술R&D의 융합 및 전문인력 고도화 성과 평가	디자인 국제경쟁력 순위
		창조적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소규모 연구자 그룹의 기초연구, 도전적·창의적 연구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창의력 중심 평가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 특허수
		개방형 연구개발 및 해외 우수인재의 활용 촉진	산학연 협력연구 사업 우대 강화, 해외 우수 지식재산 창출인력의 유치 및 교류 활성화, 연구소, 연구자 간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성과 평가	국제공동연구비 비중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 고도화	기관별 보유 IP에 대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 평가 및 관리규정 마련 등 우수 지식재산 중심 관리 성과 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재산 전문인력 확보율
	중소기업의 핵심·원천 특허 창출 역량 강화	지재산 경영전략 수립 지원 및 분쟁대응 등 강한 지재산 창출 및 확보 지원 성과 평가	전담인력 보유 중소기업 비율	
	IP의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 질서 구현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관리 강화를 통해 IP의 활용가치 제고	보유특허 수 대비 자사 활용, 타기관 이전, 현물출자 등의 활용 건수의 비율
		IP·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공공연구기관의 IP를 이전받은 기업의 사업화 지원 펀드 마련	특허기술 사업화 펀드 확대 (특허기술 사업화 펀드 조성규모)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마련(신규)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조성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중심의 IP 금융 고도화	은행이 조성한 NPE 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한 재원 확충	IP 투·융자 규모 (IP 금융·IP 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투·융자 규모)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정의/의미	측정방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치평가·금융지원 확대	문화기술R&D 투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확충	가치평가연계 펀드조성 금액
		문화계정 투자자원 조성금액	문체부	
		신규 콘텐츠 기업 육성펀드금액	콘텐츠진흥원	
		완성보증제도 활성화/지원 금액	문체부	
		IP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IP 서비스업 관련 인프라 확대 및 전문인력 수급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 육성	IP 서비스산업 규모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마련(신규)(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조성 규모)	TLO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미활용 기술의 아웃소싱을 통한 이전 및 공동 기술 사업화 등 성과확산 평가	기업의 온라인 거래시스템 DB 활용률
		공공·공유 지식재산의 상업적 이용 확대	국유특허 공공정보 활용 촉진, 공유저작물 수집 관리체계 구축, 저작물 이용환경 개선 등 성과 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연구생산성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강한 특허 풀 확보를 위한 창의자본 조성 운용 성과 평가	기술신탁 이전 건수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	기술가치 평가와 금융상품 간 연계 강화 및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투·융자 활성화 유도 성과 평가	창의자본 조성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서비스산업 실태 조사 분석, 표준산업 분류 내 독자적 분류체계 마련 및 관련법령 정비 성과 평가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시장 규모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중소기업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유용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성과 평가	중소기업 기술임치 건수
	불공정한 권리남용에 대한 대응 강화	지재권 남용 사전예방 기능 강화 및 국가간 부처간 공조 강화 성과 평가	동반성장협약 체결 기업 수(누계)	
IP의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강화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보호 강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선진화	24시간 온라인 침해 감시 시스템 및 긴급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여 불법복제물 등 저작물 침해율 저감	저작권 침해율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IP 보호체계 정비	SW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단속 강화	SW 불법복제율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	적정 심사처리 기간 유지를 위한 심사인력 증원 및 효율적 운영, 맞춤형 심사 처리제도 내실화 성과 평가	특허 심사처리기간
		지식재산 침해물품 불법 유통 방지 체계 구축	새로운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온라인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성과 평가	저작물 합법시장 침해율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국경조치 강화를 위한 단속시스템 개선, 신고 침해여부 판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성과 평가	지식재산 보호지수(IMD)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정의/의미	측정방법
		해외 지재권 보호 기반 조성	해외 지재권 침해실태 조사 및 관련 정보 동향 제공 등 지재권 침해 예방 인프라 구축 성과 평가	해외진출 저작물 인증 건수
		침해 대응 현지 지원 체계 구축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기관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설치 확대, 지재권 소송보협제도 이용 활성화 성과 평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컨설팅 건수
		지재권 소송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성과 평가	심결 취소율 제고
		산업재산 심판의 신속성 제고 및 품질 고도화	심판관 역량 강화 및 심판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심판관 내실화 추진 성과 평가	심판처리기간 단축
IP의 기반조성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성과 평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기업 비율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지재권 보유 활용의 균등 기회 제공 및 접근성 제고 성과 평가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창출 비율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강화	인력 수급 현황, 미래예측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인력 육성 활용 및 처우개선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성과 평가	지식재산 연구인력(누계)	
	지식재산 지원인력 양성	법조인력(변리사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성과 평가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누계)	
	지식재산 선도대학을 설치하고 IP 커리큘럼을 내실화하여 IP 교육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 선도대학 수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데이터 보급 및 확산	국가지식재산 표준분류체계 수립, 지식재산 통합 포털 구축 등을 통한 지식 확산 활용 기반 마련 성과 평가	산업재산권 정보 건수	
	IP 국제공조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생물·유전자원 관련 신 국제규범 대응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선도	국제규범 형성과정 적극적 참여, 국가간 법 제도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지식재산제도 선진화·효율화 성과 평가	지식재산을 활용한 ODA 사업 수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역실정에 적합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법체계 마련 등 지식재산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조성 성과 평가	지역 기업 대상 지식재산 컨설팅 회수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	신품종 육종 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	연구단지 센터 조성, 인턴제를 활용한 육종 인력 양성, 전략 품목 R&D 투자 확대 등 품종개발 기반 구축 성과 평가	식물 품종보호 출원 건수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정의/의미	측정방법
		품종보호 체계정비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	품종보호제도 실시기관 간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개도국 품종보호제도 정착 지원 등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 성과 평가	신품종 종자수출액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 창출지원	정기적 생물자원 실태조사, 생물자원 발굴 확보,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 확보 기반 구축 성과 평가	고유 생물자원 확보 수
		전통자원 기반 창작·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전통자원의 개발가치 평가 및 복원 재생 방안 연구, 전통자원 기반 창작 개발 활성화 지원 성과 평가	전통지식자원 활용 소득화사업 지원 수
		전통자원 관련 국제적 대응 및 제도개선 추진	민·관 합동으로 전통자원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성과 평가	무형문화유산 국가대표 목록 수
		식별표지의 창출·활용 강화 및 보호제도 개선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제도 보완, 등록품 품질관리 및 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 성과 평가	지리적 표시품 출하량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퍼블리시티권, TV 포맷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법적 보호 필요성 및 보호 범위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모색 성과 평가	지리적 표시 관련 등록 건수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 2 장	지식재산의 역할과 중요성	5
	제1절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재산의 역할	7
	1. 이노베이션(혁신)과 지식재산	7
	2. 경제발전과 지식재산	10
	제2절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사례	21
	1. 한국	21
	2. 미국	22
	3. 유럽	24
	4. 일본	25
	5. 중국	26
	6. 인도	27
	7. 싱가포르	28
	8. 베트남	29
 제 3 장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 수립 절차 분석	31
	제1절 서설	33
	제2절 WIPO 지침상의 국가 IP 전략 수립 절차	34
	1. 개요	34
	2. 프로젝트의 기획과 관리	34
	3. 데이터 수집절차의 기획과 관리	38
	4. 대상국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전문가 그룹 회의)	41
	5. 국가 IP 전략 초안 작성의 기획과 관리	43
	6. 벤치마킹 및 대표사례 적용을 이용한 타킷 설정	49
	7. 국가 IP 전략의 초안 마련	51

제3절 한국	52
1. 개요	52
2.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의 주요 과정 및 절차	52
3. 각 절차별 주요 세부 내용	54
제4절 중국	62
1. 개요	62
2.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정 및 절차	63
제5절 일본	68
1. 개요	68
2.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정 및 절차	70
제6절 소결	74

제 4 장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 개발을 위한 지표 분석 77

제1절 WIPO 지침상의 IP 전략 지표	79
제2절 한국	82
1. 제1차 국가지식재산 전략 지표	82
2. 제2차 국가지식재산 전략 지표	90
3. 소결	94
제3절 중국	96
1.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96
2.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	101
3. 최근 3년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 ..	105
4. 소결	107
제4절 일본	110
1. 2013년 지적재산정책비전	110
2. 2018년 지적재산전략비전	131
3. 소결	140
제5절 소결	142

제 5 장	국가 IP 전략 수립 모델 구축	143
	제1절 서설	145
	제2절 국가 IP 전략 수립 프로세스	146
	1. 사전준비단계	146
	2. 제1단계: 컨설팅 팀의 사전준비	146
	3. 제2단계: 데이터 수집절차의 기획과 관리(환경분석단계)	148
	4. 제3단계: 국가 IP 전략 수립 대상국의 전문가에 대한 의견 청취	149
	5. 제4단계: 국가 IP 전략 초안 작성의 기획 및 관리	150
	6. 제5단계: 벤치마킹 및 대표사례 적용	150
	7. 제6단계: 국가 IP 전략 초안 마련	151
	제3절 국가 IP 전략 수립 지표 설정	152
	1. 단계별 주요 고려	152
	2.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지표(안)	152
제 6 장	결 론	161
	참고문헌	164

표 목차

표 II-1-1	일본 토요타와 한국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Paice와의 분쟁 사례	12
표 II-1-2	지식재산 활동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13
표 II-1-3	미국, 유럽, 한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17
표 II-1-4	유럽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통계와 비중	18
표 II-1-5	미국과 유럽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주당 임금과 임금프리미엄	19
표 II-1-6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 기여도	19
표 II-2-1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5대 전략 및 20개 핵심과제	22
표 II-2-2	2017-2019 미국 지식재산 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의 4대 주요 목표	23
표 II-2-3	미국 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전략의 주요 내용	23
표 II-2-4	유럽연합 상표개혁법의 주요 내용	24
표 II-2-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계획의 주요 내용	25
표 II-2-6	신지식재산전략비전 주요 내용	25
표 II-2-7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	26
표 II-2-8	2019년 베트남 국가지식재산 전략	29
표 III-2-1	국가 IP 시스템의 주요 분야	36
표 III-2-2	대상국가의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요소	36
표 III-2-3	국가 IP 전략 개발을 위한 작업계획(예)	37
표 III-2-4	이해관계자별 역할과 임무	43
표 III-2-5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의 비전 및 목표	44
표 III-2-6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항목 지표	45
표 III-2-7	프로젝트 기반의 접근방법	47
표 III-2-8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설정	48
표 III-3-1	한국의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의 절차	53
표 III-3-2	주요국 국가지식재산 정책 동향	55
표 III-3-3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보완할 점	58
표 III-3-4	의견 수렴 기구	61
표 III-5-1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수립·추진 체계	69
표 III-6-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 수립 절차 비교	74
표 III-6-2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 수립 절차 비교	76
표 IV-1-1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항목 지표	79
표 IV-2-1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주요 성과지표	84
표 IV-2-2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주요 성과지표	91
표 IV-2-3	지식재산 지표 도출 단계	95
표 IV-3-1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 주요 지표	101
표 IV-3-2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 주요 내용	105
표 IV-3-3	2019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 주요 내용	106
표 IV-3-4	2020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	106
표 IV-4-1	신기술의 개념과 응용 사례	132
표 IV-4-2	'가치 디자인 사회'의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키워드와 향후 방향성	136
표 IV-5-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 개발 지표 비교	142
표 V-2-1	국가 IP 시스템의 주요 분야(예)	146

CONTENTS

표 V-2-2	대상국가의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요소	147
표 V-2-3	국가 IP 전략 개발을 위한 작업계획	147
표 V-3-1	IP 거버넌스 구축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지표	152
표 V-3-2	IP 전주기적 세부 정책 강화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지표	155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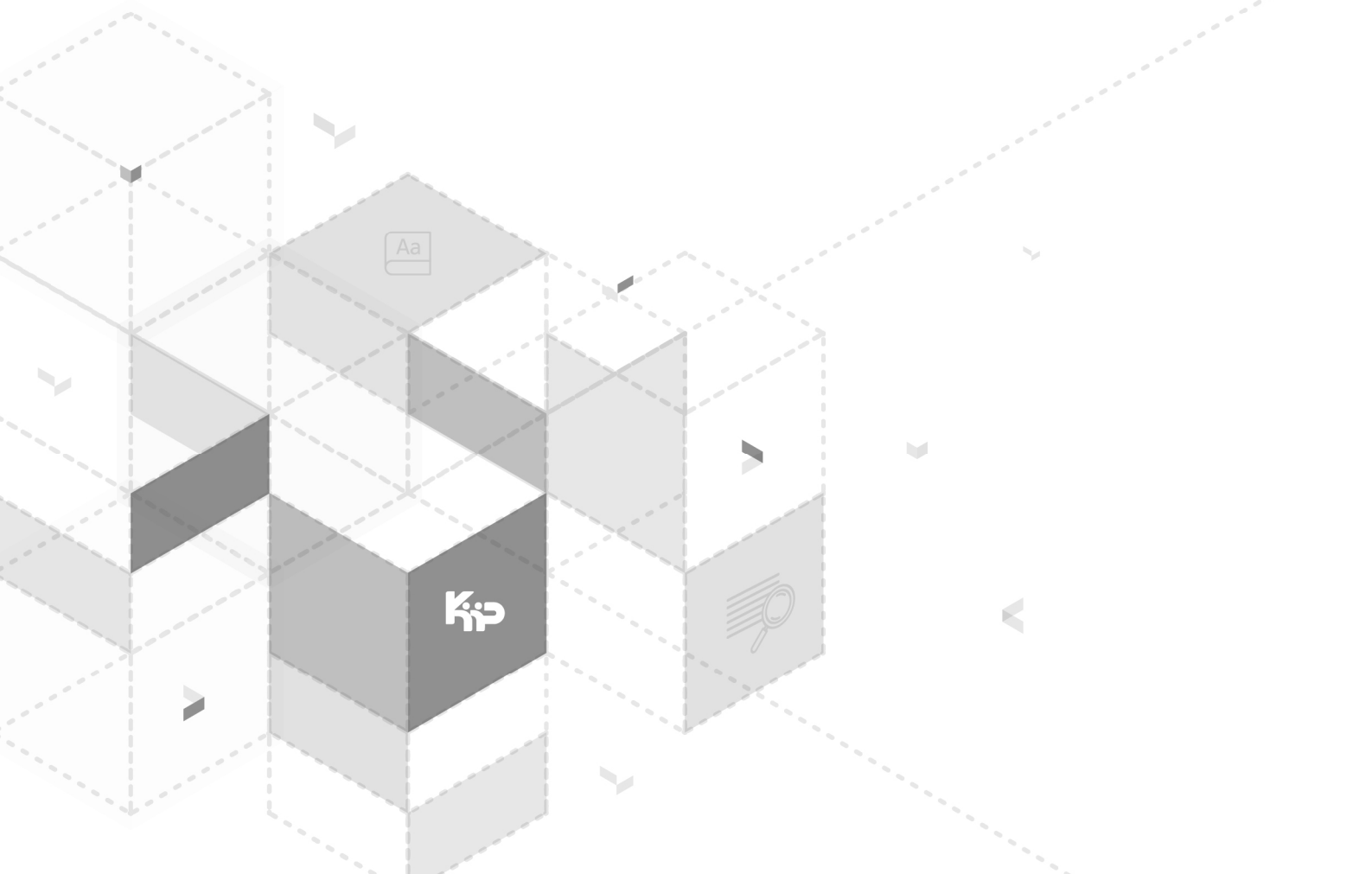
그림 II-1-1	산업혁명과 특허정책의 변화	8
그림 II-1-2	산업혁명의 진화요인과 영향	9
그림 II-1-3	기업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	9
그림 II-1-4	국가별 출원 건수와 GDP(2000~2018)	11
그림 II-1-5	특허 수 증가와 GDP와의 관계	14
그림 II-1-6	S&P 500 기업, 1975-2018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15
그림 II-1-7	세계 500대 브랜드 중 상위 10위	16
그림 II-2-1	싱가포르 지식재산 허브 종합계획의 전략목표 및 지원방안	28
그림 III-3-1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절차	58
그림 III-3-2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59
그림 III-4-1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62
그림 IV-2-1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 목표	82
그림 IV-2-2	2017~2021년 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9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1절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들이 국가지식재산 전략(이하, '국가 IP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 제정, 지적재산전략본부설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03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2010년 6월 미국은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인 "지식재산집행 공동전략"을 수립하였다. 중국도 2005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발표하는 등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2012년 제1차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현재 제2차 지식재산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들 외에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국가 IP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에는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글로벌 IP 허브를 목표로 국가 IP 전략을 수립하였고, 2014년에는 인도가 창조력과 혁신을 강조하는 국가 IP 전략을 책정하였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베트남이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중동(사우디아라비아) 및 동남아(베트남) 등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IP 전략을 수립하거나 추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가 IP 전략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이나 개도국 지원 사업의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현지 국가가 자금을 제공하면서 국가 IP 전략 수립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 지원이나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서 국가 IP 전략 수립 내지는 컨설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모델은 부재한 상황이며, 어떤 분석(IP 환경분석)을 하여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나 분석 모델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다른 개도국 등을 위하여 국가 IP 전략 수립을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국가 IP 전략 수립과 관련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이나 개도국 지원 사업을 위한 선제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국가 IP 전략 수립 방법론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여 IP 환경분석 및 전략 개발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가 IP 전략 관련 연구논문 및 방법론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둘째,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중심으로 국가 IP 전략을 비교·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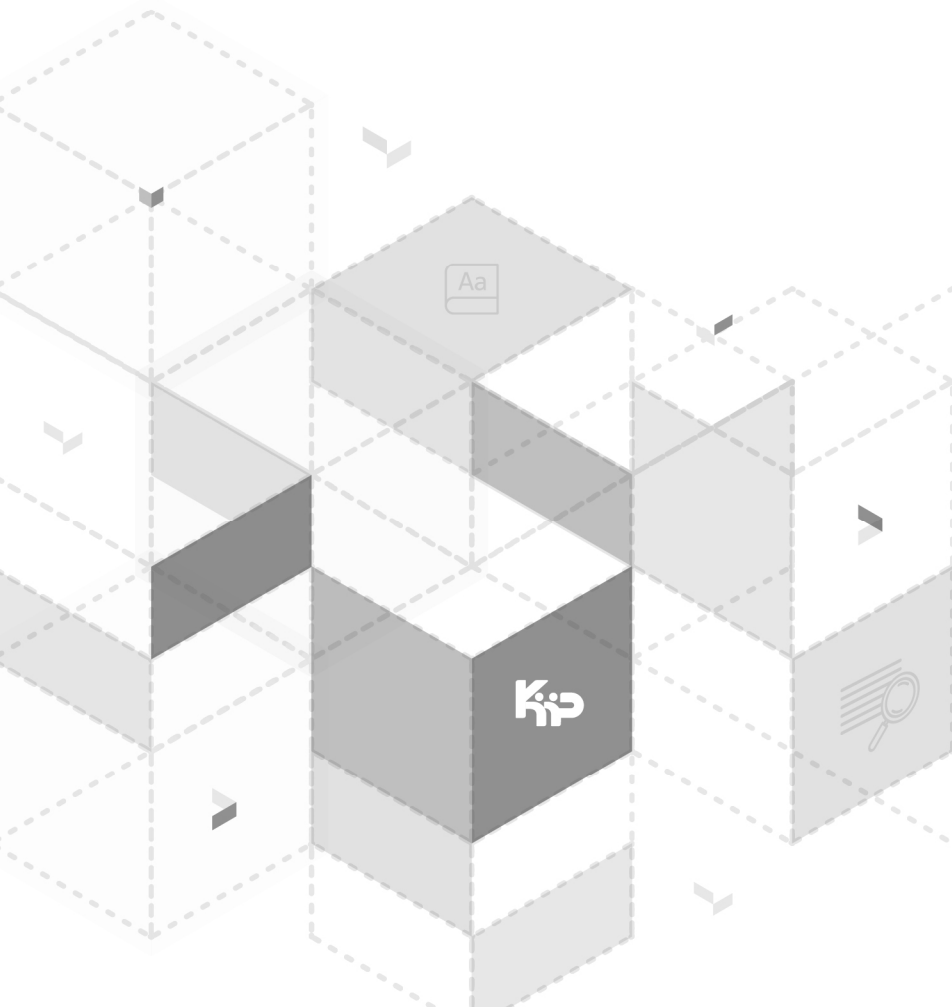
이를 통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및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국가 IP 전략을 선도하는 국가와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 후발 국가 IP 전략을 수립한 국가를 경제여건과 전략목표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하여 IP 분야별로 다양한 지표(indicator), 지식재산법, 행정, 집행, 다른 정책 및 국가 목표와의 관계,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등 중요 요소를 분석한다.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전략 수립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재산의 역할과 중요성

제1절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재산의 역할

제2절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사례



제1절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재산의 역할

1. 이노베이션(혁신)과 지식재산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이란 용어는 1844년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창안한 말이다. 이는 1884년 아널드 토인비의 ‘영국 산업혁명 강의’(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England)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18세기 말 제1차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1세기마다 새로운 진보를 이룩하였으며, 19세기 말 제2차 산업혁명과 20세기 말 제3차 산업혁명이 이를 대변한다.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말 영국을 거점으로 방적기, 증기기관 그리고 제련기술의 등장에 따른 변혁이다. 제1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동력’이었으며, 이는 ‘공장’을 들어서게 하는 원천이었다. 제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 미국을 거점으로 전기 에너지, 컨베이어 벨트가 등장해 발생한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동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이다. 이는 대량생산과 공업화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제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말 미국을 거점으로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IT기술이 등장해 발생한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산업혁명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나, 그 영향력은 세계의 기술, 산업,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뒤바꾸어 놓을 만큼 거대하였다.

이러한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과정에는 지식재산, 특히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영국은 특허제도의 도입과 함께 제1차 산업혁명을 이루었고, 미국은 1980년대 친 특허정책(Pro Patent Policy)을 통해 제2차와 제3차 산업혁명을 일으켜 세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한 바 있다.

▼ 그림 II-1-1 , 산업혁명과 특허정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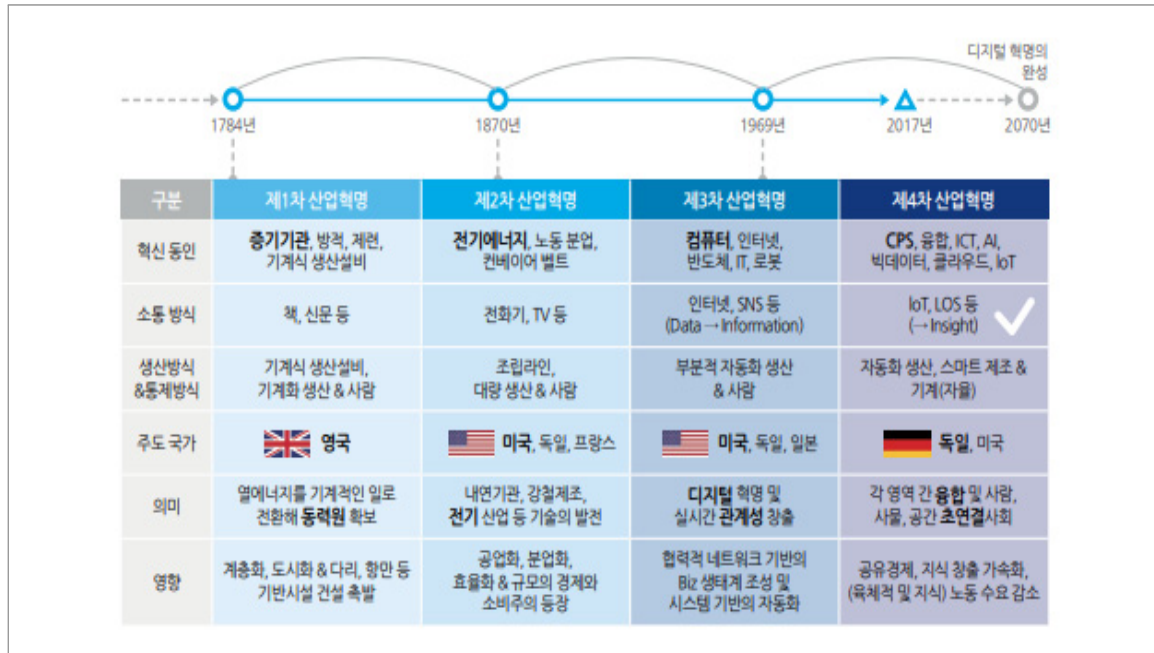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UKIPO, USPTO, IoT Analytics 자료로 재구성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속도에 따라 다뤄지는 정보의 양과 다양성이 기존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존의 산업혁명이 기술혁명으로 촉발되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도 역시 신기술과 관련되어 있다.¹⁾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을 어떻게 가공하고,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1)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3D 프린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기술을 앞세우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10대 기술을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첨단 로봇공학, 신소재, IoT, 원격 모니터링 기술, 블록체인·비트코인·공유경제·온디맨드경제,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라고 한 바 있다.

▼ 그림 II-1-2 , 산업혁명의 진화요인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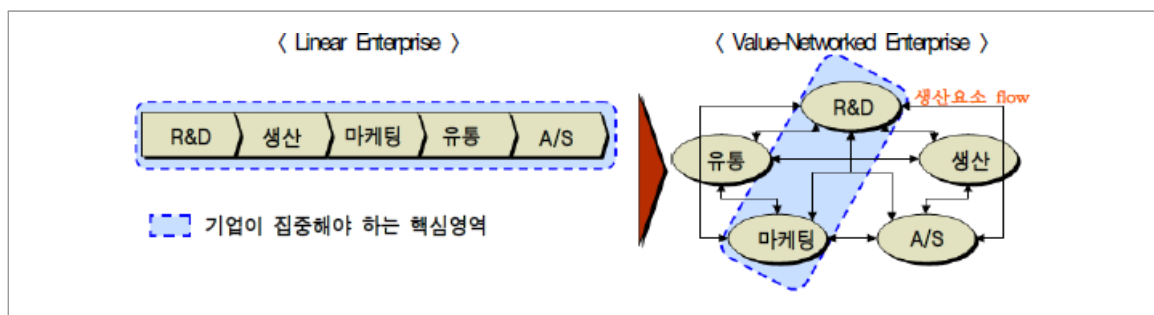


출처: Deloitte Analyst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비즈니스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자원을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하드파워의 시대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끌어내는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 전략에도 나타났다. 최근 10여 년 동안 스마트폰으로의 진화, 모바일뱅킹과 같은 기술간 혹은 산업간 융합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기업은 과거 R&D에서 유통까지 기업 내부에서 이뤄지던 폐쇄적인 구조에서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경쟁력의 우위에 있는 요소에만 집중하고 그 외에는 국내외 다양한 시장에서 조달하는 가치 중심(Value-Networked Economy) 개방형 기업 활동으로 진화하였다.

▼ 그림 II-1-3 , 기업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



출처: 특허청(2009), 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의 과정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²⁾ 지식재산은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촉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지식재산은 기술기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혁신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과정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재산은 혁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2. 경제발전과 지식재산

(1) 지식재산과 GDP

경제 패러다임이 자산기반경제(asset-based economy 또는 old economy)에서 지식기반경제³⁾(knowledge-based economy 또는 new economy)로 변화하면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또는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은 Solow의 성장회계 모형에 따른 총요소 생산성 분석이다. Solow의 성장이론에 대해 여러 학자들⁴⁾이 오랜 기간 동안 검증과 논쟁의 과정을 거쳤고, 성장률의 수렴가설과 외생적 충격으로만 보던 기술진보에 대한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을 탄생시켰다.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학습효과, 인적자본의 형성, 그리고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의 축적이 기술의 진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본다. 지식재산은 총요소 생산성을 구성하는 다른 요인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의 증가는 기술진보를 통해 총요소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가설이다. 또한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강화는 발명가들에게 일시적인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지식재산의 축적과 총요소 생산성의 관계, 지식재산제도 변화와 경제성장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R&D 기반의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혁신이 경제성장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1인당 GDP와 혁신이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연구개발에 따른 혁신의 효과가 OECD와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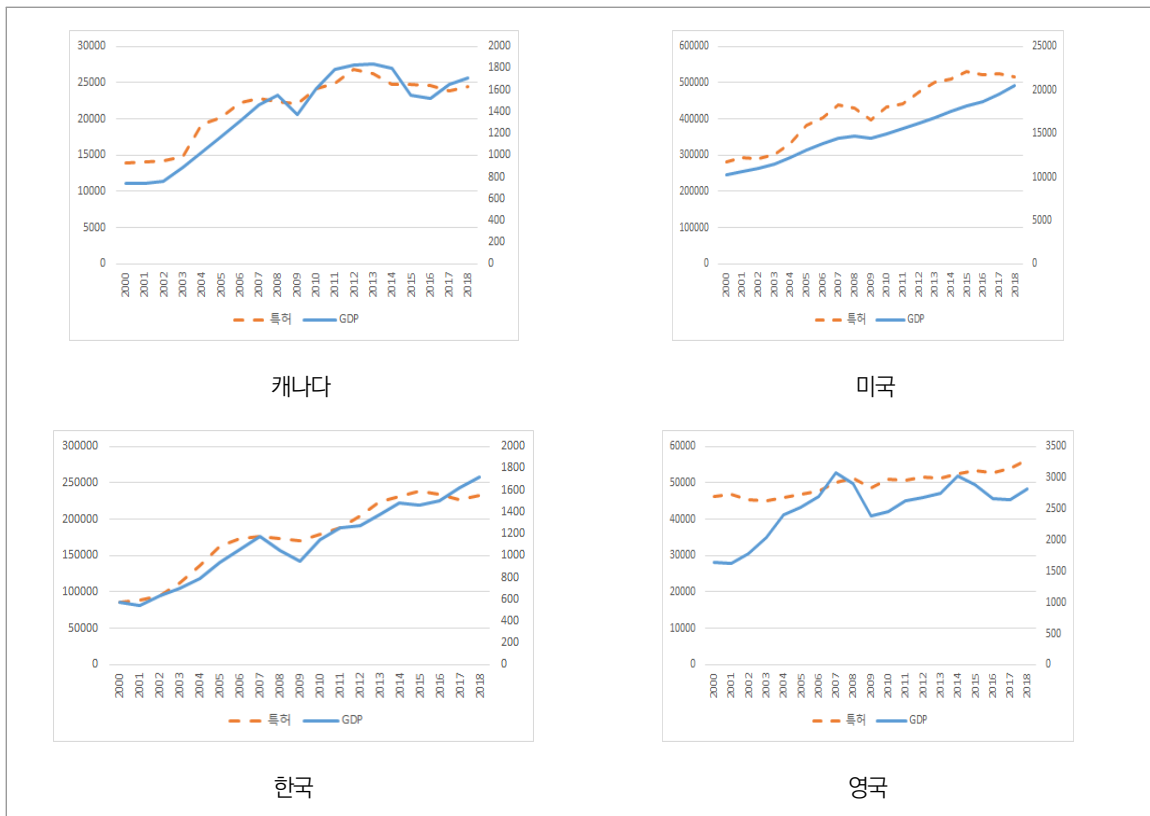
2) KALANJE, Christopher M.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innovation and new product developmen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06.

3) OECD(1996)는 지식기반경제를 지식과 정보의 생산, 분배, 사용에 직접적으로 기초한 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4) Romer(1990), Grossman and Helpman(1991) 및 Aghion and Howitt(1992) 등이다.

큰 규모의 시장에서 유의미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⁵⁾ 또한 특허활동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특허 등록 수가 GDP 증가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GDP 증가에는 R&D보다는 특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그리고 특허 성장과 GDP 성장간의 동태적 연관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G7 국가는 특허 성장과 GDP 성장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가 경제 성장을 유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⁷⁾ 이 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지식재산이 국가경제성장 및 GDP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에 있어 유인제(Driven Material)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그림 II-1-4 | 국가별 출원 건수와 GDP(2000~2018)



출처: WIPO, 대한민국 통계청(KOSIS) 자료 활용

참고: GDP는 당해연도 금액(10억 USD)이며, 특허 출원 건수는 WIPO 출원인 국가별 자료임

5) Ulku(2004)는 R&D기반의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혁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OECD 20개국과 10개 non-OECD 국가에 대해 1981~1997년까지 경제통계와 R&D 통계, 특허통계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 혁신지표는 특허 출원 건수와 R&D 투자액으로 추정하고, 비교 집단을 G7 국가 여부, 시장규모, 소득규모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6) Hasan & Tucci(2010)의 경우 58개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3년까지 특허활동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7) Josheski & Koteski(2011)의 연구는 G7 국가의 1963년부터 1993년까지 분기별 통계를 활용하여 특허 성장과 GDP 성장간의 동태적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II-1-4]의 국가별 GDP와 특허 성장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는 독일과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미국의 경우 GDP 성장과 특허 출원 건수가 유사한 기울기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의 GDP가 특허 출원 건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특허 출원과 GDP가 함께 증가하지만, 최근 특허 출원 건수가 소폭 줄어들면서 GDP도 감소추세에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특허 감소가 나타나고 GDP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 주요국의 GDP와 특허 출원 건수 등 관련 지표에서 특허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특허 출원 건수가 경제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절대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2) 지식재산과 무역

지식재산은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했다라도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다면 뜻하지 않은 지식재산 분쟁에 휘말려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할 수도 있다. 결국 지식재산이 수출에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례로 일본 토요타와 한국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Paice와의 분쟁을 들 수 있다.

▼ 표 II-1-1 | 일본 토요타와 한국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한 Paice와의 분쟁 사례

 TOYOTA 2004년	v.s. 	 HYUNDAI 2012년	v.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토요타는 휘발유와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였고, Paice는 자사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함 • 2012년 한국의 현대 자동차는 토요타의 휘발유 하이브리드 기술과 다른 LPG 기술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Paice가 소를 제기함 • Paice는 토요타와 현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제소하였고, 이후 분쟁 조정을 통해 로열티를 지불함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사례에서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상품을 저가로 공급함에 따라 미국 기업의 수출둔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에도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외에도 지식재산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⁸⁾에서 해외 특허소득(활용특허)의 증가가 OECD국가의 제조업 연간수출 증가율을 1.8%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표 II-1-2 | 지식재산 활동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C^{E,Pat}$	$K^{E,Pat}$	$C^{R\&D}$	$K^{D,Pat}$	Y^*	C^P	X^{Act}
Canada	0.35	1.99	0.10	0.63	0.00	0.19	9.12
USA	0.39	2.03	-0.02	0.71	0.00	0.73	8.61
Japan	0.09	1.50	-0.03	0.30	0.00	-1.78	3.03
Australia	0.14	2.18	0.19	0.37	0.00	1.17	9.00
Austria	-0.54	1.34	0.19	0.14	0.00	2.34	9.56
Belgium	0.35	1.60	0.01	0.52	0.00	-2.56	5.26
Denmark	0.20	2.23	0.18	0.96	0.00	-0.41	5.86
Finland	0.85	2.60	0.25	0.60	0.00	-0.09	7.01
France	-0.52	1.38	-0.05	0.34	0.00	0.74	6.92
Germany	-0.36	1.37	-0.10	0.54	2.18	-0.15	4.86
Ireland	1.14	2.67	0.52	0.55	2.21	0.80	14.7
Italy	-0.42	1.32	-0.09	0.86	0.00	-0.11	5.36
Netherlands	0.24	1.66	0.01	0.69	0.00	0.64	6.56
Norway	0.26	2.28	0.00	0.55	0.00	1.26	5.53
Spain	0.72	2.06	0.24	0.49	1.83	0.66	11.1
Sweden	-0.33	1.92	0.09	0.63	0.00	1.13	7.16
Switzerland	-0.55	1.06	-0.13	0.24	0.00	-0.98	3.65
UK	-0.23	1.63	-0.20	0.25	0.00	-0.29	6.21
Average	0.09	1.82	0.06	0.52	0.35	0.11	7.19

Notes: The simulations are based on the estimates in the fourth column of Table 1. X^{Act} is the actual average growth rate in manufacturing exports during the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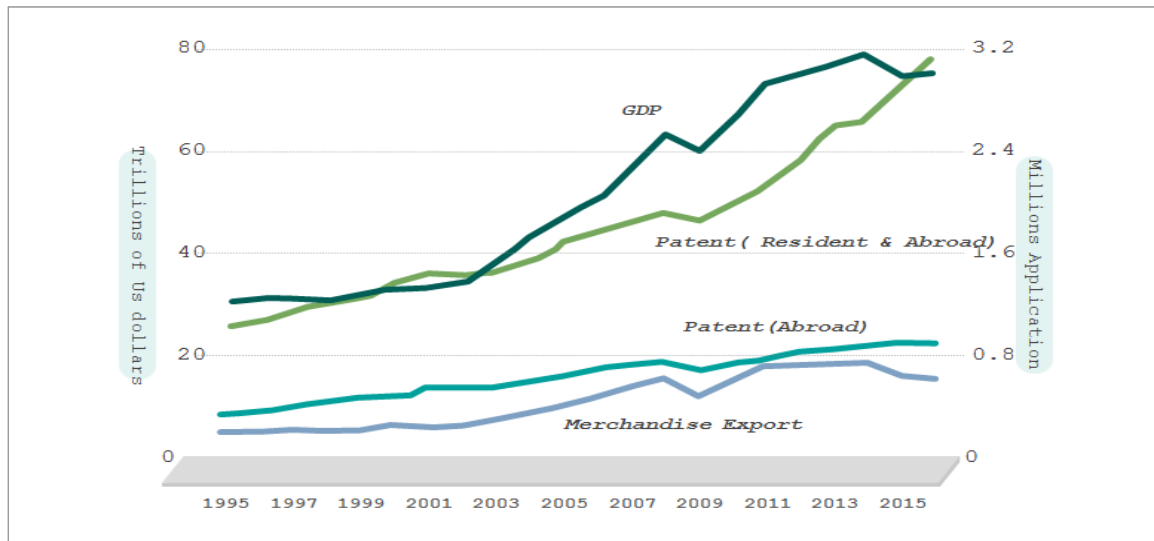
참고: $C^{E,Pat}$ 는 국내 특허소득, $K^{E,Pat}$ 는 해외출원한 특허소득, $K^{D,Pat}$ 는 국내 출원된 특허소득, Y^* 소득을 의미

또 다른 연구⁹⁾에서 독일의 경우는 높은 해외출원율이 단위 노동비용이나 수출단가와 비교하였을 때 수출 증가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또한 특허 출원의 수는 GDP와 국제 무역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8) Madsen(2008)은 OECD 18개 국가의 특허, 상표, 디자인, 연구개발투자, 소득, 관세 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1990년 ~ 200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9) OECD(2010)는 독일의 경제에서 특허활동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 그림 II-1-5 | 특허 수 증가와 GDP와의 관계



특히 최근 124개 개발도상국에서 IP보호 강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¹⁰⁾에서 지식재산권의 증가는 저소득층 국가가 중·소 소득국가에서 IP 집약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활동 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상 소득국가에서 IP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IP 집약 상품 수입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IP 집약적인 상품의 수입품과 국내 발명품이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보였다. 또한 IP와 경제성장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보다는 간접적 효과를 통해 IP와 IP 간 효과와 경제성장과 경제성장 간의 상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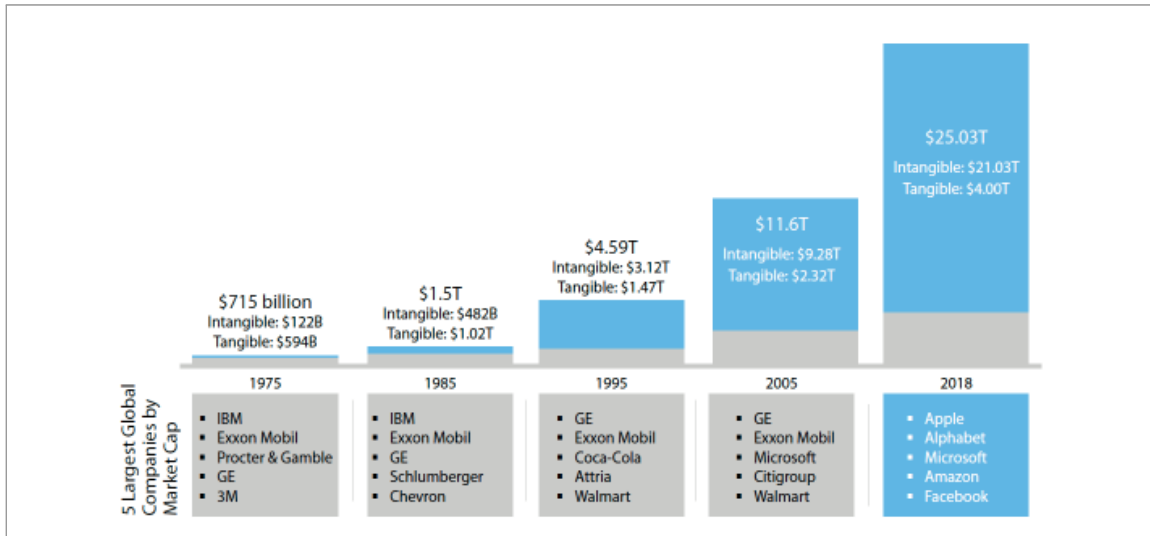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지식재산은 무역과의 관계에서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무역마찰이나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기업 가치와 지식재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 기업 가치에 지식재산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정보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래,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S&P 500 기업의 경우 부동산 및 장비와 같은 유형자산은 회사가치의 16%에 불과하고, 지식재산(IP) 권리와 기업의 평판(reputation)과 같은 무형자산은 84%를 차지한다. 이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유형 자산의 가치보다 5배나 크다는 것이다.

10) Gold et al.(2019)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24개 개발도상국에서 IP 보호 강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그림 II-1-6 | S&P 500 기업, 1975-2018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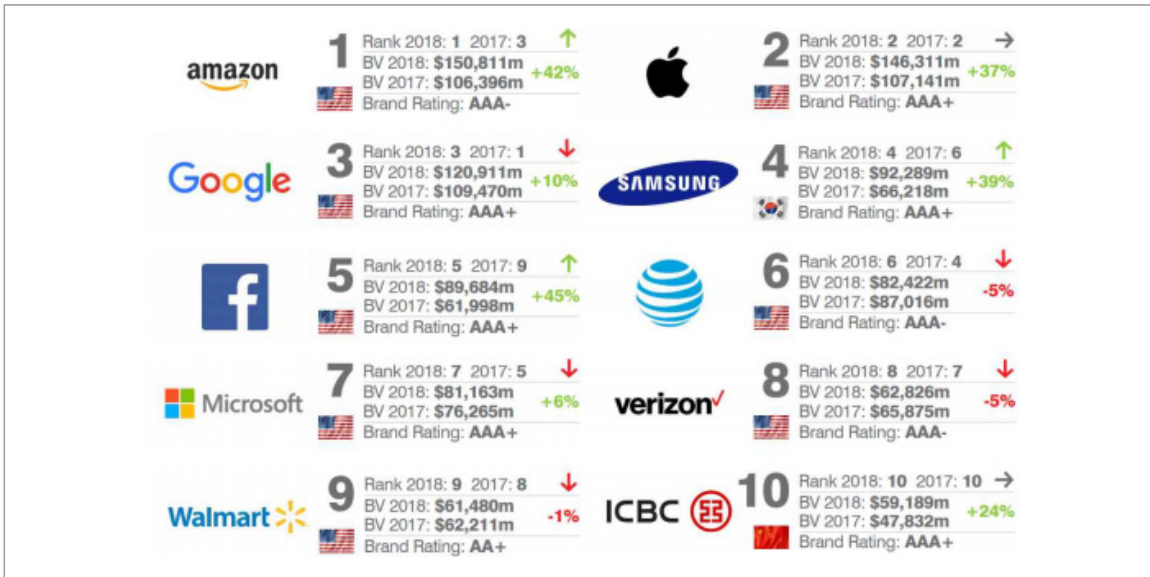


출처: Aon and Ponemon Institute, 2019 Intangible Assets Financial Statement Impact Comparison Report

위 표에서 보면, 1975년 미국의 5대 기업은 IBM, Exxon Mobil, P & G, GE 및 3M이었으나, 2018년에는 Apple, Alphabet, Microsoft, Amazon 및 Facebook으로 바뀌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기업 가치는 결국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을 어떻게 창출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의 활용한 기업의 성과를 잘 보여주는 예는 쉘컴이다. 쉘컴의 주요 수입원에서 통신관련 반도체 생산을 통해 얻는 매출 대비 특허 운영을 통해 얻는 매출은 50% 수준이지만, 특허 운영을 통한 영업이익은 반도체 생산의 약 3배이다. 2016년 글로벌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 26,500건, 중국 13,600건, 일본 13,500건, EPO 13,100건, 한국 11,500건을 출원하였다. 이 결과 2016년 전체 영업이익 83억 USD 가운데 78%인 65억 USD가 특허와 관련된 이익이었다.

이와 함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브랜드 가치가 있다. 브랜드는 기업의 얼굴이며,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브랜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 글로벌 기업의 선정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될 정도로 브랜드 가치는 기업을 대표하는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영국의 브랜드 평가 전문컨설팅 업체인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18년 전세계 브랜드 가치 500대 기업에서 상위 10대 기업은 다음과 같다.

▼ 그림 II-1-7 | 세계 500대 브랜드 중 상위 10위



출처: Brand Finance(2018)

브랜드 가치 세계 1위에는 미국의 아마존이 올랐으며, 그 가치는 1,508억 달러로 2017년보다 42%나 성장하였으며, 2017년 브랜드 가치 세계 1, 2위의 구글과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고 브랜드에 올라있다. 한국기업으로서 삼성의 경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실적과 스마트폰 신제품 성공이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주었다. 삼성은 세계 4위에 올랐으며 그 브랜드 가치는 약 923억 달러에 달한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무형자산의 비중과 중요도 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은 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에 매우 중요한 핵심 자산이기도 하다. 이는 스타트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스타트업(Start-up)의 성장 잠재력은 스타트업 후 1년 이내에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보다 35배, 등록되지 않은 상표보다 5배 더 크고,¹¹⁾ 특허가 부여되지 않은 스타트업은 특허가 없는 스타트업보다 5년 후 수익이 높고, 직원 수가 더 많다는 조사결과도 있다.¹²⁾ 그리고 기업 특허 1건 증가로 국내 기업이 파산 위험이 50.5% 감소한다는 결과도 지식재산이 중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된다.¹³⁾

IP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생 기업의 성장에도 필수적이다.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다. 일례로, 시장가치가 1,300억 달러인 넷플릭스나, 310억 달러인 에어 비앤비 등은 446억 달러인 전통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에 비해 단기간에 시장가치를 뛰어넘고 있듯이, ICT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1) MIT Innovation Initiative(2016).

12) NBER(2016).

13) 한국 지식 재산 학회(2014).

이 밖에서도 기업의 R&D 지출과 더불어 특허권의 보유 수가 많을수록 기업 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¹⁴⁾나 새로운 제품개발에 대한 공시가 기존 제품을 개선한 공시보다 훨씬 더 호의적으로 주가에 반영되었으며, 복수 제품개발에 대한 공시가 단일 제품개발에 대한 공시보다 더 긍정적인 주가반응을 유도한다는 연구 등도 존재한다.¹⁵⁾ 또한 한국의 코스닥 기업 6,040 개를 대상으로 특허권 보유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¹⁶⁾에서 경제적 부가가치와 특허권이 매우 의미 있는 양(+)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권을 보유하거나 보유정도가 많은 표본이 그렇지 않은 표본에 비하여 EVA 평균이 유의적으로 높은 평균 수치를 지니는 모습을 보였다

(4) 지식재산과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은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하다. 지식재산 관련 산업은 소위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부른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이란 경제적 이익의 창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써 다른 산업에 비해 지식재산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유럽특허청(EPO)과 미국특허청(USPTO), 한국특허청(KIPO)에서 분석하여 발표되는 지표이다. 아래 표는 미국, 유럽,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이다.

▼ 표 II-1-3 | 미국, 유럽, 한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단위: 개, %)

지식재산권 유형별 집약산업 (보고서 발행연도)		미국		유럽		한국
		'12년	'16년	'13년	'16년	'14년
산업 재산권	특허	26 (8.3%)	26 (8.3%)	140 (22.8%)	140 (22.8%)	74 (15.5%)
	상표	60 (19.2%)	60 (19.2%)	277 (45.0%)	277 (45.0%)	67 (14.0%)
	디자인	-	-	165 (26.8%)	165 (26.8%)	61 (12.8%)
저작권	저작권	13 (4.2%)	13 (4.2%)	33 (5.4%)	79 (12.0%)	19 (4.0%)
신지식 재산권	지리적 표시	-	-	4 (0.7%)	4 (0.7%)	-
	식물품종 보호권	-	-	-	6 (1.0%)	-
지식재산 집약산업 계1)		75 (24.0%)	75 (24.0%)	321 (52.2%)	342 (55.6%)	152 (31.8%)
전체 산업 수		313		615		478

1)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중복분류됨.

14) Griliches(1981).

15) Chaney and Devinney(1992).

16) 최태희·김문택(2012).

2016년 미국과 유럽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보고서¹⁷⁾에서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75개 산업으로 전체 산업수의 24.0%를 차지하였다. 한편 유럽은 342개(55.6%)의 산업이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분류되었다¹⁸⁾. 한국의 경우에는 100개(44.6%)의 산업이 분류되었다.¹⁹⁾ 미국, 유럽의 지식재산 집약산업 도출 결과에서 미국의 유형별 집약산업 수는 변동이 없는 반면 유럽의 경우, 2013년(321개) 대비 약 21개 산업(342개)이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4년 연구보고서 대비 9개(4.0%p) 증가하였다.

▼ 표 II-1-4 | 유럽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통계와 비중

단위: 백만유로, 명, %

	GDP		고용			
	부가가치/GDP	비중	직접고용	비중	간접고용	비중
특허	5,447,857	16.1%	23,571,234	10.9%	34,740,674	16.1%
디자인	2,371,282	16.2%	30,711,322	14.2%	45,073,288	20.9%
상표	5,447,857	37.3%	46,700,950	21.7%	65,047,936	30.2%
저작권	1,008,383	6.9%	11,821,456	5.5%	15,358,044	7.1%
지리적 표시	20,155	0.1%	-	-	399,324	0.2%
식품품종	181,570	1.2%	1,736,407	0.8%	2,618,502	1.2%
집약산업	6,551,768	44.8%	62,962,766	29.2%	83,807,505	38.9%
EU 전체	14,621,518		215,520,333			

출처: EUIPO(2019)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지식재산 집약산업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별 집약산업의 종사자의 주당 임금과 프리미엄은 다음 표와 같다. 미국²⁰⁾의 경우 2014년 특허 집약산업의 주당 평균임금은 1,560 USD이며, 상표 집약산업 종사자는 1,236 USD, 저작권 집약산업은 1,701 USD로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의 주당 임금 896 USD 대비 특허 74.1%, 상표 37.9%, 저작권 89.8%의 임금 프리미엄이 있었다. 한편 유럽²¹⁾의 경우 특허 집약산업 종사자의 주당 임금은 934유로, 상표

17) USPTO (2016)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2016 Update; EPO and EUIPO (201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Industry-level Analysis Report, 2nd edition.

18)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분류되어 산업은 중복되어 계산되었으며, '16년도 분석에서 유럽은 저작권 집약산업의 인정범위를 핵심저작권산업 뿐 아니라 유통·판매업으로 확대하였고, 식품품종보호권 집약산업을 추가하였다.

19)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산업재산권의 경우 '등록 건수/종사자 수'가 산업 평균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저작권 산업의 경우 OECD(2012)에 따른 핵심저작권 산업(미국, 유럽) 및 저작권 유통·판매업(유럽)이 포함되고, 지리적 표시 집약산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업총국에 등록된 4개의 지리적 표시 산업을 의미한다. 또한 식품품종보호권 집약산업은 유럽연합 식품품종보호청에 등록된 품종보호권 등록 건수 및 종사자 수를 이용하여 '식품품종보호권 집약도'가 산업 평균 이상인 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20) USPTO(2016).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2016 Update.

21) EUIPO(2019). IPR-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805유로, 디자인 761유로, 저작권 867유로로 조사되었다. 비집약산업 종사자 평균 주당 임금 544유로 대비 71.7%, 상표 48.0%, 디자인 39.9%, 저작권 59.4%의 임금 프리미엄이 있었다.

▼ 표 II-1-5 , 미국과 유럽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주당 임금과 임금프리미엄

(단위: USD, 유로, %)

	미국('14)		유럽('16)	
	주당 임금	프리미엄	주당임금	프리미엄
특허	1,560	74.1	934	71.7
상표	1236	37.9	805	48.0
디자인	-	-	761	39.9
저작권	1701	89.8	867	59.4
지식재산 집약산업	1312	46.4	801	47.2
지식재산 비집약산업	896	-	544	-

출처: USPTO(2016), EUIPO(2019)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는 해당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부가가치 기여도, 고용 기여도, 임금수준 등 경제지표를 분석하여 나온다. 미국의 경우 2010년 대비 2014년에 약 1.5조 달러의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아졌고(GDP 대비 34.8% → 38.2%) 유럽의 경우 약 9.3조 유로(38.6% → 42.3%)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121조 원이 증가하였지만, 기여도는 43.6% → 43.1%로 감소하였다.

▼ 표 II-1-6 ,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 기여도

(단위: 천 명, 각국통화, %)

구분	미국		유럽		한국	
	'10년	'14년	'08-'10년	'11-'13년	'10년	'15년
고용 기여도	27,065 (18.8%)	27,877 (18.2%)	56,494 (25.9%)	60,032 (27.8%)	4,631 (26.2%)	6,070 (29.1%)
임금 프리미엄	주급 1,156\$ (41.8%)	주급 1,312\$ (46.4%)	주급 715€ (41.0%)	주급 776€ (46.4%)	주급 67.3만 원 (57.1%)	주급 82.1만 원 (51.1%)
부가가치 기여도	5,060b\$ (34.8%)	6,600b\$ (38.2%)	4,735b€ (38.6%)	5,664b€ (42.3%)	439조 원 (43.6%)	560조 원 (43.1%)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8)

고용 기여율에서 미국의 총량은 약 78만 명이 증가했으나 비중은 0.6%p 감소하였다. 유럽의 경우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보고서 대비 354만 명이 증가 하였으며 비중에서는 1.8%p가 증가하였다. 한국은 2010년 463.1만 명에서 2015년 607만 명으로 증가하여 143.9만 명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금 프리미엄 역시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지식재산보호와 외국인 직접투자

특허권의 보호 강화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에도 영향을 미친다. FDI의 유입이 신기술의 이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신기술보유국인 선진국은 FDI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 투자 유치국의 특허권 보호 수준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²²⁾

선진국 23개국과 개도국 40개국 등 총 63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연구²³⁾에서는 실물자본, R&D, FDI 등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특허권 보호 강화는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특허권 보호 강화는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FDI 유입에 기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PO(2017)는 EU 회원국에서 특허 보호 강도가 국제무역, FDI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허의 유형별로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며, 수출품에 대한 지식재산 집중도도 다르기 때문에 IP 집약도에 따라 세 개 군으로 구분하고, 122개 국가에 대하여 IP 보호지수를 도출하였다.²⁴⁾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한 분석결과에서 IP 보호지수는 지식재산 집약상품의 무역에 대해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재산 집약상품에 대한 수입의 증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IP 보호수준이 높을수록 FDI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특허 보호 수준의 강화는 지식재산 집약상품의 수입 증가와 해외 자본 유치에 유리하다고 분석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지식재산의 보호 정도는 외국인 FDI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어느 정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자국 산업에 유입되는 투자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2) John Dunning(1977)이 제시한 OLI(ownership, location & internalization) 이론에 의하면, 해외 직접투자를 결정하려는 기업은 신기술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들의 의사 결정에 투자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포함시킨다고 한다.

23) 이성수(2008)에서는 1970~1999년 사이의 선진국 23개국과 개도국 40개국 등 총 63개국을 대상으로 실물자본, R&D, FDI 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24) IP 보호 수준은 Park(2008)의 연구방법을 따라 1960~2010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제2절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사례

1. 한국

한국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법」에 근거하여 출범하였다. 동 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점검 및 평가하여 지식재산 전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²⁵⁾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2016년에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12년~2016년)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2016년 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년~2021년)을 수립하고 의결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20개 핵심과제로 설정되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총 4조 7백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이러한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25) 한국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제1항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표 II-2-1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5대 전략 및 20개 핵심과제

5대 전략	20개 핵심과제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①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②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③ 공공연구기관의 선동적 IP 경영 강화 ④ IP·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⑤ 민간중심의 IP 금융 고도화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⑥ 중소기업의 IP 활동 지원 강화 ⑦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⑧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⑨ 해외 진출 기업의 IP 애로 해소 지원 ⑩ IP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⑪ 생물·유전자원 관련 新국제규범 대응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⑫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⑬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⑭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지원 ⑮ 신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창출 생태계 조성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⑯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IP 보호체계 정비 ⑰ 특허권의 신뢰성·안정성 제고 ⑱ IP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⑲ IP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IP 역량 제고 ⑳ 식물 신품종의 개발 활성화 및 보호 강화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2016.12)

한국은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한 후부터 크게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인프라(기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 미국

2010년 이래,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지식재산 집행강화를 위한 전략계획(3개년)을 수립해 왔다.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정부기관, 산업계, 교육기관, 무역기구, 공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된 전략계획을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최근 계획은 2016년 12월에 수립한 “2017-2019

지식재산 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이다. 이 전략계획이 제시하는 4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표 II-2-2 | 2017-2019 미국 지식재산 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의 4대 주요 목표

- ①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국가적 이해 향상
- ② 온라인상 위조행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 ③ 안전하고 용이한 합법적 거래 촉진
- ④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을 지원하여 국내의 지식재산권 전략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출처: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2017-2019 지식재산 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2016.12)

미국은 2016년에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 Act)을 발효시켜 영업비밀 침해가 있을 경우 직접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정책은 이 합동전략계획에도 강조되고 있다. 2017년 6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7-2019 미국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전략계획” 추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영업비밀 보호·집행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2017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통상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목적으로 “무역과 위조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는 관세국경보호청(CBP)을 통해 미국 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략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 표 II-2-3 | 미국 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전략의 주요 내용

- ① 관세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 압류 이상의 수단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
- ② 위조상품 수입으로부터 지식재산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시성 있는 수단의 확보
- ③ 지식재산권 침해 혹은 위반에 관한 정보를 지식재산권자와 공유하도록 방안 마련
- ④ 미국 통상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폐기 권한을 관세국경보호청장에게 부여

출처: 미국 백안관, “무역과 위조에 관한 행정명령”(2017.3)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기조는 중국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미국의 지식재산권, 혁신 또는 기술개발에 손해를 끼치는 중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인프라 등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등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재산 단속 등 집행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3. 유럽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유럽지역의 혁신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유럽 단일특허제도 (Unitary Patent System)의 도입과 유럽통합 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설치를 추진해 왔다. 유럽 특허제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유럽통합 특허법원 협약(Unitary Patent Court Agreement)이 발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해 최소 13개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이 비준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6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과 2017년 6월 독일에서 제기된 유럽통합 특허법원 협약에 대한 헌법소원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유럽 특허 제도는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가 추가로 유럽통합 특허법원 협약을 비준하였다. 이로써 최소 13개 회원국의 비준 요건이 충족되어 향후 독일과 영국의 비준이 있으면 동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게다가 영국이 이미 2016년 11월에 공식 성명을 통해 유럽통합 특허법원 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였고, 동 체제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독일도 이 협약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향후 유럽통합 특허법원 협약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상표제도의 개혁도 추진하였다. 유럽의회는 2015년 12월 유럽연합 상표 개혁법 (EU Trademark Reform Legislative Package)을 통과시켰다. 이 상표 개혁법은 상표지침과 상표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해 2016년 3월부터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이 유럽 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유럽연합 상표 개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II-2-4 | 유럽연합 상표개혁법의 주요 내용

상표지침(Directive) 2016. 01. 13. 발효	상표규칙(Regulation) 2016. 03. 23. 발효
① 1989년 상표지침 개정, 역내 상표등록 절차 통일 ② 상표 수수료 체계 개선, 1류 1수수료 체계 도입 ③ 역내 위조 상품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방안 도입	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으로 명칭 변경 ②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 Mark)의 명칭을 유럽연합 상표(EU Trade Mark)로 변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7년 11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 계획은 유럽의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혁신과 창의에 대한 투자 보호의 관점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위조·불법복제의 근절을 위한 노력 강화와 공정하고 균형 있는 표준필수특허 체제 구축을 중요 과제로 선정하고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의 지원과 지식재산의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 표 II-2-5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계획의 주요 내용

위조·불법복제의 근절을 위한 노력 강화
①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지침 수립, 지식재산 분쟁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 도구 마련 등 ② 불법 웹사이트 광고, 위조 상품 운송 등에 관한 자발적 합의 등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지원 ③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제3국과의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그램 강화, 세관 당국들 간의 협력 강화 등
표준필수특허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체제 구축
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라이선스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들의 기술 접근 보장 ②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 등과 관련한 특허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확립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미국 백안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계획"(2017.11)

4. 일본

2018년 6월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새로운 지적재산전략비전을 수립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전, 미국 GAF(Google/Apple/Facebook/Amazon)·중국 BAT(Baidu/Alibaba/Tencent) 등 세계적 기업의 대두, 공유경제 및 가치소비의 증가 등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동 전략비전은 2002년 지재입국 선언 및 2013년 지적재산정책비전 수립 이후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5~2030년 일본의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시스템 및 중장기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新지적재산전략비전은 일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가치 디자인 사회'로 정의하고, 경제적 가치 외의 가치를 함께 포섭하여 다양한 개성 및 능력과 일본의 특징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세계적인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표 II-2-6 | 新지적재산전략비전 주요 내용

5대 방향성	세부내용
① 미래사회로 연계될 환경변화 및 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에서 수요, 재화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 • 공유경제와 SNS의 공감문화 확산 • AI·Big data·IoT 등 新기술의 발달
② 예측되는 미래의 사회상(인간이 행복한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디지털화로 현실(리얼)의 가치 상승 • 행복의 다양화, 생활 및 근로방식 다양화, 조직의 유연화
③ 미래 가치 및 가치창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 및 혁신을 가치로 설정하고 다양한 개성을 인정 • 지식의 플랫폼화,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는 사회 시스템 마련
④ 일본의 특징을 활용한 가치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성 및 첨단 기술의 사회 수용력 • 새로운 것을 수용·편집하는 능력을 활용
⑤ 미래 구조(가치 디자인 사회)를 위한 검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인재·조직 • 기술·데이터·콘텐츠 등 지적재산의 유연한 교류 및 공유 촉진 • 세계적 공감을 위한 가치 및 감성의 지속적 생산·전개

출처: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2018.6)

5. 중국

2018년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를 발표한 지 10주년을 맞이한 해로, 중국은 정부 및 민간의 평가전문가를 구성하여 지난 10년간의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전략을 재정비하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10주년 평가업무’를 추진하였다.

또한, 국무원은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주무부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SAIC)이 폐지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신설되었다. 기존 SAIC에서 담당하던 상표 관리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지리적 표시 관리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중국 지식재산권국(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에서 총괄하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 집행업무 등 산업 시장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중국 국무원은 2018년 11월,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2018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을 발표하였다. 동 추진계획은 6대 중점 임무와 109개의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II-2-7 |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

6대 중점임무	세부내용
①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개혁 추진 •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 개혁 • 지식재산권 방관복(放管服)²⁶⁾ 개혁 심화
② 지식재산권 창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치 지식재산권 양성 강화 •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효율 제고
③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법규·규정 완비 • 보호의 장기적 효과 체제 수립 • 중점 분야의 특별관리 실시 • 상시 관리감독 집행 강화
④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이전 강화 • 지식재산권 정보 이용 강화
⑤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대외협력수준 향상 • 중점산업의 해외배치 및 위험예방 강화
⑥ 조직 실시 및 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제정 및 실행 강화 • 인재 양성 및 홍보지도 강화

출처: 国务院, 『2018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2018.11)

26) 정부와 기업의 간소화, 하부기관으로의 권리이양, 서비스의 최적화를 의미한다.

CNIPA는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인터넷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2018년 7월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에 대한 온라인 식별, 실시간 검사, 추적에 대한 기술 지원 체계를 완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모델’을 널리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18 인터넷시장 감독관리 특별행동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인터넷 위조 상품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²⁷⁾

CNIPA는 2018년 1월 산업 전환과 혁신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중점지원산업목록(知识产权重点支持产业目录)’을 작성하고 지식재산권 유관부처, 각 지역 지식산업국에 배포하여 해당 산업에 지식재산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각 산업의 발전을 집중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동 목록은 10대 지원사업과 그 하위의 62개 세부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6. 인도

2016년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새로운 국가지식재산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은 지식재산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IP 생태계를 구현하고 공익을 추구하고 인도의 경제성장 및 사회·문화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동 정책은 지식재산권 교육, 연구 및 실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촉진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조성, 지식재산권 행정의 현대화와 집행 및 분쟁심판에 대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제공 등 7가지의 목표 달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효용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인도의 국가지식재산정책은 정책 및 전략 방안으로서 지식자산을 국가 발전 계획에 통합하고 관련 법률, 행정, 제도, 집행 문제에 대하여 전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다. 또한, 주 정부를 포함한 공공·민간 분야의 기관 및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 이행과정에 참여하고, 산업정책진흥위원회(DIPP)가 중심이 되어 정책의 이행 및 미래 발전을 조정·제시·관장하며, 해당 부처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행하도록 추진되고 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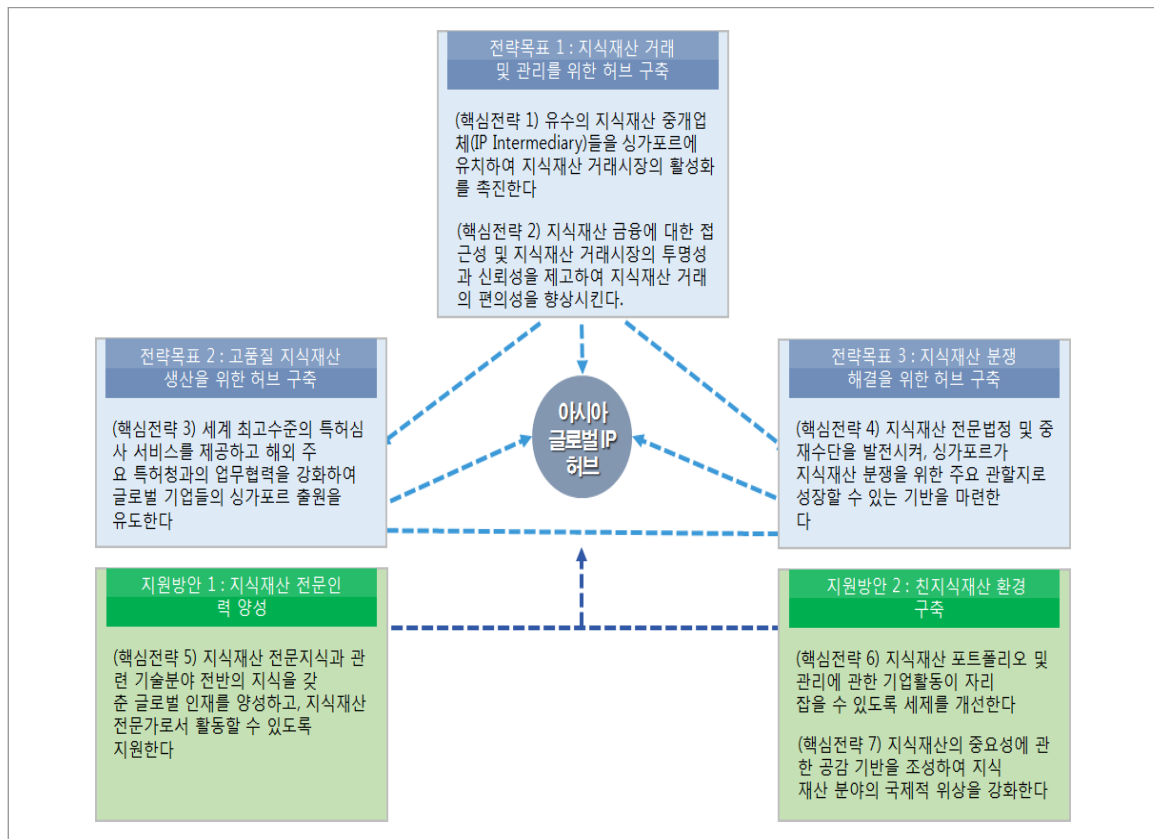
27)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2018 인터넷 시장 감독관리 특별행동 방안’(2018.6).

2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6.

7. 싱가포르

아시아 지역의 교역 및 물류 중심지인 싱가포르는 이 지역의 지식재산 허브로 자리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지식재산조정위원회(IP-Steering Committee)가 출범하였다. 동 위원회에는 싱가포르 국내의 200여 명의 전문가 및 100여 개 이상의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전략목표(Strategic Outcome)와 2개의 지원방안(Enabler)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허브 종합계획(IP-Hub Master Plan)을 도출하였다. 10년간 추진될 지식재산 허브 종합계획은 2013년 4월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승인이 되어 현재 관련 세부정책과 실행조치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²⁹⁾

▼ 그림 II-2-1 | 싱가포르 지식재산 허브 종합계획의 전략목표 및 지원방안



29) IP Hub Master Plan - IPOS, https://www.ipos.gov.sg/docs/default-source/about-ipos-doc/full-report_update-to-ip-hub-master-plan_final.pdf.

8. 베트남

2019년 베트남 총리는 2030 지식재산전략을 승인하였다. 동 전략은 베트남 최초의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전략으로, 지식재산이 국가의 경제, 문화, 사회 발전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인식한 것이다. 동 전략은 방향, 전략목표, 과제 및 해결책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내용은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의 단계를 포함한 지식재산 활동의 주기에 따라 구축되었다.

향후 베트남의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방향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제도 개발에 관한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함으로써 지식재산을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 문화 및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삼는다. 둘째, 저작권,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에 대한 지식재산정책은 경제 및 문화 영역에 있어 개발전략 및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셋째, 연구소, 대학, 개인의 창의 활동, 기업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식재산 활동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트남은 이러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 표 II-2-8 | 2019년 베트남 국가지식재산 전략

항목	5대 전략
1	2030년까지 베트남을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측면에서 주요 아세안 국가 중 하나로 발전
2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신속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권리의 확립
3	지식재산권법의 집행을 개선시킴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침해 상황을 대폭 감소시킴
4	베트남 국민과 조직이 보유하게 될 지식재산을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향상시킴으로써 WIPO 글로벌혁신지수(GIIP) 등 베트남 IP 지표를 획기적으로 개선
5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고도화된 IP 콘텐츠를 보유한 제품의 수 대폭 증가

또한 베트남은 동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제 및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i) IP 관련 정책 및 법률 완성, (ii) IP에 대한 국가 관리의 효과 및 효율성 향상, (iii) 지식재산권 시행의 효과 증진 및 개선 집중, (iv)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장려, (v) 지식재산권 확보의 효율성 장려 및 개선, (vi) IP 지원 활동 개발, (vii) IP 활동을 위한 인적 자원 강화, (viii) 사회 속 IP 문화 형성, (ix)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력과 국제적인 조화의 적극적인 추진이다.

이러한 전략은 베트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경영활동 및 사회경제발전을 구현하는데 있어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데 효과적인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 수립 절차 분석

제1절 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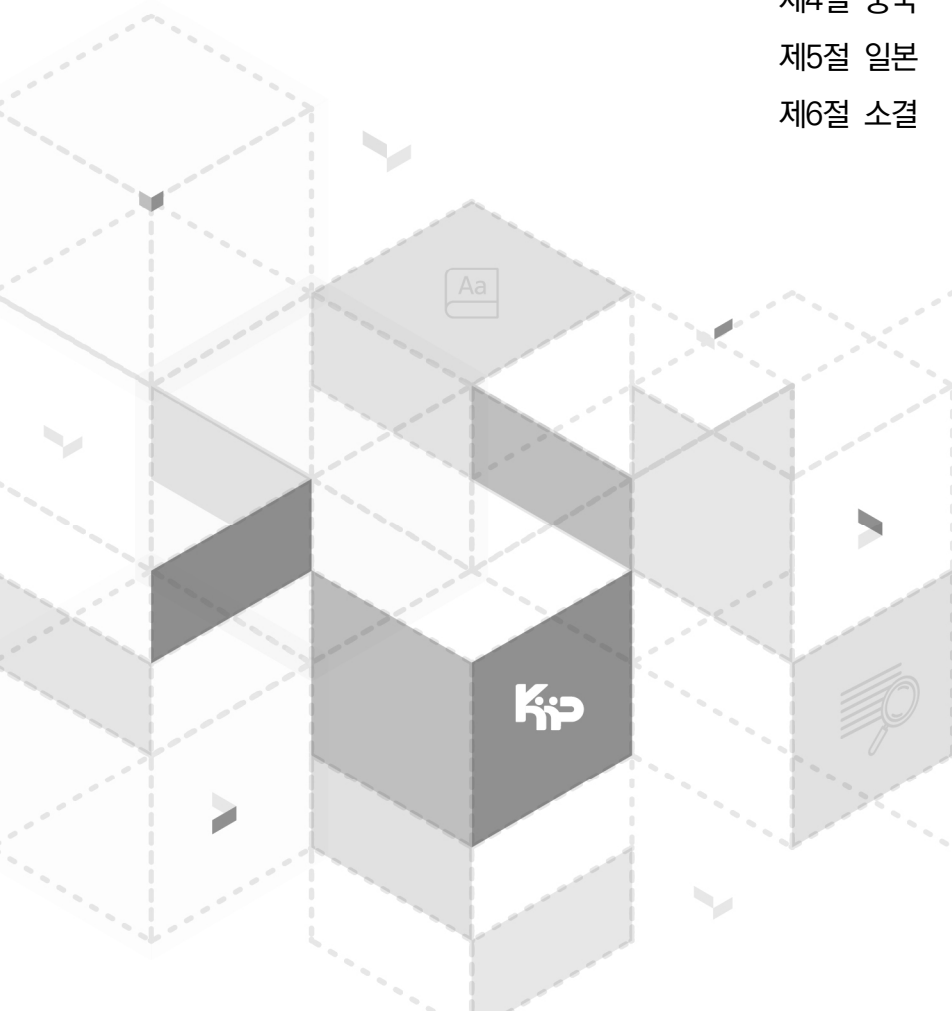
제2절 WIPO 지침상의 국가 IP 전략 수립 절차

제3절 한국

제4절 중국

제5절 일본

제6절 소결



제1절 ●● 서설

국가 IP 전략은 국가 차원에서 IP의 효과적인 창출, 개발, 관리 및 보호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들고 시행하는 일련의 조치이다. IP 전략은 IP와 관련된 모든 정책 개발과 이러한 개발의 시행이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정된 방식으로 수행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국가 문서로 정의될 수도 있다.

IP 전략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국가 개발 목표 및 부문별 정책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지만, 국가 개발 우선순위와 전략에 맞추어 이러한 IP 개발 목표를 국가 전략에 통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고 효과적인 접근방식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IP 전략을 마련하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IP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절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비롯하여, 국가 IP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입안자, 국가의 목표 등이 어우러져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IP 전략 수립 절차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WIPO를 비롯하여, 주요국이 IP 수립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WIPO 지침상의 국가 IP 전략 수립 절차

1. 개요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세계지식재산권기구, 이하 'WIPO')에서도 국가 IP 전략 수립에 대한 지침³⁰⁾(이하, 'WIPO 지침'이라 함)을 2016년 작성하여 제시한 바 있다.

WIPO 지침에서는 먼저 대상국 국가의 IP 전략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 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임무를 제시한다. 그리고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각 단계별 중요사항을 정리하고, 어떠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다룬다. 이와 함께 국가 IP 전략 수립을 준비하는 동안 컨설팅 팀 및 프로젝트 팀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WIPO 지침의 관점은 특정한 컨설팅 팀이 다른 국가의 IP 전략을 수립해 준다는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WIPO 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WIPO 지침에서의 국가 IP 전략 수립 절차는 "(i)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 (ii) 데이터의 수집 프로세스의 기획 및 관리, (iii) 전략 수립 대상국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iv) 국가 IP 전략 초안 작성의 기획과 관리, (v) 벤치마킹 및 대표사례를 이용한 타킷 설정, (vi) 국가 IP 전략의 초안마련"의 순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WIPO 지침에 따른 국가 IP 전략 수립 절차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2. 프로젝트의 기획과 관리

(1) 사전준비사항

1) 국가 IP 전략 수립 목적 파악

국가 IP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국가는 저마다의 목적과 이유가 존재하므로, IP 전략 개발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적과 이유를 담을 필요가 있다.³¹⁾ 이러한 목적과 이유에는 IP 전략에 관련된

30) WIPO, Methodology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2016.

31) WIPO, Methodology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2016, p.7.

이슈를 다른 주요 정책과 통합하거나, 국가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실현시키는 도구로써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식재산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국가 IP 전략 수립을 추진하기도 한다.

2)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기구나 조직 선정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기관이나 조직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테면, 어느 국가에 IP에 대한 전 분야(산업재산 및 저작권 등)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만의 과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국가 IP 전략 개발이라는 거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IP와 관련한 다양한 정부 부처, 기관 등이 주체가 되는 국가 IP 전략이 도출되지 않고, 특정 부처에 국한된 IP 전략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IP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개로 나누어진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식물신품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국가 IP 전략의 추진은 이들 부서 중에서 대표기관을 선정하거나 전략 수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적·전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프로젝트 팀 및 운영위원회 설치

국가 IP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팀과 운영위원회 두 그룹의 참여가 중요하다. 대상국 프로젝트 팀은 국가 IP 전략 수립이나 분석을 담당한다. 그리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 작업 상황을 보고한다. 운영위원회는 IP 환경분석과 전략 수립이 진행되는 동안 IP 정책 수립과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운영위원회는 IP 전략을 대상국 정부에 전달할 책임을 진다. 반면 프로젝트 팀은 운영위원회를 위한 기술지원부서로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²⁾

4) IP 분야별 이해관계자 선정

국가 IP 전략의 목적은 국가 IP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IP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32) 어느 국가에서는 소규모 팀으로 구성하여 국가 IP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모든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IP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

▼ 표 III-2-1 | 국가 IP 시스템의 주요 분야

IP 분야	내용
IP 창출	IP 자산 창출을 지원하는 구조 및 정책을 의미
IP 활용(상업화)	IP 권리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구조 및 정책
IP 보호(법률)	IP 권리의 보호 범위나 대상 등을 포함한 국가의 IP 법률을 의미. IP 법률에 포함된 세부 사항은 IP 권리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권리침해에 적용되는 집행 관련 조항을 포함
IP 행정(거버넌스)	IP 출원 및 등록을 포함하여 IP 권한을 관리하는 정부 기능과 이러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자원을 의미
IP 법집행	IP 권리를 침해할 경우 민사, 행정 및/또는 형사 절차와 구제 수단을 통해 IP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IP 집행 메커니즘을 의미

IP 각 분야별로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식별하여야 한다. 주요한 이해관계자에는 발명가, 창작자, 육종가, IP 관련 법률가, IP 관련 단체 등이 있다. 국가 IP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들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2) 컨설팅 팀의 사전준비

대상국의 국가 IP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컨설팅 팀은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에는 대상국의 프로파일에 대한 평가 수행, 해당국 팀과 IP 전략 수립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다. 컨설팅 팀은 대상국의 IP에 대한 전문가를 식별하고, 국가 IP 전략 수립에 책임 유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 대상국에 대한 프로 파일 검토

컨설팅 팀은 국가 IP 전략 수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대상국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상국의 정치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물론, 대상국의 국제 IP 규범 준수 정도, 주요 경제 및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 표 III-2-2 | 대상국가의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요소

구분	검토 항목
1. 지리적 현황	지역, 평균고도, 지형, 기후 등
2. 인적 요소	인구, 연간 인구 증가율, 종교 등
3. 경제적 현황	GDP, GDP 성장률, 일인당 GDP, 천연자원, 무역 현황 등
4. 정부 형태	정부유형, 헌법, 행정구역 등
5. 교육	초, 중, 고, 대학의 교육, 대학 수, 연구소 수 등
6. IP 관리 기관	산업재산, 저작권, 식물 육종가 권리, 전통지식 및 유전 자원 등 IP 분야별 관리기관 현황 등
7. IP 법률 현황	IP 관련 각종 법률 현황

2) IP 전문가 확보 및 과업준비

컨설팅 팀은 국가 IP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대상국가와 협의하여 국제적인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상국의 IP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국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대상국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IP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은 향후 대상국의 IP 환경분석을 하고, 국가 IP 전략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컨설팅 팀은 국가 IP 전략 수립의 로드맵을 설계하고 대상국의 IP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IP 전략 옵션에 대한 조언, 지침 및 권고 사항 등을 제공한다. 컨설팅 팀은 과업 내용을 정리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해당국의 요구사항 등을 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대상국의 프로젝트 팀과의 국가 전략 수립 프로그램 협의

사전준비 단계에서 대상국의 국가 IP 전략이 정치적 합의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IP 전략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최고 수준의 정치적 약속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 IP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과의 회의 및 주요 IP 이해관계자와의 회의가 보장되도록 한다. 또한 대상국가의 프로젝트 팀의 프로필과 책임을 포함하여 필요로 되는 인적자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 표 III-2-3 | 국가 IP 전략 개발을 위한 작업계획(예)

S/N	활동	년(분기 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국가 IP 전략 수립 승인								
2	프로젝트 팀을 임명								
3	전체 프로세스에서 프로젝트 팀을 교육								
4	데스크 조사 수행								
5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데이터 수집).								
6	IP 환경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국가 전문가 회의								
7	최종 환경분석 보고서 준비								
8	최초의 국가 IP 전략 초안을 개발.								
9	최초 국가 IP 전략의 초안 검증을 위한 전문가 회의								
10	국가 IP 전략 초안 준비								
11	이해관계자 포럼에 초안 발표.								
12	국가 상담 중에 얻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최종안을 준비								
13	최종 전략 문서를 준비								
14	도입을 위해 정부에 제출								
15	도입 전략 수립								

3. 데이터 수집절차의 기획과 관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책상조사와 설문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하 간단히 설명한다.

(1) 데스크(desk) 조사

데스크 조사는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원칙적으로 데스크 조사는 인터뷰 단계 이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국 컨설팅 팀은 유용한 보조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가의 IP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뷰를 하여야 할 주요 이해관계자들도 잘 선별하여야 한다. 데스크 조사는 국가의 개발 의제에 대한 정보와 IP 전략이 국가 개발 의제 실현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획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대상국에 IP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가능한 한 모든 보조 데이터를 획득하여야 한다.

국가 IP 전략은 대상 국가의 여러 국가 정책 및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다. 국가 IP 전략은 해당 국가의 국가 개발 의제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써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컨설팅 팀(초안 작성팀)은 IP 전략의 기반이 될 국가 개발 의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안 작성 팀은 대상 국가의 국가 개발 목표, 전략 및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 기존 문서를 검토하고, 국가 IP 전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검토 대상이 되는 문서는 각별히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유엔(UN)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포함하는 국가 개발 전략, 유엔 개발 원조 체계(UNDAF)³³⁾, 빈곤 감소 전략 보고서를 포함한 국가 빈곤 감소 정책 전략, 그리고 경제의 특정 부문(건강, 교육, 과학 및 기술, 환경,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국가 정책 및 전략 또한, 조사 과정은 해당 국가가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생산적인 부문과 정책 영역을 강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IP의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해야 한다. 책상 조사는 모든 관련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책상 조사에서 찾은 결과는 대상국 프로젝트 팀이 다음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국가의 장기개발 계획의 존재여부와 전략목표
2. 국가의 주요 경제 및 사회적 목표와 관련된 주요 전략 부분
3. IP 전략을 통해 위의 국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33) UNDAF는 대상 국가의 국가 개발 우선순위 및 요구, 그리고 MDGs에 따라 해당 국가의 UN 개발기금 및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그들은 UN 레지던트 코디네이터가 이끄는 UN Country Teams(UNCT)의 계획 도구로 사용되고, 다양한 UN 기금 및 프로그램의 대표들과 특별한 기관 및 특정 국가에 공인된 UN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UNCTs의 주요 목적은 개별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국가의 개발 의제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컨설팅 팀은 설문지를 통한 데이터 수집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의 문건을 통해 확보할 수 없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인터뷰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래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한 데이터 수집은 공공영역에서 아직 이용할 수 없는 정보를 얻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데스크 조사(2차 데이터 수집)의 목적은 인터뷰 및 설문지를 통해 얻어야 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데스크 조사를 통하여 IP 시스템에 관한 가능한 최대의 정보, 즉 이미 공공의 영역에 있는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하여야 한다. 컨설팅 팀과 대상국 프로젝트 팀은 다양한 기관 및 정부 부처의 웹사이트, 도서관 등에 접속하여 국가 IP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어야 한다.

1. IP를 담당하는 사무소의 위치, 해당 사무소가 정부 부처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부서인지의 여부, 또는 반자율 단체인지 여부
2. 해당 국가의 다양한 유형의 IP 권리(산업재산, 저작권, 식물품종법 및 전통지식)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
3. 해당 국가의 다양한 유형의 IP 권리에 적용되는 법률
4. IP 권리의 활성화, 창출, 상업화, 법집행을 위해 해당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인프라
5. IP 시스템과 관련한 해당 국가의 국제적 의무

(2) 설문조사에 의한 데이터 수집

1) 데이터 수집 계획

국가 IP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현재 IP 시스템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국가 IP 전략을 구현하는 동안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이 단계는 강점과 약점을 포함하여 국가의 현재 IP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가 개발 우선순위 및 목표와 일치하는 국가 IP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략적 IP 목표 및 요구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수집이 필요한 데이터

데이터 수집은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국가 IP 시스템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국가의 IP 법률, 행정 및 집행 메커니즘에 익숙한 공무원과의 일련의 인터뷰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수집은 다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1. IP 권리와 관련된 기존의 법적, 행정적 및 법집행 구조는 물론 경제, 사회 및 문화 개발과 관련된 국가 정책 및 전략에 대한 데이터
2. 기존의 비즈니스 및 혁신 지원 인프라와 국가 정책 및 전략 등이 있는 경우, 이것들은 비즈니스를 촉진 및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대학 및 연구 개발 기관이 IP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3. IP 시스템의 사용 수준은 각 부문과 각 유형의 출원인과 관련된 IP 권리의 출원, 등록 및 허여 수를 고려
4.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IP와 공공 정책 영역 관계성이 있는 데이터
5. IP가 개발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재의 IP 시스템과 국가의 전략적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채우기 위한 국가적 요구
6. 유엔 및 기타 정부 간 기구(IGO)에 의해 수행된 IP 및 기존에 있는 관련 이니셔티브.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무역 지원, 민간 부문 개발, 무역 관련 기술 지원 및 입법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다른 IP 관련 기술 지원 제공자(즉, 미국 특허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과 같은 조직),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

3) 데이터 수집 도구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대상국의 IP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설문 대상 그룹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 IP 법률 제정 또는 IP 권리 출원 처리를 담당하는 지식재산청(특허청) 공무원
2. IP 변호사, 기술 관리자, IP 평가자 및 감사자와 같은 IP 전문가
3. IP 권리 법집행을 다루는 공무원 및 대리인
4. 공공 부문 또는 민간 부문에서 활동하는 발명가 및 창작자
5. 단체 관리 조직, 출판사 협회, 음악 협회, 발명가 및 제작자 협회와 같은 비즈니스 지원 협회
6. 혁신적인 상업 기업 개발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및 기관
7. IP 자산의 상업적 이용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책임이 있는 공무원 및 대리인
8. 산업, 무역, 농업, 건강 및 환경과 같은 주요 경제 부문의 공무원

이러한 그룹을 대상으로 IP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특히 대상국의 국가 및 부문별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 목표에 대한 기여적 측면에서 시스템의 강점, 약점 및 잠재력 등을 파악하도록 설문이 설계되어야 한다.

4) 데이터 수집 절차

데이터 수집에는 (i) 기관에 대한 개별 방문³⁴⁾, (ii)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인터뷰³⁵⁾, (iii)

34)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면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접근 방식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문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대면 토론에 참여하는 가치는 이해관계자가 면접관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두 방법의 결합³⁶⁾이 있다.

4. 대상국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전문가 그룹 회의)

(1) 회의의 목적

국가 IP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비정부 대표, 민간 부분 및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대상국의 주요 IP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 IP 전략의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에 앞서 수집한 데이터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을 국가 IP 전략 수립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회의의 주된 목적은 첫째,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발굴한 결과의 검증, 둘째, IP 전략 초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가 구체적인 제안 및 권장 사항을 작성하는 데 있다.

(2) 시간과 횟수

컨설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컨설팅 순서는 이하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 수집 단계가 완료된 후 1단계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회의의 주된 목적은 데이터 수집 결과를 검증하고,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IP 이해관계자는 전략 초안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 및 권장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전략 문건을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단계별 컨설팅과/검증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소요기관과 조직

1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전문가 집단회의)은 일주일에 걸쳐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컨설팅 팀은 대상국의 프로젝트 팀 또는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

설문지를 받도록 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35) 그룹 인터뷰 / 토론 중에 얻은 정보는 특정 부문 / 클러스터의 IP 시스템 상태에 대한 좋은 개요를 제공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그룹 인터뷰 / 그룹 토론 방법은 이해관계자를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리지만, 정보가 그룹 환경에서 제공된다는 사실은 이해관계자에 의한 유용한 데이터를 쉽게 제공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룹 인터뷰 / 토론 조직의 긍정적인 측면은 데이터 수집과 IP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기회를 결합한다는 것에 있다.

36) 이 방법에는 그룹별 방식과 일대일 토론이 모두 사용된다. 그룹 토론이 완료되면 조사원들은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일부 이해관계자와 일대일 토론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해관계자 의견 수렴 회의의 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회의(5일)

- Day 1: 결과에 대한 전체 프레젠테이션
- Day 2: 그들이 각 부문과 관련한 발견에 대한 토론 (병렬 세션)
- Day 3: 각 부문과 관련된 제안 및 권장 사항에 대한 토론(병렬 세션)
- Day 4: 각 부문과 관련된 제안 및 권장 사항에 대한 토론(병렬 세션)
- Day 5: 전체회의의 프레젠테이션 및 시너지 창출

2차 회의(4일)

- Day 1: 초안 전략에 대한 전체 프레젠테이션;
- Day 2: 부문별 전략 초안에 대한 토론 (병렬 세션);
- Day 3: 부문별 전략 초안에 대한 토론 (병렬 세션);
- Day 4: 부문별 관측에 관한 전체 프레젠테이션 및 토론

3차 회의(1일)

- 오전: 부문별 토론
- 오후: 부문별 프레젠테이션, 전체 프레젠테이션

(4) 참가자의 선정

각 그룹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이 충분하여야 한다. 각 토론 그룹별로 10-15명의 참가자가 각 파트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그룹에는 각 핵심 파트별 소속의 복수 분야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야 한다.

(5) 토론의 형식

토론은 각 파트별 대표가 의장을 맡고, 데이터 수집·분석을 한 컨설팅 팀이 검토를 한 후 IP 환경분석 보고서 초안의 텍스트에 의견이나 권고 사항을 추가한다.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컨설팅 그룹의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국가 IP 전략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6) 성과물

데이터 수집·분석(환경분석) 보고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회의에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첫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회의에서 제공하는 권고 및 제안을 포함한 최종 IP 환경분석 보고서, 둘째, IP 환경분석 / 데이터 수집단계에서 국가 IP 전략 개발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방법 등이다.

(7) 후속조치

특정한 그룹에서는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회의나 협의가 필요하다.

5. 국가 IP 전략 초안 작성의 기획과 관리

(1) 개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완료되면 국가 IP 전략 개발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는 주요 전략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적과 목표의 기준은 IP 환경분석 단계에서 밝혀진 약점 부분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강점 부분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IP 시스템 요소를 분석한 후에 식별할 수 있다.

(2)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의무

초안 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정할 필요가 있다.

▼ 표 III-2-4 | 이해관계자별 역할과 임무

이해관계자	역할 및 임무
지식재산청	대부분의 경우 지식재산청은 IP 환경분석을 수행하고, 전략 계획 및 실행계획을 개발하며, 국가 IP 전략을 조정하고 관리하기 적합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없이는 전략의 실질적인 성공가능성은 낮고, 특정 실행 계획과 달리 단순한 문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식재산청이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상국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팀은 컨설팅 팀을 도와 전략의 초안 작성 및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대상국 주요 기관과의 컨택 등 중요한 책임을 갖는다.
국제 컨설턴트	국가 IP 전략 수립에 대한 책임은 국가 프로젝트 팀의 전문가에 달려 있지만, 이 단계에서는 국제 전문가 / 컨설턴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는 국가 프로젝트 팀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컨설턴트 /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은 국가 IP 전략 초안 작성 과정에서 중재 및 지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초안 작성 과정에서 국제 컨설턴트의 코치로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추천된다. 또한, 전략 컨설턴트의 초안을 지도, 검토 및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 컨설턴트와 국가 프로젝트 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컨설턴트'라는 용어가 반드시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그 사람이 국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조직 / 기관과 관련이 없음을 나타낸다.
운영위원회	대상국은 국가 프로젝트 팀이 수행한 내용을 보고할 '운영위원회'를 설립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국가 프로젝트 팀이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 프로젝트 팀과 고위 공무원 또는 부서 간의 필수 연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초안 작성 프로세스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1) IP 전략과 국가 개발 아젠다와의 연결

컨설팅 팀과 대상국 프로젝트 팀은 국가 IP 전략이 국가의 장기 개발 의제를 실현하는 데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P 전략 수립 과정과 IP 국가 개발 의제 간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2) 비전, 미션 및 목표

컨설팅 팀과 대상국 프로젝트 팀은 대상국 IP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고 국가 개발 전략에 국가 IP 전략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한 후 국가 IP 전략 비전, 미션 및 목표를 정의하여야 한다.

▼ 표 III-2-5 |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의 비전 및 목표

	국가	전략 제목	비전
1	중국	2008년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개요서	2020년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및 관리를 갖춘 국가로 중국을 개발한다.
2	크로아티아	2010-2012년 크로아티아 지적재산권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보장하여 EU에 존재하는 권리와 동일하게 하고 해당 권리를 크로아티아가 체결한 모든 국제협약과 조화시킨다. 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 도구 및 과학적, 문화적, 전반적인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지적재산의 적용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여 국내 조건이 EU 회원국의 조건과 동일하게 한다.
3	체코	체코의 국가 혁신 정책 2005-2010	지식 경제의 맥락에서 체코를 더 나은 위치에 올린다.
4	가나	가나 지적재산권 정책 및 전략 2012-2017	가나는 빠른 국가 발전을 위한 도구로 IP를 활용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다.
5	헝가리	2005-2013년 과학, 기술 및 혁신 전략	R&D에 투자하고 외부 투자주도 성장에서 혁신 주도 성장에 이르기까지 혁신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헝가리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가속화한다.
6	일본	2002년 지적재산권 정책	지적재산권의 전략적 창출, 보호 및 개발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와 활발한 사회를 창출하기 위해 일본을 "지적재산권 기반 국가"로 만든다.
7	스웨덴	혁신적인 스웨덴 - 2004년 쇄신을 통한 성장 전략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이며 지식 기반 경제가 되어, 크고 작은 지식 기반 기업이 투자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가 된다.

3) 목적 및 전략

국가 프로젝트 팀은 명시된 국가 IP 전략 비전과 미션을 실현하기 위하여 식별해야 할 특정 국가 IP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특정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고, 전략은 목표 달성방법을 나타내는 것이다.³⁷⁾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표 III-2-6 |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항목 지표

주요 항목	내용	
1. IP 행정 및 관리	특허청의 법적 지위	
	특허청의 자율성	
	특허청의 주요 기능	
	특허청의 직원 및 인적자원 개발 계획	
	방식 및 실체 심사	
	특허청의 자동화 및 현대화	
	IP 출원 및 권리부여	
	IP에 대한 국내법	
	IP 법원	
	TRIPS 준수	
	TRIPS에서의 유연성(강제 라이선스 및 병행 수입)	
	국제 계약, 조약 및 의정서 준수	
2. 대학, 연구 기관, 비즈니스, 산업, 중소기업 및 개인별 IP 생성	IP 등록 전문가(변호사 및 대리인)	
	과학 기술 및 혁신(STI) 정책	
	산업 혁신 및 특허 프로모션	
	IP 정책	
	연구 개발 자금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국가 혁신 시스템	
	기술 및 IP 정보 서비스	
3. 대학, 연구 기관, 비즈니스, 산업, 중소기업 및 개인의 IP 및 기술 이전, 상업화	IP 인식 및 홍보 프로그램	
	기술 이전 기관(TTO)	
	IP 자산의 평가	
	IP 자산의 상업화 자금 조달	금융 상품
		담보
		사업 계획
		재무보고
		민영화
		수익 창출 또는 유동화
		벤처 캐피탈
		조인트 벤처 또는 합병
정부 금융 기관		

37) 목적 - 정부는 높은 수준의 IP 보호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IP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할 것이다.

전략 - 위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 TRIPS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IP에 관한 기존 국가 법률을 검토하고 수정한다.
- 신규 또는 새로이 부상하는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 IP 법률 개발
- 국가의 최대 이익을 고려한 국제 조약 및 협약에 가입한다.

주요 항목	내용						
	IP 자산의 라이선싱 비즈니스 (기술) 인큐베이션 제품 및 프로토타입 개발 시설 과학 기술 단지 기술 이전 정책 IP 상업화 전문가(평가, 감사, 라이선스 및 기술 관리자)						
4. 저작권 및 저작권 산업	저작권 부서의 법적 지위 저작권 부서의 자율성 저작권 부처의 주요 기능 저작권 부서의 직원 및 인적자원 개발 계획 국가 문화 정책 저작권 및 관련 산업의 경제적 영향 창조적 산업 촉진 단체 관리 조직 전통지식과 민속 IP 및 정보 통신 기술(ICT)						
5. 식물 다양성 권리 및 종자 산업 (식물 다양성 보호)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법적 지위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자율성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주요 기능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 직원 및 인적 자원 개발 계획 농업 정책 유전자원과 제품 지리적 표시 식물 다양성 권리의 상업화 사업 협회						
6. IP 권리 집행	지적재산권 집행에 적용되는 법률 <table border="1" data-bbox="497 1442 1372 1653"> <tr> <td data-bbox="497 1442 663 1653" rowspan="4">IP 집행 범위</td> <td data-bbox="663 1442 1372 1482">일반</td> </tr> <tr> <td data-bbox="663 1482 1372 1523">민사(또는 행정) 절차 및 구제</td> </tr> <tr> <td data-bbox="663 1523 1372 1563">임시 조치</td> </tr> <tr> <td data-bbox="663 1563 1372 1603">국경 조치</td> </tr> <tr> <td data-bbox="663 1603 1372 1653">형사 절차 및 처벌</td> </tr> </table> IP 집행 기관 IP 집행 담당자 대중/소비자 교육 및 인식 제고	IP 집행 범위	일반	민사(또는 행정) 절차 및 구제	임시 조치	국경 조치	형사 절차 및 처벌
IP 집행 범위	일반						
	민사(또는 행정) 절차 및 구제						
	임시 조치						
	국경 조치						
형사 절차 및 처벌							

4) 특정 프로젝트 등에 따른 실행 계획 수립

IP 전략이 개발되면 특정한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프로젝트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전략 목표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세부 작업계획 또는 실행계획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 표 III-2-7 | 프로젝트 기반의 접근방법

항목	내용									
1. 프로젝트 형식의 국가 IP 전략 수립 사례	IP 등록 프로세스 자동화									
	대학에 기술 이전 사무소 설립									
	기관의 IP 정책을 개발									
	IP 집행법 개발									
	IP 저변 확대 프로그램 구축									
	국가 IP 라이선스 기관 설립									
	집합적인 관리 조직 설립									
2.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각 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각 기관과 상호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P1-P8: 프로젝트명, A1-A7: 관계기관)									
		P1	P2	P3	P4	P5	P6	P7	P8	P9
	A1	X								X
	A2			X						
	A3				X	X		X		
	A4		X							
	A5						X		X	
	A6									
	A7									
	3. 프로젝트 기간별 전략계획	프로젝트는 실시 연도에 따라 관련 기관의 전략계획과 통합								
		P1	P2	P3	P4	P5	P6	P7	P8	P9
1차년도					X					
2차년도										
3차년도						X				
4차년도										
5차년도								X		

이때에는 프로젝트 /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용 자원과 IP 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표 III-2-8 |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설정

항목	내용	
1. 우선순위 설정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순위 설정은 계획 팀이 전략 계획에 제시된 다양한 요소 중 어떤 요소를 구현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의미 5개년 전략 계획과 관련하여 각 연차별로 해결해야 할 요소를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의미 	
3.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순위 설정은 성공의 열쇠이며, 가치기반 결정이 포함 국가 IP 전략의 기간은 보통 3-5년이므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프로젝트부터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 부족한 자원의 최적의 활용 각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및 프로세스의 용이성 	
4. 우선순위 선정기준 (긴급성, 혜택 및 영향, 비용, 시간 및 지원)	긴급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의무(WTO TRIPS 충족) 지역 조화 요구 사항 충족(예를 들어, 지역 차원에서 불법 복제 및 위조 방지를 위한 법적 수단) 경쟁자와 벤치마킹
	이점 및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에 대한 혜택(예: 외국 직접 투자 촉진, 국가의 가용 자원 활용, 예를 들어 지리적 표시(GI)) 더 많은 비율의 국민에 대한 혜택(강제 라이선스 정책)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비용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존재 여부 가용 자원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에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더 큰 영향력을 주는지 여부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수행 시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지원 조직 프로젝트가 실행될 경우 최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 등

5) 국가 IP 전략 조정 기구

국가 IP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여러 협력자와 참가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가 IP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 조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가진 기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국가 IP 전략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부처간 기구)로 구성된 상위 기관

둘째, 국가 IP 전략 운영위원회 설치

셋째, 단위조직 마련. 즉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전략 수행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 / 그룹에 일상적인 지원 제공

넷째, 국가 IP 전략 실행 기관. 여기에는 주어진 프로젝트의 이행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이 포함된다. 예컨대 지식재산청(특허청)은 새로운 IP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책임이 있는 반면, 과학 기술 담당 정부기관은 대학이 IP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경우이다.

6. 벤치마킹 및 대표사례 적용을 이용한 타킷 설정

(1) 개관

국가 IP 시스템의 특정 요소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며, 이는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결과, 특히 기준 조사 결과가 강화되고 증강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정 목표를 식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벤치마킹 및 대표사례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벤치마킹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사한 조직에서 모범사례 및 대표사례를 식별, 학습 및 조정하는 프로세스이다. 벤치마킹의 전반적인 목표는 절차 및 프로세스를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절차 또는 프로세스와 비교한 후 대표사례를 식별하고 구현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를 개선하는 것이다.

(2) 대표사례 벤치마킹(국가 IP 전략)

대표사례 벤치마킹은 국가 IP 전략을 이미 수립한 국가가 운영하는 IP 시스템 중에서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핵심은 벤치마크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잘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컨대 벤치마크 국가에서 특히 출원과 등록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 이 국가의 전략을 분석하고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벤치마킹의 장점은 국가가 강화하고자 하는 IP 시스템의 각 요소 별로 벤치마크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벤치마킹 절차

협약 과정의 결과로 작성된 기본 설문 조사 결과와 권장 사항 목록을 사용하여 컨설팅 팀과 대상국 프로젝트 팀은 다음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 IP 시스템의 어떤 측면이 벤치마킹되는가.
2. 어느 국가의 IP 전략이 벤치마크로 사용되는가.
3.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는가.

벤치마킹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비교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분석된다. 이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례 벤치마크 국가의 성과는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성과는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3. 그 나라들은 어떤 면에서 더 우수한가.
4. 우리는 그 나라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5. 우리는 어떻게 그들 나라에서 배운 교훈을 우리나라의 IP 전략 개발에 적용 할 수 있는가.

(4) 벤치마크 국가 선택을 위한 기준

벤치마크 국가를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경제발전의 같은 단계에 있는 국가
- 더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달성한 국가
- 자원이 비슷한 국가.
- 귀하의 국가에서 구현하려는 IP 시스템의 특정 요소에 대해 최근에 경험이 있는 국가
- 미래의 경제 개발 계획이 유사한 국가
- 특정 IP 요구 사항이 유사한 국가
- 귀하의 국가가 속한 것과 동일한 경제 블록에 속하는 국가
- 국제 조약, 의정서 및 협약
- 경쟁력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경제발전이 동일한 단계: 이는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국가의 IP 시스템을 고려한 결과, 높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국가의 성과와 대표사례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다.

둘째, 보다 발전된 경제 발전 단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국가가 보다 높은 경제발전 단계에 있어서 이들 국가의 성과와 대표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동일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이는 IP를 이용하여 국가 IP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국가와 유사한 자원 기반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국가 중에서 벤치마크 국가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유전자 자원, 음악 산업 또는 영화 산업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이미 IP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원과 재능을 활용하는 국가에 대해 벤치마킹해야 한다.

넷째,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최근 경험: 최근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 중에서 벤치마크 국가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목표 중 하나가 IP 등록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라면, 최근에 특허청의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프로세스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문서화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알고 있

는 국가로부터 배우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다섯째, 이는 국가 IP 전략 수립을 하고자 하는 국가의 일부 계획과 일부 측면에서 유사한 경제 개발 계획을 가진 국가 중에서 벤치마크 국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농업 기반 경제에서 산업화된 경제로 이동할 계획이라면 산업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의 IP 전략을 분석하고자 할 수 있다. 유사한 특정 IP 요구 사항: 이는 IP 전략이 다른 국가에서 해결하려는 것과 유사한 문제를 다루는 IP 전략 중에서 벤치마크 국가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IP 트레이닝, 교육 및 연구를 장려할 계획이라면, IP 전략이 동일한 목표를 포함하는 국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여섯째, 같은 경제블록에 속하는 국가들. 만일 어떤 특정 국가와 제안된 벤치마크 국가가 거래의 목적으로 동일한 경제 블록에 속해 있는 경우, 해당 국가는 벤치마크 국가의 IP 시스템을 분석하여 벤치마크 레벨 이상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영역을 강화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7. 국가 IP 전략의 초안 마련

국가 IP 전략을 수립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 경제 부문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개선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형식을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IP 전략을 개발하는 동안 관련 형식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IP 전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국가의 IP 전략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제3절

●●
한국

1. 개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부가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지식재산 기본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전략이다. 이는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조정·체계화하는 종합계획이자 정부가 국민·기업·시장에게 제시하는 정책방향과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년)이 완료되었고 '17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년)이 수립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 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현재 제3차 기본계획(22~26년)을 준비 중에 있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진단과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 변화 및 글로벌 이슈 등을 분석하여 향후 5년간 달성할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17. 3.) 결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제2차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17년~)에 반영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에 반영하고 있다.

2.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의 주요 과정 및 절차

우리나라의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모태가 되고 있는 것은 2009년 3월 특허청에서 수립한 '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2009년 7월 29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2011년 11월 22일 마침내 국무총리실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도의 범부처 국가지식재산 전

략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이 발표되었다.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관련한 절차적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한 아젠다를 설정해야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 범 정부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국가지식재산 전략이 국가 계획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체계가 다른 국가에서는 법률이 아니라 명령, 시행규칙 등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식재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가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을 하나로 통일적·일관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효력범위를 국가사회 전반에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각각의 소관 부처별로 흩어진 지식재산 관계법령을 파악하고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조성에 관한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계법령을 수립한다.

체계적으로 잘 정비된 지식재산법제는 지식재산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세부시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는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표 III-3-1 | 한국의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의 절차

단계	추진 내용	비고
1단계	'09. 3 국가 아젠다로 국가 IP 정책 수립 결정	관계부처 공동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 발표
2단계	'09. 10 정책 실행을 위한 범부처 조직 운영	범부처 차관급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구성
	'10. 2 정책 실행을 위한 실무 조직 운영	지식재산전략기획단(총리실) 설치·운영
3단계	'10. 4 지식재산기본법 법률안 입법 예고	법률안 제정 준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준비 국가지식재산 전략 운영기관 지정
	'10. 6 지식재산기본법 법률안 입법 공청회	
	'11. 3 지식재산기본법 법률안 국회 제출	
	'11. 5 지식재산기본법 법률 제정	
4단계	'11. 11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발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
	'12. 1 제1차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

- ① 지식재산이 국가발전의 주요한 자산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창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아젠다로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② 정부는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0월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 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지식재산 관련 17개 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2010.2)하여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지원 및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 ③ 정부는 국내외 사례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정부입법(초)안을 마련하여 「지식재산기본법」을 입법예고(2010.4) 하였으며, 이후 이해관계자 간담회, 전문가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법률안을 확정하여 국회 제출 후 기본법을 제정(2011.5)하였다.
- ④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정책협의회는 폐지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후속 조치로 제1차 지식재산기본계획('12~'16)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제2차 기본계획('17~'21)을 운영 중에 있다.

3. 각 절차별 주요 세부 내용

(1)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이슈 분석

최근의 지식재산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외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을 분석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여 향후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2~3년 이내 국내외 거시경제, 산업동향 분석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이슈를 발굴하고, 신기술·신산업의 등장에 따른 앞으로의 지식재산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변화될 세상에 대한 지식재산 이슈를 예측하여 정책화 한다. 예를 들어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제3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코로나 이슈를 반영한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의 환경변화가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이슈 분석을 위해서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국제동향, 국내외 주요 세미나·포럼에서 제기된 이슈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이슈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1)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지식재산 환경분석³⁸⁾

2016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기술 기반의 플랫폼

품 발전으로 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가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선점을 위한 혁신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³⁹⁾

또한 신기술의 출현으로 인공지능의 권리주체 여부 등 새로운 지재권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재산 규범이 등장함에 따라 지재권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서 지재권 선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 기기, SNS,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은 영화, 음악, 게임 등과 같은 기존 콘텐츠 유통·활용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은 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에도 큰 변화를 가져 오고 있어, 콘텐츠 창출·활용이 기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물어 누구나 이용자·공급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의 불법 공유와 유통이 증가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생물 및 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새로운 IP 정책 기조에 맞서 자국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권리 주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4년 나고야 의정서 발표 이후, 생물·유전자원의 국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국가 및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2)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 동향 분석⁴⁰⁾

▼ 표 III-3-2 | 주요국 국가지식재산 정책 동향

국가	주요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의 품질 제고 및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 「2014-2018 전략계획(USPTO)」 및 「2016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IPEC)」 등에서 관련 목표 설정 및 정책 추진 - 특허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Innovation Act 2015' 등 입법 추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을 경제적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 - 2015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주요시책으로, 디지털·네트워크의 발달에 대응한 법제도 등의 기반정비, 국제적인 지식재산 보호 및 협력 추진 등 제시 -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 및 활용을 실현하고, 일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및 상표제도 개선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뚜렷해지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 - 양회(两会)에서 지재권 보호강화, 지재권 사업화 촉진, 지재권 금융활성화, 직무발명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 - 고품질 지재권 창출 강화, 지재권의 시장 활용 강화 등을 목표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 수립

38) 2017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 우리나라 지식재산전략(201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39) 미국(첨단제조파트너십), 독일(인더스트리 4.0), 중국(제조업 2025), 일본(산업부흥전략) 등.

40) 제2차 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지식재산연구원, 2016.12).

국가	주요 내용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의 획득을 촉진하여 투명하고 역동적인 지재산 시장을 건설을 목표로 EU 특허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회와 이사회는 단일효과를 갖는 EU 특허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함으로써 단일특허제도 출범(12. 2.) 및 통합특허법원 추진 - 특허시장의 변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추진 - EU는 상표등록 시스템에 관한 접근성 향상, 저비용, 예측가능성 및 법적 확실성을 확대한 상표제도 개혁 법안을 승인(15. 12.)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실적점검 및 평가⁴¹⁾

1) 실적점검의 의의

지식재산기본법 기반의 지식재산(IP) 정책 ‘Plan-Do-See’ 체계를 정착한다.

- (Plan)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 수립(11. 11.).
- (Do) 연도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부처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지식재산 재원 배분방향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 (See)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2) 점검의 방향

과제의 전문적 효율적 수행 및 정책지원을 위해,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각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지식재산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을 감안한 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다. 1차 기본계획 수행 기간 동안의 지식재산 정책 관련 변화 이력, 대내외 정책 동향 등을 감안하여 1차 기본계획을 대표할 만한 주요 성과를 요약하며, 5대 분야 20대 전략목표별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추진성과, 기대효과를 토대로 개선·보완 필요 사항을 정리한다.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정책 환경변화의 흐름을 감안하여 정책 목표의 달성효과를 8대 정책 분야별 주요 성과로 요약 제시한다.

3) 수행 체계

지식재산 전문위원회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을 운영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의 심층진단과 점검을 수행한다. 실적 점검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총 20명으로 정책평가단을 구성하고, 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 각 분과별 4명의 평가위원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41)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 및 '16년도 시행계획 점검·진단 연구(지식재산위원회 2017).

각 검토위원별로 1개의 전략목표를 중점 검토하고 분과별로 검토위원간 상호 토론을 통해 우수 관리과제 선정 및 개선 의견 등을 제시한다. 과제의 전문적 효율적 수행 및 정책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 타 연구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다.

- ① (KISTEP) 과제의 총괄은 성과확산실에서 담당하되, 정책 평가 및 진단을 위한 평가 세부 지침 작성 등은 R&D 평가센터 등 내부 전문가를 활용한다.
- ② (지재위) 전략기획단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정부 부처 자료 공유, 주요사안 논의·결정을 담당하고, 지재위의 전문위원이 전문가 자문회의로 참여한다.
- ③ (유관 기관) 국내외 지식재산동향분석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기관의 발행 자료 및 데이터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다.
- ④ (정책평가단) 제1차 기본계획 점검평가 및 2016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도출을 위한 전문가적 평가(서면·대면 등)의견을 제시한다.

4) 제1차 기본계획 성과 점검 결과⁴²⁾

제1차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 IP 창출 부분에 있어서 양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제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우수 특허 비중은 13%(2016년)에 불과하여 특허의 질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특허의 경우에도 점유율에 있어서 세계 5위로 도약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원천특허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IP 보호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국제적 평가는 31위(2011년)에서 27위(2015년)로 올랐으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IP 활용 부분에 있어서 수년간 IP 가치평가 체계가 정비되고 IP 금융투자 및 융자 실적이 크게 올랐으나 민간 중심의 오프라인 IP 거래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

IP 기반 조성에 있어서 특허 심사 및 심판 처리 기간은 체계적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특허 무효율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아 개선이 필요하였다. IP 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영세하며,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제1차 지식재산기본계획 추진 실적 점검·평가 결과(안)(지식재산위원회, 2017).

▼ 표 III-3-3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보완할 점

- ① 고품질 IP의 창출을 기반으로 한 활용도 제고
- ② 국내외 IP 분쟁 대응 및 중소기업의 기술·영업비밀 보호 강화
- ③ 민간의 IP 거래·금융 등 IP 시장 활성화
- ④ 특허 심사 품질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공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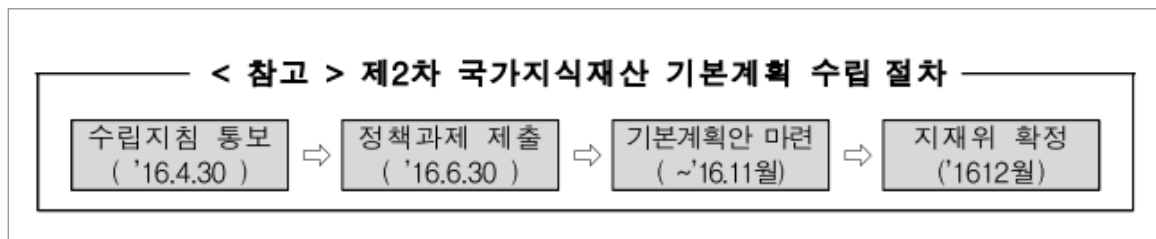
5) 점검결과 활용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별 성과진단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한다. 제1차 기본계획의 대표성과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별 시행계획 수립 시 우수관리과제의 추진실적을 활용하여 시행계획 내용의 충실성을 제고한다. 또한 정책방향별 우수 관리과제 선정제도를 통한 시행계획 추진의 부처 간 협력촉진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3)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지침 배포⁴³⁾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환경 변화 및 최근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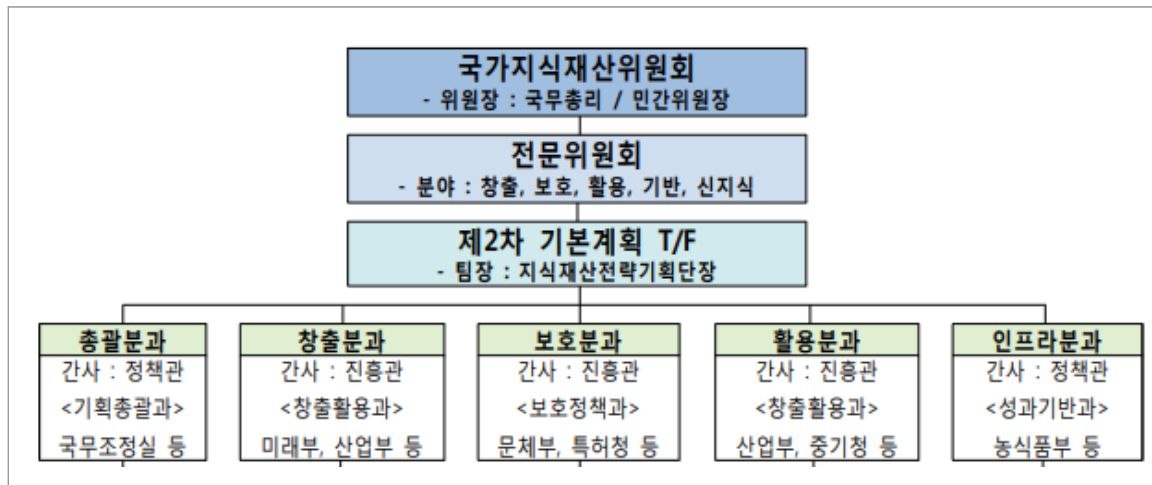
▼ 그림 III-3-1 |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제2차 기본계획의 잠정적인 구조(안)을 설계하기 위해 ①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경제 환경 및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구조(안)을 설계한다(전문가 회의 개최). ② 설계된 제2차 기본계획 구조(안)에 대한 지재위 산하 전문위가 검토하여 최종 확정한다.

43)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지침(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4).

▼ 그림 III-3-2 |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제2차 기본계획의 구조(안)은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 방향 및 전략 목표를 제시하여 각 부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관계 부처에 일정한 양식을 배포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20대 전략 목표에 따른 정책 과제를 작성하되, 제1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했던 소관 과제 중 계속과제 및 새롭게 추진할 사항을 포함한다.

(4)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국가 경쟁력에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지식재산 정책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 정책이슈의 발굴, 토론, 자문, 정책화로 이어지는 위원회의 전주기적 정책 지원 활동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한다.

지식재산 현안 및 핵심 어젠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민간위원, 관계부처,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현안 이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지식재산위원회 참여 위원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 교류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부처에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P Summit Conference 컨퍼런스에서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방안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여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① ‘IP Summit Conference’를 개최하여, 지식재산의 우리나라 국부 창출에의 기여 등과 관련된 핵심이슈 발굴

- (1차) 격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국가 성장과 지식재산의 역할
- (2차) 지식재산 부국의 길, 기업에 묻다
- (3차) 초연결 시대, 국부 창출을 위한 IP 전략

② 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연석회의(5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지식재산에 관한 실질적인 전문협의체로서 본회의 외에 ‘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 5개 분과로 지식재산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계 활동을 통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출한다. 정책기획 또는 이슈페이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안전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최소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활동 및 개인별·역할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원별 전문성에 따른 폭넓은 자료 및 정보 수집 활동과 이의 위원회내 확산을 통해 최신 동향 및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5)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정책과제 접수

기본계획의 구조(안)에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 방향 및 전략 목표를 제시하여 각 부처에서 5개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지재위에 과제별 실행계획을 제출한다. 실행계획 수립은 24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자체, 총 41개 기관에서 5대 정책방향 및 20대 전략 목표에 부합하게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 구조(안)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서 작성한 계획과 시책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6)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초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안)를 제출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는 각 부처·지자체에서 제출된 지식재산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한다. 기본계획 초안을 수립 후,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 및 정책이슈 워크숍, 분과별 전문위원회 등의 전문가 사전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 표 III-3-4 | 의견 수렴 기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의견수렴(정책이슈 워크숍)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5개 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7)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전문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한다

(8)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

수립된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4절 ●● 중국

1. 개요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집행이 초기에는 대외적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1세기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넘어 적극적 혁신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경제 기반이 급속히 지식의 생산과 관리로 이동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국가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6월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國家知識產權戰略綱要)’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중국의 지식기반경제는 더욱 강화되었다.⁴⁴⁾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은 국무원(国务院, State Council)과 국가지식산업국(國家知識產權局,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IPO))⁴⁵⁾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무원은 중앙행정기관으로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26개의 장관급 부처와 10개의 차관급 직속기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무원 산하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는 국무원에서 발표하는 정책 등 행정명령에 따라

▼ 그림 III-4-1 |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44)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및 업무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3. 12.

45) “국가지식산업국의 기능 확장으로 인하여 2018년 8월 발표된 「국가지식산업국의 새로운 영문 번역명 정식 사용 등 사항에 관한 통지」에 따라 기존의 SIPO(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CNIPA(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로 그 영문명이 변경되었다.”로 변경하였다.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는 국무원의 차관급 직속기구인 국가시장감독 관리총국이 총괄한다. 국가시장감독 관리총국 산하 국가지식산업국이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작권 분야의 업무는 중앙선전부 산하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 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⁴⁶⁾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단속 업무는 중국의 각 성·시에 지방 지식산업국을 두어 수행하고 있다.

국가시장감독 관리총국은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집행단속국과 가격감독검사 및 부정경쟁방지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집행단속국은 특허·상표권 침해 행위에 관한 집행 활동을 하며, 가격감독검사 및 부정경쟁방지국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제도 정비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국가지식산업국의 직무 및 내부 기관과 조직구성에 관한 규정(國家知識產權局職能配置、內設機構和人員編制規定)에 따르면 국가지식산업국은 ①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시행, ② 지식재산권 보호, ③ 지식재산권 활용 장려, ④ 지식재산권 심판, ⑤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 시스템 구축, ⑥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의 심사 업무는 전리국(專利局)과 상표국(商標局)에서 수행하고 있다.

2.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정 및 절차

(1)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國家知識產權戰略綱要)

국무원은 2008년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정책인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國家知識產權戰略綱要, 이하 ‘전략강요’)'를 발표하였다. 동 전략강요는 2020년까지 중국 국가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관리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창조형(創新型) 국가 및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⁴⁷⁾

1) 2004년 국무원의 ‘국가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 추진’ 지시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고, 2004년 전국 특허 관련 회의에서 국무원의 우이부 총리는 ‘국가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 추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⁴⁸⁾

46) 단, 현재 국가지식산업국으로 관련 행정기능을 집중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47) 강요는 비교적 장기적인 시간 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지도성 문건이다. 국가정권기관, 정당조직과 기타 사회정치집단이 소속된 계급과 계층의 이익과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행동원칙, 임무, 업무방식, 절차 및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는 문건이다.

48)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앞의 문헌.

2) 2005년 1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國家知識產權戰略制定工作領導小組)’ 설치

상기 지시에 따라 중국은 2005년 1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國家知識產權戰略制定工作領導小組)’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제정하고 그러한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⁴⁹⁾

위원장은 국무원의 부총리, 부위원장은 지식산권국(知識產權局) 등 7개 부처 차관급이 맡고, 위원은 공무원 23개 부처의 주요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지식산권국에 설치되어 지식재산권 전략 제정계획 수립·연구, 국내외 지재권 관련 중요사항 관리 및 위원회 보고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회는 3년여의 회의 끝에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제정하였다.⁵⁰⁾

이후 동위원회는 해체되고, 전략강요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 부처 간 연석회의(國家知識產權戰略實施工作部際聯席會議,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mulation Office)로 개편되었다. 동위원회가 해체된 이후 위원회의 업무는 모두 국가지식산권국으로 이관되었다.⁵¹⁾

3) 2007년 10월 15일 ‘지식재산권전략실시’ 제안

후진타오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제17대 보고 중 ‘지식재산권전략실시’를 제안하였다.

4) 3년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문건 제정

미국이 법안과 정책으로 지식재산권전략을 수립하였다면, 중국은 3년여에 걸쳐 총 30여 개 부서 수백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가지식재산권전략’ 문건을 마련하였다.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은 ‘강요(綱要)’와 20개의 개별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강요는 총 6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총론에 해당한다. 개별주제는 ① 지식재산권전략의 거시적 문제(중국 지식재산권발전 목표 등), ② 지식재산권의 주요 유형, ③ 지식재산권의 법제 건설, ④ 지식재산권의 주요 관리 부분, ⑤ 지식재산권중점 업종 등의 5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강요의 내용을 한층 더 심화한 것이다.⁵²⁾

49) 위의 문헌.

50) 위의 문헌.

51) 위의 문헌.

52) 유예리, “중국의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의 주요 내용”, 맞춤형 법제정보, 38면.

5) 2008년 6월 5일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국무원 상무회의 통과 및 반포

전략강요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국무원은 2008년 6월 5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부처 등에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年))

중국 시진핑 정부는 2013년 중고속 성장시대인 뉴노멀(new normal)로의 진입을 선언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중국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분야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⁵³⁾ 반면 2008년에 수립하였던 중국의 지식재산권 기본계획인 전략강요는 방향성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와 함께 IP 주요국들⁵⁴⁾ 또한 2000년대 지식재산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3년부터 이러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지식재산 심화계획을 수립하였다.

1) 2014년 7월 15일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 발표

이러한 중요성 인식 및 세계적인 추이에 맞춰 중국 국무원 또한 중국의 지식재산 증장기 심화계획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14년 7월 15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8개 정부 부처⁵⁵⁾와 공동으로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와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 加强和改进知识产权管理的若干意见)’을 발표하였다.⁵⁶⁾

동 의견은 지식재산권의 과학적 관리 수준 향상 및 지식재산권을 통한 시장 발전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 의견은 ① 지식재산권 행정체계 보완, ② 법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③ 지식재산권 관리의 규범화 시도, ④ 서비스 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53) 김송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ISSUE & FOCUS on IP.

54) 미국은 2014년 3월 USPTO 2014-2018 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영국은 2014년 6월 UKIPO 공동계획 2014-2017이라는 지식재산권 증장기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55) 국가지식재산권국, 교육부, 과학부, 공업정보화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저작권국, 중국과학원이 이에 속한다.

56) 이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 등,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방안 발표”, 2014. 8. 20 참조.

첫째, 지식재산권 행정 체계 보완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행정 체계를 통일하고 각 부처의 업무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산 투입, 세금 및 금융제도 보완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한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의 효율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법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주요 산업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리 감독을 심화실시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 시장 질서를 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지식재산권 관리의 규범화 시도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경영 표준을 도입하고 지식재산권 자산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관리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서비스 혁신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공공 플랫폼 구축 및 인력 수급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의 3가지 부분에 대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2014년 12월 10일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 (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年)) 수립

2014년 12월 10일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의 달성 지표를 설정하였다.⁵⁷⁾ 동 행동계획은 지식재산권의 양적 성장에 주로 초점을 두었던 2008년 전략강요를 발전시킨 것으로 질적 성장도 함께 강조한 추진전략이다.

(3)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 (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 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 수립·시행

이후 중국 국무원은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 및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이후 매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 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⁵⁸⁾

(4) 2019년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知识产权强国 战略纲要)’ 제정 논의

1) 2019년 5월 14일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 초안 작성 착수

국무원은 2019년 5월 14일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知识产权强国 战略纲要) 제정에 착수하고, 후속조치로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 제정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57) 김송이, 앞의 문헌.

58) https://www.mondaq.com/china/patent/953984/5147344397-443974792450896-202045380-51_648498855111649328-4405344397-52628516524422854925-4815654364.

등 위원회는 경제·사회·과학기술·지식재산권·기업의 인사로 구성된다. 2035년 중국을 지식재산권강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⁵⁹⁾

2) 2019년 9월 27일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 제정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국무원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부처 간 연석회의는 2019년 9월 27일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 제정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 초안 작성 진행상황을 소개하고 작성 시 고려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⁶⁰⁾

국가지식재산권국의 허화(贺化) 부국장은 강요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연석회의에서 각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강요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자문위원인 이엔준치(严隽琪)는 강요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담아 작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자문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혁신을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체계를 현대화하며 대외개방 확대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요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⁶¹⁾

5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 제정 방향 논의”, 2019. 10. 17.

60) 위의 문헌.

61) 국가지식재산권국 보도자료, 知识产权强国战略纲要制定专家咨询委员会第一次全体会议召开, 2019. 05. 15. (<https://www.cnipa.gov.cn/zscqgz/1139163.htm>, 2019. 11. 11.);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 지식재산 환경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9. 12.

제5절

●●
일본

1. 개요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순환적 경기후퇴와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93년까지는 IMD국가경쟁력지수에서 1위를 고수하였으나 2002년에는 30위까지 하락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주요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에 더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수출은 감소하였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여 2001년 무역흑자가 30% 대폭 감소하는 상황이 나타났다.⁶²⁾

이와 같이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 사회로 점차 이동하고 동아시아 국가 경제의 급성장으로 일본의 산업경쟁력에 위기감이 발생하자, 2002년 2월 25일 고이즈미 전 총리는 연구활동 및 창조활동의 성과를 지식재산으로써 전략적으로 보호·활용하여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하는 ‘지식재산입국’을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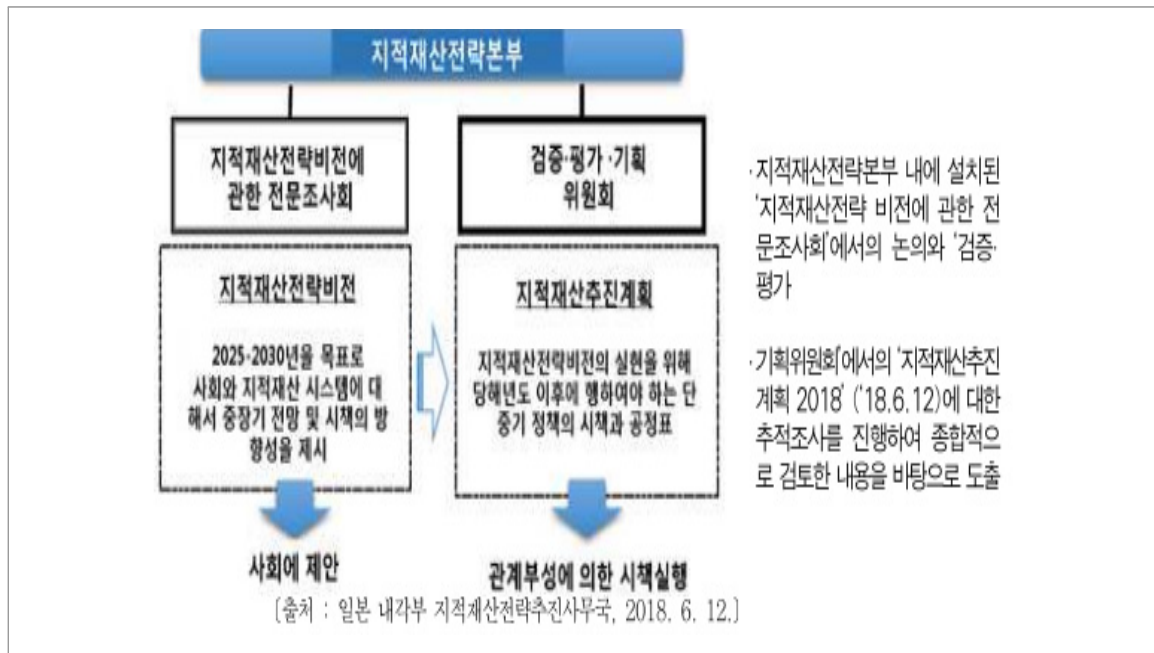
지식재산입국의 선언 이후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적재산전략회의’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2002년 7월, 일본 산업경쟁력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전략에 관한 기본방향과 구체적 행동계획이 총망라된 ‘지적재산전략대강’을 발표하여 일본의 ‘지식재산입국’을 위한 정책이 구체화되었다.

‘지적재산전략대강’의 발표 후 일본 내각은 ‘지적재산기본법’ 준비실을 설치하여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설치와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작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기본법’ 작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2002년 11월에 ‘지적재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3년 3월 지적재산기본법을 근거로 전 각료가 참석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었다. 일본은 이처럼 2003년 제정된 ‘지적재산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지적재산전략비전’을 통해 미래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시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각 관계부성이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인 연도별 단기·중기 시책은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다.⁶³⁾

62)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김혁준 외 6인, “주요 선진국 지식재산전략의 추진성과분석 및 한국전략에의 적용가능성 연구”, 「정책연구 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55-56쪽 참조.

63) 심현주, “일본지적재산전략비전 및 지적재산추진계획 2019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심층분석 보고서」 제2019-16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8. 1-2쪽 참고.

▼ 표 III-5-1 |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수립·추진 체계



이와 같은 체계에 따른 일본의 기존 지식재산정책은 콘텐츠 강화나 인재 육성과 함께 지식재산 창조·보호·활용으로 구성된 「지식창조 사이클」을 정책의 축으로 삼아 왔다. 일본은 「지식창조 사이클」 강화라는 기조 아래, ① 대학의 지식재산본부 설치를 통한 산학연계강화, ② 지식재산분야 전문 분쟁 처리 체제인 지식재산고등재판소(특허법원)의 설립, ③ 기간제 심사관 대량채용에 의한 특허심사기간의 단축화 등의 주요 지식재산정책을 실시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지식재산에 대한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분야에서 두드러진 진척을 이루었다.⁶⁴⁾

그런데 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지위 향상, ② 중소·벤처기업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의 글로벌화, ③ 콘텐츠 미디어의 다양화 등 지식재산정책의 전제가 되는 사회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2013년 6월에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지난 10년간의 '지식재산추진계획'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10년간의 '지식재산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식재산정책비전'을 발표하였다.⁶⁵⁾ 그리고 그 이후 2018년 6월에는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해 기존 '지식재산정책비전'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지식재산전략비전: 가치 디자인 사회를 목표로'를 발표하였다.⁶⁶⁾

6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비전”, 『National IP Policy』 제2013-10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6., 2-3쪽.
 65) 지식재산정책비전(2013)은 해외 신흥시장과 신흥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①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②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③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한 환경 정비, ④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강화를 그 전략으로 한다.
 66) 지식재산전략비전(2018)은 '가치 디자인 사회'를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2025년-2030년의 일본사회와 지식재산시스템의 중장기 전망 및 시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

2.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과정 및 절차

일본은 정부 차원의 국가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는 있지만, ‘지적재산전략비전’을 통해 미래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시책의 방향성만을 확정된 후, 각 관계부성이 추진해야하는 구체적인 연도별 단기·중기 시책은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다.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7년도 12월에 「지적재산전략비전(2018)」 설정을 위해 「지적재산전략비전에 관한 전문조사회」를 설치하고, 2018년도 6월까지 6차의 회의를 통해 일본의 IP 전략 수립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전략비전에 관한 전문조사회」 설치('17. 12)
 - 지적재산전략본부령(2003년 정령 제45호) 제2조에 근거하여 지적재산 추진계획에 관한 중요과제 조사를 위해 전문조사회를 설치함
 - 「지적재산전략비전(2018)」은 2025~2030년경을 내다보고 중장기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적재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워킹그룹을 두어 세분화 검토하기로 함
- 제1회 지적재산전략비전 전문조사회의 검토('17. 12)
 - 전문조사회 취지 및 미래의 사회상에 대하여 의견수렴
- 제2차 지적재산전략비전 전문조사회의 검토('18. 2)
 - ‘미래 사회상’에서 특히 중요한 가치와 그 이유 및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제3차 지적재산전략비전 전문조사회의 검토('18. 3)
 - 쿨재팬 전략에 따른 일본 브랜드 강화에 관한 논의
 - 미래 지식재산시스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의견수렴
- 제4차 지적재산전략비전 전문조사회의 검토('18. 3)
 - 지적재산전략 비전의 실현을 위한 전체적인 틀과 개별 시스템에 대해 논의
- 제5차 지적재산전략비전 전문조사회의 검토('18. 4)
 - 지적재산전략비전 초안 검토
- 제6차 지적재산전략비전 전문조사회의('18. 4)
 - 지적재산전략비전 초안 및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검토
- 지적재산전략비전 공표('18. 6)

(1) 지적재산전략비전에 관한 전문조사회 설치⁶⁷⁾

지적재산전략비전에 관한 전문조사회는 지적재산전략 본부령(2003년 정령 제45호) 제2조에 규정에 따라 학계와 산업계, 연구계로 구성된 전문연구위원, 내각부, 경제산업성, 특허청에 소속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지적재산전략비전에 관한 전문조사회는 지적재산전략비전(2018)

67) 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に関する専門調査会에 관한 설치근거 및 구성원은 일본内閣官房内閣広報室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senryaku_vision/. 2020.09.14.방문)

수립을 위해 '1) 미래로 이어지는 현재의 환경 변화와 징후를 분석하여 2) 미래의 사회상을 예측하며 3) 미래의 '가치'와 그 가치를 낳는 '구조'를 고민한다. 4) 일본의 특징을 고려하여 5) 미래의 '구조'를 위한 검토 과제로 '가치디자인사회'를 고민한다'는 검토단계를 설정하였다.

(2) 제1차 전문조사회 검토⁶⁸⁾

전문조사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혁신(Innovation)이 창출되어, 인간이 행복해지는 미래사회상'에 대해 '현재로부터 예측되는 미래(제1주제)'와 '미래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지(제2주제)'의 순으로 그룹 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1주제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와 시장, 기업의 경계의 유연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의 활성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 새로운 가치는 무엇일지, 지적재산권의 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지적재산권이 성립되는 것에 국가에 의한 권리 담보가 있지만 앞으로 국경이 유연해지면 '권리를 담보해 줄 국가의 보장'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오픈소스의 힘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교환하였다. 제2주제와 관련하여서는 미래에서 추구될 행복의 가치, SNS를 활발히 하면서도 이러한 연결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등의 미래의 상반성(相反性)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세계 속에서 일본의 위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3) 제2차 전문조사회 검토⁶⁹⁾

지적재산전략비전의 책정을 향한 논점 정리(안)에 대해 검토하면서, '미래의 사회상에서 특히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제1주제)'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나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제2주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제1주제의 키워드는 ①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선택, ② 리얼(real)이 살아있는 실감, ③ 융합, ④ 다양한 가치·차이를 받아들이는 사회·GDP를 초과하는 지표였으며, 제2주제 논의에서는 제1주제의 키워드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나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68) 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に関する専門調査会(第1回会合) 議事要旨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senryaku_vision/dai1/gijiyoshi.pdf)

69) 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に関する専門調査会(第2回会合) 議事要旨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senryaku_vision/dai2/gijiyoshi.pdf)

(4) 제3차 전문조사회 검토⁷⁰⁾

제3차 회의에서는 먼저 가치와 방법에 대하여서는 지금의 사회에서 소비자 잉여가 측정되지 않는 GDP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신할 지표가 일본에서도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쿨재팬 전략은 ‘창조입국’ 또는 ‘크리에이티브입국’을 의미하는 것이라 분석하고, 일본 브랜드 강화에 대하여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일본의 매력⁷¹⁾이 국가로서의 중요자원이라고 진단하였으며, 소재를 콘텐츠화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본만의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블록체인 등 데이터 사용방식의 변화, 경영 및 지식재산시스템에의 AI 등의 활용, 디지털아카이브의 활용 필요성, 관련 인재양성의 측면도 함께 분석하였다.

(5) 제4차 전문조사회 검토⁷²⁾

제4차 회의에서는 먼저 현재까지 작성된 지적재산전략비전 실현을 위한 전체 틀이 추상도가 높음을 지적하고, 강점·약점이 아닌 일본사회·문화의 특징을 논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가치창조입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 시스템과 이를 실현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지향하여야 하는 키워드로 사람·물건·돈 이외에 ‘지식’을 집적하고 이를 축적·반입하는 원칙과 국가 차원에서의 창조를 지양하는 것을 꼽았다.

(6) 제5차 전문조사회 검토⁷³⁾

제5차 회의에서는 지적재산전략비전 초안에 대한 각 장별 수정사항 검토를 진행하고, 지적재산전략비전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지적재산전략비전 초안을 각 장별로 살폈으며, 제1장에는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형식적인 측면에서 개요 또는 요약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점, 제2장의 일본의 미래상에 대한 서술과 함께 쓰이고 있는 「~입국」이란 용어가 위하감이 있다는 점, 제3장은 2030년을 위한 시책을 지금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각만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 제4장에서는 일본의 특징의 서술 시 위화감을 줄히는 방향의 고려가 필요해

70) 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に関する専門調査会(第3回会合) 議事要旨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senryaku_vision/dai3/gijiyoshi.pdf)

71) 치유를 연상하게 하는 자연이나 비언어적인 부분, 전통의 느낌이 살아있는 부분, 우수한 초등교육 등을 꼽았다.

72) 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に関する専門調査会(第4回会合) 議事要旨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senryaku_vision/dai4/gijiyoshi.pdf)

73) 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に関する専門調査会(第5回会合) 議事要旨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senryaku_vision/dai5/gijiyoshi.pdf)

보인다는 점, 제5장에서 이상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지적재산전략의 지향점인 ‘가치 정의 입국’이라는 슬로건을 재검토하여, ‘가치 디자인 사회’로 결정하였다.

(7) 제6차 전문조사회 검토⁷⁴⁾

제6차 회의에서는 제5차 회의에서 지적된 지적재산전략비전 초안의 수정사항을 검토한 후 지적재산전략비전의 대상 독자가 누구인지, 대중에 읽히기 쉽게 씌어져 있는지, 요약문의 분량과 내용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지적재산전략비전 공표 후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검토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전략비전 보고서 완성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분담을 밝혔다.

74) 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に関する専門調査会(第6回会合) 議事要旨 참조.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senryaku_vision/dai6/gijiyoshi.pdf)

제6절 ●● 소결

이상으로 국제기구인 WIPO 및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 IP 전략상에 나타난 전략 수립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상의 절차를 비교·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 표 III-6-1 |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 수립 절차 비교

	WIPO	한국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일본 (지식재산전략비전)	중국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
사전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IP 전략 수립 목적 파악 전략 수립을 위한 기구, 조직설정 분야별 전문가 구성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 컨설팅 팀 (업무) 대상국가에 대한 IP 전략 수립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국 전문가 확보, 대상국 전략 수립팀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 국가지식재산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IP 전략 수립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 지식재산전략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전략비전에 관한 전문 조사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 국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 강요 재정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경제, 사회, 과학기술, 지식재산 기업 인사로 구성)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수립 절차의 기획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자료의 수집 - P 관련 통계 등 * 설문조사, 개별 인터뷰를 통한 정보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 관련 국내·동향 및 이슈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지식재산환경 분석 - 주요국가의 지식재산 정책동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전문조사회 검토 제2차 전문조사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의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국무원 지식재산전략 실시 업무부처 간 연석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 강요 제정 전문가 자문위원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 전략의 실적 점검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 전문위원회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평가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 4차 전문조사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쿨재팬 전략 (브랜드 강화) * 전체적인 내용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연구 수행 및 초안작성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지침 배포(지재위 전문위원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 6차 전문조사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 및 향후 진행방향 검토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IP 전략 수립 대상국에 대한 의견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데이터 공유 및 IP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에 대한 의견 수립(전문위 5개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전략비전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 내용 소개, 의견수렴

	WIPO	한국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일본 (지식재산전략비전)	중국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
4단계	• 국가 IP 전략 초안 작성의 기획 및 관리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향후 5년간 IP 정책 과제 접수		
5단계	• 벤치마킹 및 대표사례 적용			
6단계	• 국가 IP 초안 마련	• 국가 IP 전략 초안 마련 • 국가 IP 전략(안) 관계부처 회의		
7단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		

WIPO 보고서상의 국가 IP 절차는 국가 IP 전문가의 입장에서 개도국의 국가 IP 전략을 수립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각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개도국은 지식재산 정책이나 전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거버넌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사전준비단계부터 해당 국가의 IP 전략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 일본, 중국은 지식재산 정책부처가 주도하여 국가 IP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전략 수립 준비를 하면서, 지식재산 관련 국내외 이슈와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및 환경을 분석한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을 수립한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 IP 전략 수립위원회를 구성한 후,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주요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향후 추진 과제 등을 설정한다.

이와 같이, 개도국의 국가 IP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절차를 고려할 경우에는 WIPO가 제시한 절차가 한국, 일본, 중국의 국가 IP 절차 수립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WIPO 보고서의 절차를 참조하여,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국가 IP 전략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할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표 III-6-2 |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 수립 절차 비교

단계	주요 수행 내용
대상국 IP 전략 수립 준비단계	(1) 국가 IP 전략 수립 목적 파악: 전략 수립국의 IP 전략 수립 이유와 목적 파악 (2) 컨설팅 팀 구성: 대상국의 국가 IP 전략 수립 지원 팀 설치 (3) IP 분야별 이해관계자 선정: IP 창출, 활용, 보호, 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 풀
1단계: 컨설팅 팀의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컨설팅 팀 •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국가에 대한 프로파일 검토: 경제적, 지리적, 인적, 교육 등) - IP 전문가 확보 및 과업준비: 대상국 국가의 현지 전문가 등을 확보 - 대상국의 IP 전략 수립팀과의 국가 IP 전략 수립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실시
2단계: IP 환경분석	(1) 데스크 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 수집 (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웹사이트 등을 통해 대상국 국가 IP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 수집 (3) 데이터 수집 대상자: IP 관련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그룹 (4) 데이터 수집절차: 기관 방문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3단계: 전문가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IP 전략 수립 대상국의 전문가에 대한 의견 청취 지식재산 현안 및 핵심 어젠다에 대한 인식 공유, 민간위원, 관계부처,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현안 논의
4단계: 국가 IP 전략 초안 작성의 기획 및 관리	(1) 전략적 목적과 목표의 기준 설정: IP 환경분석에 따른 강점 및 약점 보완 (2) 초안 작성시 고려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전략과 국가 아젠다와 연결 - 비전, 미션 및 목표 설정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 국가 IP 운영 기구 설치
5단계: 벤치마킹 사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치마킹을 통한 국가 IP 전략의 효율화
6단계: 국가 IP 초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IP 전략에 대한 검토를 통한 국가 IP 전략 도출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 개발을 위한 지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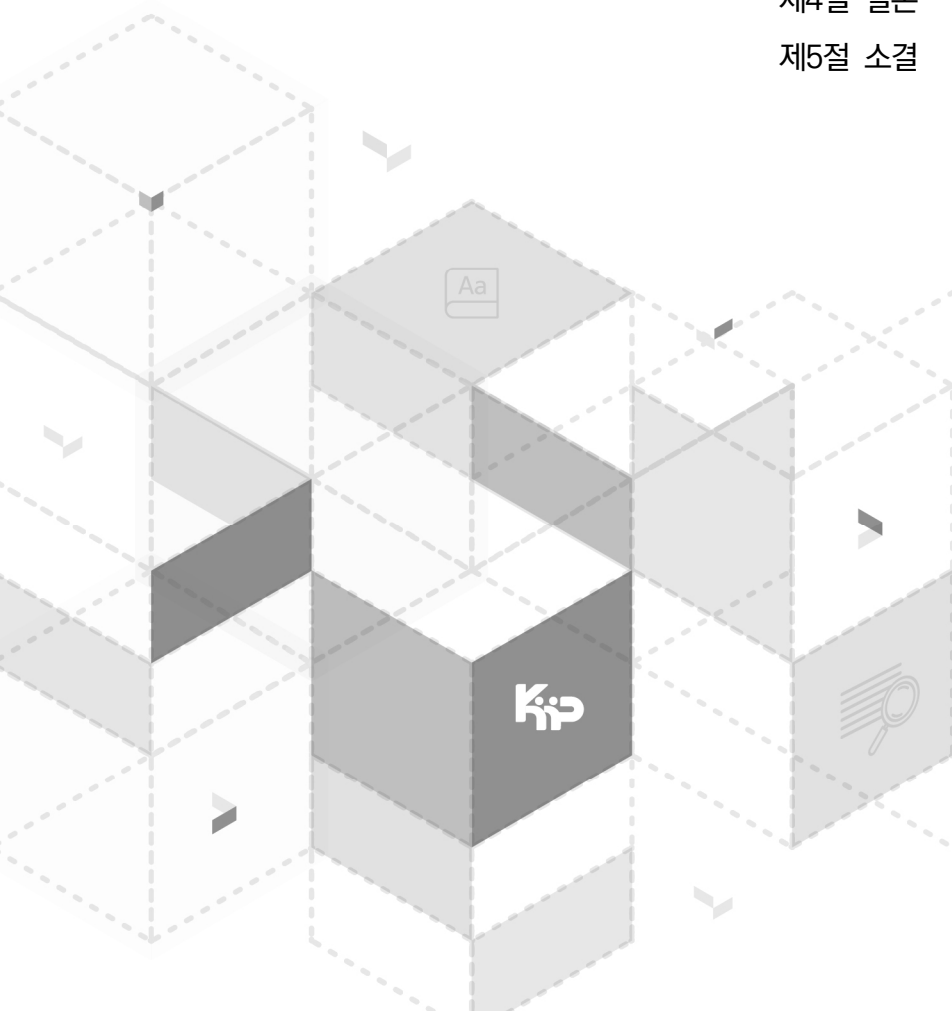
제1절 WIPO 지침상의 IP 전략 지표

제2절 한국

제3절 중국

제4절 일본

제5절 소결



제1절

WIPO 지침상의 IP 전략 지표

WIPO 지침에서는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⁷⁵⁾ WIPO는 국가 IP 전략의 주요 항목을 6개 항목, 즉 (i) IP 행정 및 관리, (ii) 대학, 연구 기관, 비즈니스, 산업, 중소기업 및 개인별 IP 생성, (iii) 대학, 연구 기관, 비즈니스, 산업, 중소기업 및 개인의 IP 및 기술 이전, 상업화, (iv) 저작권 및 저작권 산업, (v) 식물 다양성 권리 및 종자 산업(식물 다양성 보호), (vi) IP 권리 집행으로 나누고 있다.

▼ 표 IV-1-1 |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항목 지표

주요 항목	내용
1. IP 행정 및 관리	특허청의 법적 지위
	특허청의 자율성
	특허청의 주요 기능
	특허청의 직원 및 인적자원 개발 계획
	방식 및 실체 심사
	특허청의 자동화 및 현대화
	IP 출원 및 권리부여
	IP에 대한 국내법
	IP 법원
	TRIPS 준수
	TRIPS에서의 유연성(강제 라이선스 및 병행 수입)
	국제 계약, 조약 및 의정서 준수
	IP 등록 전문가(변호사 및 대리인)
	2. 대학, 연구 기관, 비즈니스, 산업, 중소기업 및 개인별 IP 창출
산업 혁신 및 특허 프로모션	
IP 정책	
연구 개발 자금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국가 혁신 시스템	
기술 및 IP 정보 서비스	
IP 인식 및 홍보 프로그램	

75) WIPO, Methodology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The Process), 2016, p.37(TEMPLATE 10 Possible indicators for developing national IP strategies).

주요 항목	내용	
3. 대학, 연구 기관, 비즈니스, 산업, 중소기업 및 개인의 IP 및 기술 이전, 상업화	기술 이전 기관(TTO)	
	IP 자산의 평가	
	IP 자산의 상업화 자금 조달	금융 상품
		담보
		사업 계획
		재무보고
		민영화
		수익 창출 또는 유동화
		벤처 캐피탈
		조인트 벤처 또는 합병 정부 금융 기관
	IP 자산의 라이선싱	
	비즈니스 (기술) 인큐베이션	
	제품 및 프로토타입 개발 시설	
	과학 기술 단지	
기술 이전 정책		
IP 상업화 전문가(평가, 감사, 라이선스 및 기술 관리자)		
4. 저작권 및 저작권 산업	저작권 부서의 법적 지위	
	저작권 부서의 자율성	
	저작권 부처의 주요 기능	
	저작권 부서의 직원 및 인적자원 개발 계획	
	국가 문화 정책	
	저작권 및 관련 산업의 경제적 영향	
	창조적 산업 촉진	
	단체 관리 조직	
	전통지식과 민속	
	IP 및 정보 통신 기술(ICT)	
5. 식물 다양성 권리 및 종자 산업 (식물 다양성 보호)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법적 지위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자율성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주요 기능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 직원 및 인적 자원 개발 계획	
	농업 정책	
	유전자원과 제품	
	지리적 표시	
	식물 다양성 권리의 상업화	
	사업 협회	

주요 항목	내용	
6. IP 권리 집행	지적재산권 집행에 적용되는 법률	
	IP 집행 범위	일반
		민사(또는 행정) 절차 및 구제
		임시 조치
		국경 조치
		형사 절차 및 처벌
	IP 집행 기관	
	IP 집행 담당자	
	대중/소비자 교육 및 인식 제고	

제2절 ●● 한국

1. 제1차 국가지식재산 전략 지표

(1) 주요 내용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은 5대 정책방향(①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②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 체계 정비, ③ 지식재산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 질서 구현, ④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 ⑤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 그림 IV-2-1 |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 목표



①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연구개발 전(全)주기적·단계별 지식재산 창출 전략의 수립 및 표준특허 확보 추진을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추진, 차세대 콘텐츠의 창출 발굴 촉진 및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콘텐츠 브랜드 디자인의 창출 경쟁력 강화, 창의력 증진을 위한 제도 여건의 개선 및 외부 지식재산자원 활용 촉진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추진 및 창작자의 전문 창출역량 제고, 연구자 및 지식재산 관리기관의 역량 고도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②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 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 정확한 고품질 심사 등록 서비스 제공 및 저작권 허위등록 방지 및 저작권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불법복제 및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건전한 지식재산 유통질서 확립, 해외 지재산 보호기반 조성 및 현지 침해 대응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지식재산 분쟁해결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분쟁 해결의 신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③ 지식재산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 질서 구현

지식재산 성과 확산체계의 선진화,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및 사업화의 지원을 통해 고부가 수익 창출 촉진,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의 육성 및 지식재산 가치 평가, 금융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추진,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지식재산 경영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육성, 지식재산 권리남용 탈취 및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체제를 확립하여 지식재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④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등 지식재산 공정사회 구현,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조성 및 지식재산 창출·법조·서비스·교육·실무 인력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추진,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지식재산 연구기반의 강화 및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의 보급 확산으로 지식재산 활동 고도화,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선도, 공적개발원조 확대,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 협력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⑤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

식물신품종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구축 및 제도 정비 추진, 생물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 강화로 미래 생명산업의 선도 기반 마련, 자원 주권 확보 및 수익 창출, 전통자원 관련 국제적 논의 대응 및 제도개선, 전통자원의 체계적 발굴·관리, 창작·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지리적 표시제도, 비전형적 식별표지(소리 냄새 등) 및 새로운 저작권 분야(퍼블리시티권, 방송 포맷 등) 보호 방안 연구 및 이용 활성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 표 IV-2-1 |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주요 성과지표

정책방향	주요 성과 지표
지식재산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특허 확보 비율: 3.1%(‘10) ⇨ 5.0%(‘16) • 특허동향조사 분석 실시 비율: 31.1%(‘10) ⇨ 100%(‘16) • 콘텐츠 수출액: 30억 달러(‘10) ⇨ 75억 달러(‘16) • 디자인 국제경쟁력 순위: 15위(‘10) ⇨ 7위(‘16) •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 특허 수: 0.51(‘10) ⇨ 0.70(‘16) • 국제공동연구비 비중: 6.7%(‘10) ⇨ 10.0%(‘16) •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재권 전문인력 확보율: 17%(‘10) ⇨ 30%(‘16) • 전담인력 보유 중소기업 비율: 27.4%(‘10) ⇨ 40%(‘16)
민간 중심의 IP 거래·금융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심사처리기간: 18.5개월(‘10) ⇨ 10개월(‘16) • 저작물 합법시장 침해율: 19.2%(‘10) ⇨ 15%(‘16) • 지식재산 보호지수(IMD): 32위(‘10) ⇨ 26위(‘16) • 해외진출 저작물 인증 건수: 1,800건(‘10) ⇨ 2,500건(‘16)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컨설팅 건수: 1,335건(‘10) ⇨ 2,300건(‘16) • 심결 취소율 제고: 21.3%(‘10) ⇨ 20% 이하(‘16) • 심판처리기간 단축: 10.6개월(‘10) ⇨ 6개월(‘16)
IP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공공연구기관 연구생산성: 1.48%(‘10) ⇨ 3.4%(‘16) • 기술신탁 이전 건수: 11건(‘10) ⇨ 150건(‘16) • 창의자본 조성: 300억 원(‘10) ⇨ 6,000억 원(‘16) •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시장 규모: 3,400억 원(‘10) ⇨ 5,000억 원(‘16) • 중소기업 기술임치 건수: 453건(‘10) ⇨ 10,000건(‘16) • 동반성장협약 체결 기업 수(누계): 165개(‘10) ⇨ 200개(‘16)
IP 가치 존중 및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기업 비율: 46.4%(‘10) ⇨ 65%(‘16) •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창출 비율: 18.7%(‘10) ⇨ 21.8%(‘16) • 지식재산 연구인력(누계): 29,000명(‘10) ⇨ 100,000명(‘16) •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누계): 2,000명(‘10) ⇨ 3,000명(‘16) • 산업재산권 정보 건수: 192백만 건(‘10) ⇨ 310백만 건(‘16) • 지식재산을 활용한 ODA 사업 수: 3건(‘10) ⇨ 7건(‘16) • 지역 기업 대상 지식재산 컨설팅 회수 100건(‘10) ⇨ 200건(‘16)
국내 시장을 넘어 IP의 해외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 품종보호 출원 건수: 5,141건(‘10) ⇨ 8,962건(‘16) • 신제품 종자 수출액: 2,500만 달러(‘10) ⇨ 7,000만 달러(‘16) • 고유 생물자원 확보 수: 37,000종(‘10) ⇨ 47,000종(‘16) • 전통지식자원 활용 소득화사업 지원 수: 376개소(‘10) ⇨ 446개소(‘16) • 무형문화유산 국가대표목록 수: 525개(‘10) ⇨ 1,000개(‘16) • 지리적 표시품 출하량: 155천 톤(‘10) ⇨ 536천 톤(‘16) • 지리적 표시 관련 등록 건수: 209건(‘10) ⇨ 377건(‘16)

(2) 주요 지표의 산식 및 방법

①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KPI명	정의/의미	측정방법	성과지표		데이터 출처
			현재값	목표값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추진	국가R&D-특허-표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통한 표준화 성과 평가	표준특허 확보 비율	3.1%('10)	5.0%('16)	특허전략 개발원 제공 국내 표준특허 창출기반 확대 지원방안 연구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R&D 기획 시 특허정보 활용 확대, 지재산 선점 가능성을 고려한 기술로드맵 구축 지원 성과 평가	특허동향조사 분석 실시 비율	31.1%('10)	100%('16)	특허전략 개발원, 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기기-콘텐츠-플랫폼 통합 추세 대응, 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융합형 콘텐츠(가상현실 3D 홀로그램) 육성 성과 평가	콘텐츠 수출액	30억 달러 ('10)	75억 달러 ('16)	문체부(콘텐츠 산업통계조사보고서 콘텐츠 진흥원)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창출 기반 마련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 권리화 및 해외진출 지원, 디자인과 기술R&D의 융합 및 전문인력 고도화 성과 평가	디자인 국제경쟁력 순위	15위('10)	7위('16)	핀란드 Designium의 Global Design Watch 자료
창조적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소규모 연구자 그룹의 기초 연구, 도전적·창의적 연구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창의력 중심 평가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 특허 수	0.51('10)	0.70('16)	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데이터 오류 추정, KISTEP에 따르면 2011년 0.222건)
개방형 연구개발 및 해외 우수인재의 활용 촉진	산학연 협력연구 사업 우대 강화, 해외 우수 지식재산 창출인력의 유치 및 교류 활성화, 연구소, 연구자 간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성과 평가	국제 공동연구비 비중	6.7%('10)	10.0%('16)	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데이터 오류 추정, KISTEP에 따르면 2006년 6.7%. 2010년 자료 없음)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 고도화	기관별 보유 IP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평가 및 관리규정 마련 등 우수 지식재산 중심 관리 성과 평가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재산 전문인력 확보율	17%('10)	30%('16)	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데이터 오류 추정, KISTEP에 성과활용, 확산, 전담조직 전문인력 확보율 따르면 2009년 17%. 2010년 자료 없음)
중소기업의 핵심·원천 특허 창출 역량 강화	지재산 경영전략 수립 지원 및 분쟁대응 등 강한 지재산 창출 및 확보 지원 성과 평가	전담인력 보유 중소기업 비율	27.4%('10)	40%('1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②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 체계 정비

KPI명	정의/의미	측정방법	성과지표		데이터 출처
			현재값	목표값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	적정 심사처리 기간 유지를 위한 심사 인력 증원 및 효율적 운영, 맞춤형 심사 처리제도 내실화 성과 평가	특허 심사처리기간	18.5개월 ('10)	10개월 ('16)	특허청, 최근 10년간 심사처리 기간 추이
지식재산 침해물품 불법 유통 방지 체계 구축	새로운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온라인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성과 평가	저작물 합법시장 침해율	19.2%('10)	15%('16)	문체부, 저작권백서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국경조치 강화를 위한 단속 시스템 개선, 신고 침해여부 판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성과 평가	지식재산 보호지수 (IMD)	32위('10)	26위('16)	국제경영개발원(IMD)
해외 지재권 보호 기반 조성	해외 지재권 침해실태 조사 및 관련 정보 동향 제공 등 지재권 침해 예방 인프라 구축 성과 평가	해외진출 저작물 인증 건수	1,800건 ('10)	2,500건 ('16)	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저작권 위원회
침해 대응 현지 지원 체계 구축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기관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설치 확대, 지재권 소송보험제도 이용 활성화 성과 평가	해외지식재산 센터 (IP-DESK) 컨설팅 건수	1,335건 ('10)	2,300건 ('16)	국회 국정감사 지식경제위원회 자료
지재권 소송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성과 평가	심결 취소율 제고	21.3% ('10)	20% 이하('16)	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특허청(심결취소율 현황-특허심판원 자료실, 심판통계)
산업재산 심판의 신속성 제고 및 품질 고도화	심판관 역량 강화 및 심판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심판관 내실화 추진 성과 평가	심판처리기간 단축	10.6개월 ('10)	6개월 ('16)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③ 지식재산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 질서 구현

KPI명	정의/의미	측정방법	성과지표		데이터 출처
			현재값	목표값	
연구성과 확산체계의 선진화	TLO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미활용 기술의 아웃소싱을 통한 이전 및 공동 기술 사업화 등 성과확산 평가	기업의 온라인 거래시스템 DB 활용률	21.3%('10)	35.0%('16)	특허청, 2010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공공·공유 지식재산의 상업적 이용 확대	국유특허 공공정보 활용 촉진, 공유저작물 수집 관리 체계 구축, 저작물 이용환경 개선 등 성과 평가	대학 공공연구기관 연구생산성	1.48%('10)	3.4%('16)	정보통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2011), 지식경제부(2012),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2)을 참고하여 재구성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강한 특허 풀 확보를 위한 창의자본 조성 운용 성과 평가	기술신탁 이전 건수	11건('10)	150건('16)	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	기술가치평가와 금융상품 간 연계 강화 및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투·융자 활성화 유도 성과 평가	창의자본 조성	300억 원('10)	6,000억 원('16)	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서비스산업 실태 조사 분석, 표준산업분류 내 독자적 분류체계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 성과 평가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시장 규모	3,400억 원('10)	5,000억 원('16)	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중소기업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유용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성과 평가	중소기업 기술임치 건수	453건('10)	10,000건('16)	중소기업청
불공정한 권리남용에 대한 대응 강화	지재권 남용 사전예방 기능 강화 및 국가간 부처간 공조 강화 성과 평가	동반성장협약 체결 기업 수(누계)	165개('10)	200개('16)	공정거래위원회

④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

KPI명	정의/의미	측정방법	성과지표		데이터 출처
			현재값	목표값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성과 평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기업 비율	46.4%('10)	65%('16)	특허청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지재 권 보유 활용의 균등 기회 제공 및 접근성 제고 성과 평가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창출 비율	18.7%('10)	21.8%('16)	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강화	인력 수급 현황, 미래예측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인력 육성 활용 및 처우개선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성과 평가	지식재산 연구인력 (누계)	29,000명 ('10)	100,000명 ('16)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지식재산 지원인력 양성	법조인력(변리사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성과 평가	지식 재산서비스 전문인력 (누계)	2,000명 ('10)	3,000명 ('16)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지식재산 정보·데이터 보급 및 확산	국가지식재산 표준분류체계 수립, 지식재산 통합 포털 구축 등을 통한 지식 확산 활용 기반 마련 성과 평가	산업재산권 정보 건수	192백만 건 ('10)	310백만 건 ('16)	특허청, 특허정보 DB 보유 건수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선도	국제규범 형성과정 적극적 참여, 국가간 법 제도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지식재산제도 선진화 효율화 성과 평가	지식재산을 활용한 ODA 사업 수	3건('10)	7건('16)	특허청, 지식재산백서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역실정에 적합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법체계 마련 등 지식재산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조성 성과 평가	지역 기업 대상 지식재산 컨설팅 회수	100건('10)	200건('16)	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⑤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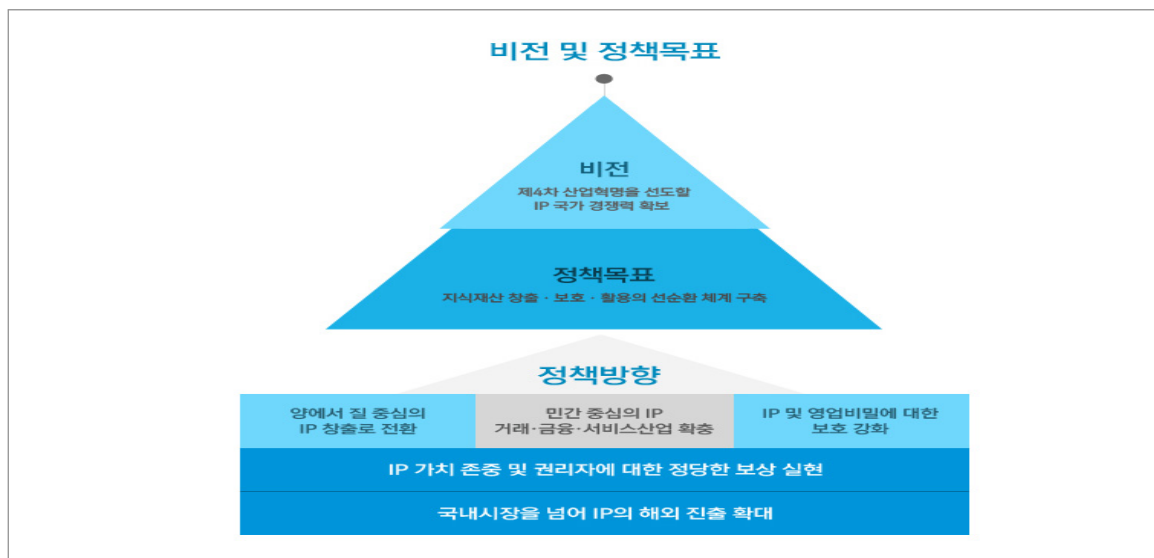
KPI명	정의/의미	측정방법	성과지표		데이터 출처
			현재값	목표값	
신제품 육종 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	연구단지 센터 조성, 인턴제를 활용한 육종 인력 양성, 전략품목R&D 투자 확대 등 품종개발 기반 구축 성과 평가	식물 품종보호 출원 건수	5,141건 ('10)	8,962건 ('16)	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국립종자원-보호 출원과 등록 현황(기관별)
품종보호 체계정비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	품종보호제도 실시기관 간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개도국 품종보호제도 정착 지원 등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 성과 평가	신제품 종자 수출액	2,500만 달러('10)	7,000만 달러('16)	농림수산식품부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 창출지원	정기적 생물자원 실태조사, 생물자원 발굴 확보,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 확보 기반 구축 성과 평가	고유 생물자원 확보 수	37,000종 ('10)	47,000종 ('16)	국립생물자원관
전통자원 기반 창작·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전통자원의 개발가치 평가 및 복원 재생 방안 연구, 전통자원 기반 창작 개발 활성화 지원 성과 평가	전통지식자원 활용 소득화사업 지원 수	376개소 ('10)	446개소 ('16)	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전통자원 관련 국제적 대응 및 제도개선 추진	민·관 합동으로 전통자원 보호 관련 국제적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성과 평가	무형문화유산 국가대표 목록 수	525개 ('10)	1,000개 ('16)	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식별표지의 창출·활용 강화 및 보호제도 개선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제도 보완, 등록품 품질관리 및 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 성과 평가	지리적 표시품 출하량	155천 톤 ('10)	536천 톤 ('16)	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지리적 표시 관련 신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퍼블리시티권, TV 포맷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 법적 보호 필요성 및 보호범위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모색 성과 평가	지리적 표시 관련 등록 건수	209건('10)	377건('16)	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2. 제2차 국가지식재산 전략 지표

(1) 주요 내용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은 5대 정책방향(①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②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③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④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⑤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하며, 20대 핵심과제, 82개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 그림 IV-2-2 | 2017~2021년 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비전 달성을 위한 20대 전략목표 및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지식재산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IP·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민간 중심의 IP 금융 고도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②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보호 강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③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해외 진출 기업의 IP 애로 해소 지원, IP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생물·유전자원 관련 新국제규범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④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지원, 신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창출 생태계 조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⑤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IP 보호 체계 정비, 특허권의 신뢰성·안전성 제고, IP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IP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IP 역량 제고, 식물 신품종의 개발 활성화 및 보호 강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다.

▼ 표 IV-2-2 |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주요 성과지표

정책방향	주요 성과 지표
양에서 질 중심의 IP 창출	① 정부R&D 우수 IP 비율: (16년) 10.8% ⇨ (21년) 20% ② 표준특허 점유율: (16년) 6.4%(5위) ⇨ (21년) 10%(4위) ③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 (16년) 32.9% ⇨ (21년) 40%
민간 중심의 IP 거래·금융 확충	④ IP 투·융자 규모: (16년) 2,000억 원 ⇨ (21년) 1조 원 ⑤ IP 서비스산업 규모: (16년) 6,400억 원 ⇨ (21년) 8,000억 원
IP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강화	⑥ 국제 IP 보호순위: (16년) 27위 ⇨ (21년) 20위 ⑦ 저작권 침해율: (16년) 13.5% ⇨ (21년) 10%
IP 가치 존중 및 관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⑧ 직무발명 도입기업 비율: (16년) 55.6% ⇨ (21년) 70% ⑨ SW 불법복제율: (16년) 35% ⇨ (21년) 20%대
국내 시장을 넘어 IP의 해외 진출 확대	⑩ 해외특허 출원: (16년) 14,626건 ⇨ (21년) 20,000건 ⑪ 콘텐츠 수출액: (16년) 58억 달러 ⇨ (21년) 97억 달러

(2) 주요 지표의 산식 및 방법

①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활성화

KPI명	정의/의미	측정방법	성과지표		데이터 출처
			현재값	목표값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R&D 전 과정에서 IP 전략 적용 및 확대, 특허전담관제도 도입, IP-R&D 지원 등으로 특허의 질적 수준 제고	정부R&D 우수 IP 비율	10.8% (16년)	20% (21년)	발명진흥회 (smart 3 활용)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국가R&D-특허-표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통한 표준화 성과 평가	정부R&D 과제 중 표준특허 출원 비중	6.4%(5위) (16년)	10% (4위) (21년)	특허청, 특허전략 개발원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관리 강화를 통해 IP의 활용가치 제고	보유특허 수 대비 자사 활용, 타기관 이전, 현물 출자 등의 활용 건수의 비율	32.9% (16년)	40% (21년)	특허청
IP·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공공연구기관의 IP를 이전받은 기업의 사업화 지원 펀드 마련	특허기술 사업화 펀드 확대 (특허기술 사업화 펀드 조성규모)	500억 원 (16년)	1000억 원 (21년)	특허청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마련(신규)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조성 규모)		1000억 원	미래창조과학부
민간중심의 IP 금융 고도화	은행이 조성한 NPE 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한 재원 확충	IP 투·융자 규모 (IP 금융: IP 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투·융자 규모)	3,000억 원 (16년)	1조 원 (21년)	특허청

②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KPI명	정의/의미	측정방법	성과지표		데이터 출처
			현재값	목표값	
중소기업 지식재산활동강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보호 강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통한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한 분쟁 축소와 핵심인재 및 기술 유출 예방	직무발명 도입기업 비율	55.6% (16년)	70% (21년)	발명진흥회

③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KPI명	정의/의미	측정방법	성과지표		데이터 출처
			현재값	목표값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글로벌 IP 출원 지원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내국인의 해외특허 출원 건수	14,626건 (16년)	20,000건 (21년)	특허청 (지식재산통계)
	우리 IP의 보호강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국제 IP 보호순위 (IMD/GIPC 보고서)	27위 (16년)	20위 (21년)	IMD 보고서 / GIPC 보고서
IP 국제공조강화 및 글로벌 위상제고					
생물·유전자원 관련 新국제규범 대응					

④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KPI명	정의/의미	측정방법	성과지표		데이터 출처
			현재값	목표값	
디지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선진화	24시간 온라인 침해 감시 시스템 및 긴급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여 불법복제물 등 저작물 침해율 저감	저작권 침해율	13.5% (16년)	10% (21년)	문체부, 한국저작권 보호원, 저작권 위원회(저작권 통계)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지원	한류 콘텐츠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콘텐츠 수출액 증대	콘텐츠 수출액	58억 달러 (16년)	97억 달러 (21년)	문체부(콘텐츠 산업통계조사보고서, 콘텐츠 진흥원)
양질의 차세대 콘텐츠 창출 지원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유망 문화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문화기술R&D에서 콘텐츠 스타트업비중	20% (16년)	30% (21년)	문체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치평가·금융지원 확대	문화기술R&D 투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확충	가치평가연계 펀드조성금액	200억 원 (16년)	600억 원 (21년)	문체부
		문화계정 투자재원 조성금액	1조 5천억 원 (16년)	2조 원 이상 (21년)	문체부
		신규 콘텐츠 기업 육성펀드금액	600억 원 (신규, 17년)	1800억 원 (21년)	콘텐츠진흥원
		완성보증제도 활성화/ 지원 금액	2800억 원 (16년)	5500억 원 (21년)	문체부

⑤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KPI명	정의/의미	측정방법	성과지표		데이터 출처
			현재값	목표값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IP 보호체계 정비	SW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단속 강화	SW 불법복제율	35% (16년)	20%대 (21년)	BSA 보고서
IP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IP 서비스업 관련 인프라 확대 및 전문인력 수급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 육성	IP 서비스산업 규모	6400억 원 (16년)	8000억 원 (21년)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 협회
IP 교육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지식재산 선도대학을 설치하고 IP 커리큘럼을 내실화하여 IP 교육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 선도대학 수	15개 (16년)	30개 (21년)	특허청

3. 소결

세계 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기존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식과 아이디어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경되므로 지식재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지식재산집약 산업에서 창출되고 새로운 기술 획득을 위한 주요국 및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은 혁신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유연한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도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에서 비전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로 설정하였고,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전략과 20개 핵심과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분야 원천특허-표준화 연계 추진을 통한 IP 창출 및 보호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준비중인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는 포스트-코로나,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의 새로운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국가지식재산 전략은 지식재산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분석 및 예측하고, 국내·외 주요국의 범국가적 정책(비전과 전략, 중장기계획 등) 조사·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지식재산 정책을 발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진행되며 성과 지표 설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단계로 지식재산 비전 및 핵심 목표를 수립하는 단계이다. 비전과 목표가 수립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목표별 핵심과제 및 성과 지표를 도출하게 된다.

▼ 표 IV-2-3 , 지식재산 지표 도출 단계

단계	준비 단계(60%)		수립 단계(40%)			심의·의결 단계
주요 업무	기초자료조사	이전 기본계획 성과분석	기본계획 수립 지침	실행과제 도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확정
	국가별 동향분석 전문가 포럼 분석 IMD, WIPO 자료분석	과제별 추진 성과분석	비전 및 목표 제시	부처별 5개년 실행과제 도출	성과지표 설정	과제별 추진 예산 확정
미래 지식재산 이슈 발굴			지식재산 이슈를 정책화			실행과제 확정

제3절

●●
중국

1.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2008년 제정된 전략강요는 크게 서론, 지도사상과 전략목표, 중점전략, 특별임무, 전략조치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을 실시함에 있어 등소평 이론과 세계 대표 중요사상⁷⁶⁾을 지도사상으로 견지하면서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⁷⁷⁾을 성실히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2020년까지 중국이 세계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 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5년 내에는 자주(自主) 지식재산권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을 그 전략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식물신품종, 특정영역의 지식재산권, 국방지식재산권 등을 특별임무로 명시하고, 각 영역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⁷⁸⁾

전략강요는 ①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② 지식재산 창조와 이용 촉진, ③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④ 지식재산권 남용 방지, ⑤ 지식재산권 문화·인식 배양을 5대 중점전략으로 하고, ① 지식재산권 창출 능력 제고, ② 지식재산권 활용 독려, ③ 법제 정비, ④ 집행력 강화, ⑤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강화, ⑥ 지식재산권 중개 서비스 발전, ⑦ 지식재산권 인력풀 구축 강화, ⑧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추진, ⑨ 지식재산권 대외 교류 및 협력 확대라는 9대 전략적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1) 5대 중점 전략

1)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 관련 법령을 즉시 개정한다.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예술과 지리적 표시 등에 관한 입법 작업은 적절한 시기에 시작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 법령들이 서로 조화와 체계를 이루도록 입법하며, 그 법령들의 실제 시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76)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의 사상을 의미한다.

77) 과학발전관이란, 중공중앙(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후진타오가 2003년 7월 28일 제출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방면에 서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관을 수립하여, 사회경제와 사람의 각 방면에서의 발전'을 의미한다. 도시와 농촌의 발전, 지역발전, 사회경제발전,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국내발전과 대외개방의 요구에 따라 개혁하고 발전하는 일종의 방법론이자 중국 공산당의 중대한 전략 사상이다(유예리, 앞의 문헌).

78) 위의 문헌.

불공정경쟁, 대외 무역, 과학 기술, 국방 등에 관한 법 규정 중 지식재산권과 관련 있는 규정들을 보완한다.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된 법령과 관리 체계를 완비한다. 사법(司法)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집행법 체계를 구축하여 사법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주도적 작용을 하도록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경제, 문화와 사회정책에서의 지도를 강화하여, 산업정책, 지역정책, 과학기술정책, 무역정책과 지식재산권 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2)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

재정, 금융, 투자, 정부조달 정책과 산업, 에너지, 환경보호 정책을 활용해 시장 주체의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을 유도하고 지지한다. 또한 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의 주체가 되게 한다. 주체적으로 창출한 성과의 지식재산권화, 상품화, 산업화를 촉진하여, 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양도, 허가, 저당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의 시장가치를 실현하도록 인도한다. 대학교, 과학 연구소가 지식재산권 창출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점기술영역을 선택하여 핵심적인 지식재산권과 기술표준을 형성하도록 한다.

3)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처벌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을 낮추며 권리 침해의 대가를 높여 지식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4) 지식재산권 남용 방지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5) 지식재산권 문화·인식 배양

지식재산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식을 제고한다. 지식과 창조를 존중하고 신용을 지키며 법을 준수하는 지식재산권 문화를 형성한다.

(2) 9대 전략적 조치

1) 지식재산권 창출 능력 제고

기업을 주체로 하고 시장이 주도하며 산·학·연(産學研)이 서로 결합하는 주체적인 지식재산권

창출 체계를 구축한다. 주도 기업이 연구과제 항목을 정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기 전 지식재산권 정보 검색을 하도록 한다. 기업이 창조와 재창조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도록 지지한다. 기업 등 시장주체가 해외에서도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도록 장려한다.

2) 지식재산권 활용 독려

대학교, 과학 연구소의 지식재산 관련 성과나 결과가 기업에 집중적으로 이전되도록 하여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적극 활용하고 단기간에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시장 주체가 기술 자료와 영업비밀 관리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통계 및 재무 회계 제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정보 검색과 중대 사항 예비경보제도를 제정한다. 또한 대외합작 지식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시장 주체가 법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 행위와 법률 소송에 대응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3) 법제 정비

지식재산권 특징을 반영한 입법체제를 구축하고, 입법의 질을 제고한다.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 전후 평가 작업을 강화한다. 입법의 투명도를 높이고, 기업, 협회 및 일반 대중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지식재산권법 개정과 입법 해석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에 즉시 대응하도록 한다. 지식재산권 법령 제정의 필요성과 그 실행성에 관하여 연구한다.

4) 집행력 강화

지식재산권 재판 체제를 개선하여 구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 행정 사건을 모두 수리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법정을 설치한다. 특히 등 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관할권 문제를 연구하고, 지식재산권 상소법원 설립을 고려한다. 지식재산권 재판 기구를 좀 더 보완하고, 지식재산권 사법의 인원을 보강하여 재판과 집행 능력을 제고한다.

지식재산권 사법해석(司法解釋)⁷⁹⁾ 업무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은 전문성이 강한 특징이 있으므로 사법감정(司法鑒定)⁸⁰⁾, 전문가증인, 기술조사 등 소송 제도를 구축 보완하고 지식재산권 소송 전에 임시 조치 제도를 개선한다. 특허권 및 상표권 확정 및 부여 절차를 개혁하고 특허 무효 심리와 상표 심사 평가 기구를 준(準)사법기관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연구한다.

79) 중국의 사법해석은 영미법계의 판례와는 다르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존재한다. 대표적 형식으로 어떤 사항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의 지침을 주거나, 최고인민법원이 법률해석을 사전에 하여 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하급심 법원에 통보한다.

80) 사건을 분명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 기능과 과학 지식을 운용하여 감별과 판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DNA 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식재산권법 집행의 질을 제고하고 법집행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법집행의 효율을 제고한다. 반복적·집단적 침해와 대규모 불법 복제, 위조 행위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지식재산권을 증점적으로 보호한다. 법집행 기관은 형사사법기관으로 지식재산권 형사안건을 이송하고 형사사법기관은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의 수리 강도를 높인다.

세관의 법 집행 강도를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국경지대를 보호하고 수출입 질서를 유지 보호하여 중국 수출 상품의 명성을 제고한다. 국제적 협력 체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 지식재산권 위법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세관이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5)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강화

지역과 업종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중대한 경제 활동의 지식재산권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부합된 주체적인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산업화를 지지한다. 지식재산권 관리 직원을 확충하고 관련 업무 교육을 철저히 하여 그 수준을 높인다.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따라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지식재산권 관리 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지식재산권 심사와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와 효율을 제고하며 행정적 소비 비용을 낮추고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국가기초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높은 수준의 특허, 상표, 저작권, 집성회로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지리적 표지 등 지식재산권 기초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하고, 중국에 적합한 검색방식과 체계를 신속히 개발한다. 식물신품종 보호 및 보존 기관을 설치한다. 국방 지식재산권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각 지방, 관련 업종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장려한다. 지식재산권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을 정리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권 예비경보체제(預警柄急机制)를 구축한다. 중점 영역의 지식재산권 발생 추세를 보고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지식재산권 분쟁과 갑자기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며 적절히 대응하여 손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한다.

6) 지식재산권 중개서비스 발전

지식재산권 중개서비스 관리를 개선하고 업종의 자율을 강화한다. 신용을 바탕으로 정보관리, 정보평가 및 신용을 저버릴 경우 처벌하는 등 신용관리 제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권 평가 체계를 세우고, 평가 신뢰도를 제고한다.

지식재산권 중개서비스 업무수행 훈련 제도를 구축하고 중개서비스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업무 수행 자질을 관리한다. 지식재산권 대리인 등 중개서비스인의 처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변호사 대리 제도를 연구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국방 지식재산권 중개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며, 중개 조직의 분쟁처리능력, 국제지식재산권 사무참여 능력을 대폭 끌어올린다.

협회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협회가 지식재산권 업무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 교류를 촉진하며, 조직이 공동으로 권리를 유지하도록 장려한다. 정부가 협회의 지식재산권 업무의 감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기술 시장을 활성화하여, 충분한 정보, 활발한 교역, 양호한 질서가 어우러지는 지식재산권 교역 체계를 구축한다.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비용을 줄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를 육성하고 시장화로 발전시켜 각 계층의 지식재산권 정보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사회 자금이 지식재산권 정보화 건설에 투자되도록 장려하고, 기업이 가치가 증가하는 지식재산권 개발 및 활용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7) 지식재산권 인력풀 구축 강화

부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인재그룹 형성을 전면적으로 계획한다. 국가와 성(省)급 지식재산권 인재 데이터베이스와 전공 인재 정보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한다. 국가지식재산권 인재 배양 기지를 건설한다.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교사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신속히 양성한다. 지식재산권 2급 학과를 설립하고 조건을 갖춘 대학교에 지식재산권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를 대규모로 육성하고, 기업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 관리 및 증개서비스 인재를 중점 육성한다.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당정부의 지도 간부, 공무원, 기업과 사업기관의 관리자, 전문기술인, 문학예술 창작인,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연수를 광범위하게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인재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인재 간 교류를 촉진한다. 공무원법의 실시와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관리부서 공무원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국가 제도 개혁의 총체적 요구에 따라 지식재산권 인재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8)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추진

정부가 주도하고, 언론매체가 지지하며, 사회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홍보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각 주체 간 협조체제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 및 업무 계획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을 홍보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대학교에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지식재산권 교육을 대학생 교양 과목으로 포함시킨다. 지식재산권 교육을 전국 초·중·고등학교 체계에 포함시킨다.

9) 지식재산권 대외 교류 및 협력 확대

지식재산권 관련 대외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대외정보소통 교류 체계를 구축하

고, 국제 지식재산권 기반 시설 건설 및 이용의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인재 배양을 위한 대외 협력을 장려한다.

국비유학생과 자비유학생이 지식재산권을 전공하도록 독려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고위층 인재를 채용하도록 장려하며 국제지식재산권 질서 수립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조직의 관련 회의 일정에 참여한다.

2.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⁸¹⁾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법치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 능력 강화, 지식재산권 의식 제고, 경제발전, 문화번영, 사회건설에서 지식재산권제도의 촉진기능 강화 등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에서 제시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2013년, 2015년, 2020년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지표별 목표치를 명시하였다.

▼ 표 IV-3-1 |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 주요 지표

구분	지표	2013년	2015년	2020년
창출	인구 1만 명 당 특허 보유 건수(건)	4	6	14
	특허협력조약(PCT) 출원(만 건)	2.2	3.0	7.5
	국내 특허 평균 존속 기간(년)	5.8	6.4	9.0
	저작권 등록 건수(만 건)	84.5	90	100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만 건)	16.4	17.2	80
활용	전국 기술시장의 기술계약 거래액(만 억 위안)	0.8	1.0	2.0
	지식재산권 담보용자 연간 금액(억 위안)	687.5	750	1800
	사용료 및 로열티 수출입액(억 달러)	13.6	20	80
기반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18	20	20
보호	지식재산 보호 사회만족도(점)	65	70	80
관리	특허 출원 평균 심사기간(월)	22.3	21.7	20.2
	상표 출원 평균 심사기간(월)	10	9	9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1) 이하는 김송이, 앞의 문헌 참조.

(1)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을 통한 산업 구조 전환 지원

1)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발전 추진

고품질 특허 창출을 통해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GDP 비중을 증대시킨다. 핵심 기술에 관해 특허풀을 형성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허를 축적한다. 또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고유한 지식재산권 집약산업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특허 거래시장을 조성하여 특허 활용을 위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지식재산 집약산업 단지를 건설하여, 단지 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문화 브랜드 개발을 강화하여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2) 현대 농업 발전 지원

식물신품종, 농업 관련 특허기술, 지리적 표시, 농산물 상표 등 농업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선진적이고 고효율의 농업 기술 장비를 갖추고, 식물신품종 개발하고 육종 성과를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자기업,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식물신품종권 양도를 위한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3) 현대서비스업 발전 촉진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을 고급화한다.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 규범을 수립하여, 서비스 종사자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격려하고, 지식재산권 담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지역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대출 위험 보상 기금을 조성하도록 독려하고, 지식재산권 보험 종류를 확대하여 지식재산 보험 시장을 육성한다.

(2)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1) 지식재산권 행정집행 정보 공개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정보를 공개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제조·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그에 대해 행정처벌이 내려졌던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위법행위자에 대한 사전 경고 및 행정집행자의 공정한 집행을 촉진한다. 행정정보 통계의 범위에 위조품 단속업무 현황을 포함하여, 연간 평가지표에 산정한다. 악의적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평가 체계에 포함하여, 중국의 신용 수준을 향상시킨다.

2) 중점 분야의 지식재산권 행정 집행 강화

민생 안정 및 국가 중대 사업에 관한 지식재산권 행정·법집행을 강화한다. 민생 안정, 국가 중대 프로젝트 및 지식재산 우세 산업과 같이 중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침해 사건에 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해외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리감독 방안을 연구한다. 중국 자유무역지구의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모델을 구축한다.

3)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 추진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화 사용 추진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통한 규범화를 촉진한다.

4) 지식재산권 형사집행 및 사법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에 대한 심판을 강화하고, 벌금을 상향하여 권리 침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박탈한다.

5)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조정 업무 추진

예방적 측면에서 공증을 통한 증거 보전업무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업무를 규범화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3) 지식재산권 관리 효율 향상

1) 혁신 과학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등 ‘국가과학기술계획’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목표 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의 완료 후의 성과를 평가한다.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담당기관 및 각 참여기관의 지식재산권 이익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원의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 지식재산권 사업화 기관을 설립한다.

2) 지식재산권 심사 강화

지식재산권 심사 방식을 최적화하고자, 특히 출원에 관한 빠른 심사처리 제도를 보완하고 상표 출원에 대해 녹색통로, 소프트웨어 신속 등록 통로를 구축한다. 특히 심사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저품질 특허에 대한 검사 역량을 향상시킨다.

3) 중대 경제활동 관련 지식재산권 평가 실시

중국 정부가 추진한 투자 활동, 산업 기획 등 중대 경제활동에 관한 지식재산권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규범화한다. 기업은 자발적으로 지식재산권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한다.

4)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기업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 가치 분석 기준 및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기업 경영활동에서의 지식재산권 자산 관리를 강화한다.

5)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국방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익분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국방 지식재산권 비밀해제 제도를 보완하여 민간 지식재산권이 군용 과학기술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

1)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 강화

국내외 출원인을 동등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국제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국가들 간 지식재산권 교류 증대를 통해 자국의 지식재산권 발전을 도모한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통해 중국 심사 능력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주중 외국 대사관의 지식재산권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대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규칙 완비

무역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무역협정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에서 보다 유리한 지식재산권 규정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및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한다.

3)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요 무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즉시 수집하여 발표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제를 수립한다. 기업이 해외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합을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여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중국 정부는 주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통계제도 보완 및 인력 육성을 기초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조직적 업무 수행, 관리 감독의 강화, 재정지원, 법제도 보완을 기초로, 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3. 최근 3년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

(1)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

중국 국무원은 2018년 11월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추진계획은 6대 중점 임무와 109개의 세부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⁸²⁾

▼ 표 IV-3-2 |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개혁 추진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 개혁 지식재산권 방관복(放管服)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창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가치 지식재산권 양성 강화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효율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법규·규정 완비 보호의 장기적 효과 체제 수립 중점 분야의 특별관리 실시 상시 관리감독 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이전 강화 지식재산권 정보 이용 강화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대외협력수준 향상 중점산업의 해외배치 및 위험예방 강화
조직 실시 및 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제정 및 실행 강화 인재 양성 및 홍보지도 강화

82) 国务院, 『2018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2018.11).

(2) 2019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 계획⁸³⁾

2019년 6월 17일 중국 국무원은 2019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2018년 추진 계획의 내용을 심화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5대 중점 임무와 106개의 세부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 표 IV-3-3 | 2019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의 개선, IP 중점정책의 개선, 방관복(放管服)⁸⁴⁾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창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 및 심사효율 향상, 성과전환 및 기술이전 촉진, 정보 서비스 개선 등 추진 특허 심사 품질보장체계와 업무지도체계의 건전화, 상표등록 편리성 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심화 개혁,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과 악의적 등록행위의 엄격한 단속,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사업 추진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법제도 완성,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추진, 지식재산권 행정·사법 보호 강화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조 상품 침해행위에 대한 집행 등
교육 및 국제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적 위상 강화, 해외진출 리스크 방지 일대일로 국가와 중국의 특허심사결과 상호 인정·등록 제도 발효 추진, 국가 차원의 해외 IP 분쟁대응 지도센터 건설 등
정책적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 전략 계획 수립 및 실천,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문화 창달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 수립, 14차 5개년 지식재산권 계획(十四五知识产权规划) 제정을 위한 연구 실시, 지식재산권 대외홍보 강화 등

출처: 国务院, 2019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2019.6).

(3) 2020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 계획

중국 국무원은 2020년 5월 13일 ‘2020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5개의 중점 임무와 100개의 세부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 표 IV-3-4 | 2020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개 개혁시험구에서 초지역 지식재산권 원격소송 플랫폼 구축, 전방위 증거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공증서비스 플랫폼 구축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대학 구축사업 전개 관련 통지 발표(2020년 3월)

8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9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2020. 12.

84) 정부와 기업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야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관리 조율 메커니즘 정비, 지식재산권 고품질 창조능력 제고, 지식재산권 고수익 운용능력 제고, 높은 표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능력 제고 등 4가지 중점 임무 제시 • 대학 특허 품질 향상 및 이전 운용 촉진 방안 발표 • 지식재산권 분야 권리 하부 이양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및 특허심사지침 개정으로 심사표준 개선 • 2020년~2021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 이행 추진계획 제정 • 상표 권리 침해 판단표준 출범 및 지식재산권 행정 법집행 보호업무 지도체계 정비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심사 품질 평가 구조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특허 심사주기를 16개월 이내로 단축 • 비정상적 특허 출원과 악의적 상표 등록, 사재기 행위에 대한 제재 구조 구축 • 특허유도 실시 지침을 마련하고 중점산업클러스터의 특허 유도 사업 추진 • 혁신과정 지식재산권 관리규범의 국가표준 초안을 작성하고, 기업지식재산권 관리규범 국가표준을 개정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미 1단계 경제무역협정 지식재산권 사업을 추진하고 중국-유럽 간 지리적 표시(GI) 협정 효력 발생 관련 기술 준비 활성화 • 2020년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 개최, 한국·미국·EU·러시아·일본 등 국가와 세관 법집행 협력 메커니즘 구축 강화
최상위 전략 조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전략 기획과 실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차 5개년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계획 평가를 추진 - 제조업 지식재산권 액션플랜(2018년-2020년)을 구체화 - 중국과학원 14차 5개년 지식재산권 발전 계획 요강 작성 • 지식재산권 학부 전공을 개설하여 일류 전공 거점 출발

출처: 国务院, 2020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2020.5).

4. 소결

중국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국가 전략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2000년 이후 국무원과 총리, 부총리, 국가발전위원회 등 국가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의 숙고에 기초한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을 통해, 그러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자본주의 도입 역사가 짧아 사유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미비하고, 지식기반경제 수준도 미국은 물론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⁸⁵⁾

특히, 2005년 1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 및 그 실행전략을 범국가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였고, 3년여의 활발한 회의 끝에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수립하였다. 2008년 원자바오 총리가 전국인민대회에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핵심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한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합한 행정체계 개편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85)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앞의 문헌.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채택한 이후에는, 이러한 전략의 효과적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 위원회를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 부처간연석회의’로 개편하였다. 그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사무국을 지식산업국에 설치하였다.⁸⁶⁾

2018년에는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주무부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SAIC)이 폐지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신설되었다. 기존 SAIC에서 담당하던 상표 관리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지리적 표시 관리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총괄하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 집행업무 등 산업 시장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지식재산 관련 행정체계 구축에 있어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전략을 취했다. 지식재산 전략 및 집행 업무가 국가 전략 수준이 되기 전이라, 아직 중국 지도부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지식재산권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지 못했을 때에는 사무국을 우선 상무부에 설치하였었다. 지식산업국의 위상이 아직 여러 기관들을 이끌어 나가고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임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지식재산 전략이 국가의 핵심 전략이 되자 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 업무를 지식산업국으로 이관하고 사무국을 지식산업국으로 옮기는 등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지식산업국 중심으로 신속하게 재편하였다.⁸⁷⁾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강요 이후 중국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자주 지식재산권 실현’이라는 1단계 5개년 목표를 실현하였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활용이 확대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으로써 지식재산대국의 입지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강한 특허가 부족하고 낮은 품질의 지식재산권이 속출하였으며 권리침해가 증가하는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이에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 정책에 있어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전략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⁸⁸⁾

2014년 국무원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중국 지식재산권의 종합 실력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통한 발전과 중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년-2020년)’을 수립하였다. 중국 정부는 동 계획을 통해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강국’이라는 목표를 천명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야 세계 1위 도약 의지를 밝혔다.

이후로도 상기 행동계획과 ‘새로운 환경하에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을 실천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매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

86) 위의 문헌.

87) 위의 문헌.

88)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앞의 문헌.

설 가속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⁸⁹⁾ 2019년 5월에는 2035년 중국을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식재산권강국전략강요(知识产权强国战略纲要) 제정에 착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중국은 지식재산 ‘대국’을 넘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그 실천을 위한 과제를 국가 지식재산 전략에 반영하는 등 그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실제 2017년 중국은 7년 연속 특허 출원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특허나 상표 출원의 양적 규모를 넘어 질적 향상을 통해 진정한 지식재산권 분야 1위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⁹⁰⁾

89)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앞의 문헌.

90) 이종기, “‘짜퉁 대국’ 오명 씻기 나선 中… ‘지식 강국’ 도약 부문 꿈”, 세계일보, 2019. 7. 14.

제4절

●●
일본1. 2013년 지식재산정책비전⁹¹⁾

일본의 2013년 ‘지식재산정책비전’은 산업 및 지식재산정책의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②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경영지원 강화, ③ 디지털·네트워크사회에 대응한 환경정비, ④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라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콘텐츠 관련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가 의식을 공유하여 실효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콘텐츠창조입국」을 선언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향한다.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변화에 의한 새로운 정책요구에 대해서는 본 비전을 기초로 하여 매년 수립되는 지식재산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비전 자체를 재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1)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의 구축

①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일본은 아시아신흥국시장을 중요한 시장으로 전망하여 지식재산전문가 파견이나 지식재산 관련 각종 연수를 제공 등 다양한 지원·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신흥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신흥국 지식재산청의 심사체제를 정비하고, 특히 3국 체제(일본, 미국, 유럽)이나 특히 5국 체제(3국+중국, 한국)를 활용한다.

【추진시책】

- 아시아신흥국 공통의 지식재산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본 심사관을 아시아신흥국 지식재산청에 파견하여 일본 및 아시아신흥국 심사사례의 조화를 촉진한다. (경제산업성)
- PCT 관할 확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확대, 심사의 신속화·질 향상, 심사기준 포인트

91) 이에 대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비전”, 「National IP Policy」 제2013-10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6., 9쪽 이하 참조.

명확화, 심사결과 기재양식 통일, 글로벌 대응의 심사용 정보시스템 정비, 심사체제 정비 등을 통해 일본특허청의 기반을 강화한다. (경제산업성)

- WIPO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아시아신흥국 지식재산시스템 정비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파견, 인재육성 지원, 정보화 지원 등을 통해 아시아신흥국의 지식재산시스템 향상을 지원한다.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② 해외에서의 지식재산활동지원

일본은 일본기업의 현지 지식재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재외공관에 지식재산담당관을 임명(2005년 3월)하여 모방품·해적판 피해상담, 관민연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도 베이징, 서울, 방콕, 뉴델리 4곳에 지식재산 전임담당자를 배치하였다. 향후 아시아신흥국에서의 모방품피해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일본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이용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추진시책】

- 특허청,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JETRO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글로벌전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경제산업성)
- 기업 OB나 변리사를 포함한 지식재산인재를 활용해 현지 지원체제나 조직적인 활동을 강화하여 각국의 지식재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설득, 모방품 피해 실태파악에 노력하는 한편, 현지에서의 일본기업의 권리행사나 일본브랜드 추진을 포함한 지식재산활동 지원에 내실을 기한다. (경제산업성, 외무성)
- 저작권제도의 환경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아시아신흥국의 요구나 제도정비 상황을 토대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정비, 인재육성, 보급계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신흥국에서의 저작권 권리행사를 촉진한다. (문부과학성)

③ 원활한 지식재산활동을 위한 통상 관련 협정의 활용

산업계 정부 간 협상에서 지식재산제도 정비나 실효적인 법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TRIPS협정 등의 규정이상으로 지식재산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더불어 일본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업 환경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ACTA(위조품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의 조기 발효나 참가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에 대해 검토한다.

【추진시책】

- 자유무역협정(FTA)/경제연대협정(EPA) 및 투자협정 등의 양자간·다자간 협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문제해결 및 개선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협상상대국에 지식재산제도 정비나 실효적인 법집행 확보 등을 촉구하고, TRIPS협정 등의 규정을 상회하는 수준의 지식재산보호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설득한다.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업성, 문부과학성, 재무성)
- 기술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로열티 요율, 로열티 송금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 향후 통상협상, 정부 간 협의의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한다. (외무성, 경제산업성)

2) 지식재산제도 기반 정비

① 직무발명제도 개선

현행 일본의 직무발명제도는 그 예측가능성이 낮으므로, 직무발명을 원시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또는 직무발명의 취급을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계약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동법과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에 대한 내용개선을 검토한다. 또한 직무발명 외 자유발명에 대한 개선도 검토한다.

【추진시책】

- 일본의 직무발명제도에 국·내외의 운용상황에 관한 분석결과나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경제산업성)
- 직무발명 외의 자유발명(고용관계에 놓여 있지 않는 학생의 발명 등)에 관한 대응실태를 조사하여 대학 등에 그 정보를 주지시켜 적절한 대우를 촉진시킨다. (경제산업성)

② 심사기반 정비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원활하게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일본 국내 심사의 최초심사결과 및 최종심사결과의 대기기간을 단축하여 그 심사결과를 해외에 조기 발신함으로써 타국 지식재산청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심사관 장기파견을 통해 타국과의 심사사례의 조화를 촉진한다. 또한, 세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높은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국제적인 상황변화를 토대로 하고, 특히 중국문헌 조사를 위한 인프라정비나 인적자원을 투입하여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한다.

【추진시책】

- 최종적인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심사의 신속화, 외국문헌조사 확충 등을 통한 심사의 질 유지·향상, 심사관의 장기파견을 고려한 기간제심사관의 유지·확보 및 정보인프라를 포함한 심사체제의 정비·강화를 추진한다. (경제산업성)

③ 영업비밀보호 강화

일본의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형사처벌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2004년-2011년)을 통해 국제 수준과 비슷해졌으나, 영업비밀침해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의 경감 등 해결요소가 남아 있다. 이에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해외제도, 동향, 조직적 활동을 조사·연구하여, 영업비밀의 실효적인 관리 실현, 필요한 제도 등의 정비를 위한 검토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관민 포럼을 창설하여 영업비밀·기술정보 누출에 관한 정보교환이나 의식공유를 도모하는 동시에 사회 계발 활동을 이행한다. 그리고 영업비밀에 대한 기본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추진시책】

- 영업비밀침해의 입증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 해외제도나 동향을 조사·연구하고, 필요 시 부정경쟁방지법과 민·형사절차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경제산업성)
- 불법 제조된 상품의 글로벌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제도나 동향을 조사·연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경제산업성)
- 일본의 기술·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OSAC」, 「ONCIX」 등의 외국 대응을 참고하여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유·검토하는 체제 구축을 검토한다.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 인재를 통한 기술유출에 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영업비밀관리에 대해 기본적 대책이 없는 중소기업·대학 등에 기존의 지침·가이드라인 내용을 주지시키고, 안내책자를 작성·제작하여 주지시키는 등의 조속한 지원을 실시한다. (경제산업성)

④ 적절한 권리행사 방법의 검토

금지청구권은 권리침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대항수단에 해당하는데, 현행 일본 제도에서는 권리의 성질이나 권리행사의 목적·상태, 권리주체의 사업형태 등의 개별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금지청구권의 행사가 인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노베이션 촉진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독점 배타권과 같은 특허권의 성질을 바탕으로 하여 금지청구권의 적절한 행사방법에 대해 다면적으로 검토한다.

【추진시책】

- 권리행사의 실태조사, 국내·외의 판례나 논의 등을 토대로 적절한 권리행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경제산업성)
-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금지청구권 제한이나 RAND조건 취급에 관한 적절한 국제규칙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총무성, 경제산업성)

⑤ 분쟁처리기능 강화

일본의 경우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여 지식재산 소송 건수가 적다. 또한 일본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승소율 또한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낮다. 이에 일본의 지식재산 분쟁해결 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한다. 그리고 일본의 지식재산고등재판소의 국제적 존재감 향상을 도모하여 글로벌 발신력의 향상을 추진한다.

【추진시책】

- 지식재산분쟁이 글로벌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원·특허청에 의한 해결, 재판 외 분쟁해결,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지식재산 분쟁처리시스템에 관한 외국의 제도 등을 조사·분석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경제산업성, 법무성)

⑥ 국제표준화·인증 대처 강화

일본의 기술력을 사업성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공개·비공개를 전략적으로 판단한 후에 관민협력을 통해 신속·정확한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인증체제는 강제법규의 인증업무에 기초한 경직적인 체제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유연한 인증을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 인증체제 강화 및 재검토를 하여 체제정비를 도모한다.

【추진시책】

-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처를 강화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강화·육성, 해외인증기관과의 연대·제휴나 일본 인증기관의 해외전개 촉진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인증체제의 정비를 도모한다. (경제산업성)
- 기존 산업 분야에서도 인증절차 합리화를 통해 해외시장의 요구사항과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증체제의 재검토 및 바람직한 모습을 강구한다. (경제산업성)

⑦ 산학관 연대기능 강화

대학 및 TLO에 대한 지원에 의해 각 기관에서 산학관 연대체제정비가 이루어진 결과 대학 등의 특허권 실시 건수나 수입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일본 산업경쟁력의 원천이자 국제화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설비·인재 등이 부족하여 그 증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대학의 지식을 이노베이션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대학과 연계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조직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세계를 선도하는 해외 첨단기업이나 인재 등 다양한 연구개발주체의 지식을 활용한다. 또한 국내 기업 및 대학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유통촉진을 지원하는 인재를 확보한다.

【추진시책】

- 대학과 중소·벤처기업과의 공동연구나 대학 지식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전 등 대학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연대를 촉진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기업 등과 연대, 기술이전, 국외의 우수한 인재 모집 등, 국제적인 산학관 연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국내 기업이나 대학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감정이나 지식재산의 가치판단, 글로벌전개도를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재를 확보한다. (경제산업성)
- 산학관 연대 활동의 평가지표에 기초한 대학·TLO 등의 평가결과 공표를 촉진하고, 이에 관한 모델거점을 창출하여 평가지표 활용촉진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실시한다. 그리고 대학·TLO 등의 각 기관이 평가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PDCA를 가동함으로써 지식발굴이나 실용화의 조직적인 활동을 더욱 높인다.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정책을 주시하면서 내각관방 및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산학관 연대 추진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을 가속화한다. (내각관방, 내각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외)

⑧ 지식재산활용 등의 촉진을 위한 지원책

이노베이션의 가속을 통해 일본의 성장력·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외제도를 참고하여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인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추진시책】

- 산업계의 협력을 구하면서 Patent Box 제도의 실시사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도입효

과, 도입 시의 기업의 부담 등 다양한 요소에서 일본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경제산업성)

3) 글로벌 지식재산인재의 육성·확보

① 글로벌 인재의 육성

2012년 1월, ① 지식재산관리 인재 육성, ② 글로벌 지식재산인재 육성, ③ 지식재산인재의 저변확충, ④ 지식재산인재 육성계획 추진체제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향후 10년 간의 「지식재산인재육성 계획」을 정리·취합하여 중장기적으로 일본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환경정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지식재산관리 전략거점의 정비에 관한 연구주제는 질적·양적으로 불충분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비롯하여 외국 특허청의 조직적인 활동을 참고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유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인재 육성계획을 착실·견고하게 실행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지식재산인재를 육성한다.

【추진시책】

- 글로벌 지식재산인재나 경영층도 포함한 지식재산 관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다양한 지식재산정보,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적 지식, 사업전략과 연대한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지견이나 노하우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민간섹터와 연대하면서 정부기관이 중심이 되어 세계를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지식재산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한다. (경제산업성)
- 아시아신흥국에 일본의 지식재산시스템을 전개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인재육성을 실시해 나가면서 지식재산인재의 저변확충 등도 도모해 나간다.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② 지식재산인재 모집 프로세스 구축

외국에는 우수한 지식재산인재가 모이는 막스플랑크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존재한다. 이에 일본도 세계로부터 우수한 지식재산인재를 모집하여 활용한다.

【추진시책】

-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기관은 우수한 지식재산 연구자를 모으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기관은 일본의 지식재산시스템을 글로벌적으로 전개하고,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영어강의)을 개설하여 꾸준히 실행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경제산업성)

(2)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경영지원 강화

1)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체제 정비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출원비용의 조성, 지식재산 프로듀서 및 해외지식재산 프로듀서에 의한 지원, JETRO에 의한 모방품 대책을 비롯한 지식재산활동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전개를 주시한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여 글로벌적으로 전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활동을 강화한다.

【추진시책】

- 중소·벤처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해외사업전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강화의 일환으로써 특허청,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JETRO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연대에 의해 해외에서의 지식재산의 권리화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전개지원체제를 보다 강화한다. (경제산업성)
- 아시아신흥국에 대해 기업OB와 변리사를 포함한 지식재산인재를 활용하여 현지 대사관이나 JETRO 등 해외에서의 지원체제나 조직적인 활동을 강화해 각국 지식재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움직임, 모방품 피해의 실태파악에 힘쓰면서 현지에서의 일본 기업의 권리 행사나 일본브랜드 추진을 포함한 지식재산활동을 지원한다. (경제산업성, 외무성)

2) 중소·벤처기업 감면제도 확충

일본의 현행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요금감면제도는 감면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출원경험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등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이 잠식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권리취득 비용을 낮추는 것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에 출원을 촉구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면제도의 재검토를 도모한다.

【추진시책】

- 중소·벤처기업, 소규모 기업 및 대학 등이 이용하기 쉽고, 이노베이션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면제도를 재검토한다. (경제산업성)

3) 지식재산시장의 활성화

오픈이노베이션의 가속화에 따라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허유통의 촉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일본에서는 개방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따른 정보의 제공이나 지식재산 비즈니스 매칭마트 개최사업 등과 같은 시책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신규 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펀드도 설립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라이선스나 매매 등을 통한 지식재산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미이용 특허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글로벌하면서 폭넓은 업종 중에서 수요를 연결하기 위한 매칭인재 등을 활용하여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유통을 촉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추진시책】

- 국내 기업이나 대학이 보유하는 타사에 개방 가능한 지식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 감정이나 지식재산 가치평가, 글로벌 전개도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유통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확보한다. 또한 해외에서 비즈니스거점 유치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관점에서 개방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다언어화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경제산업성)
- 국민연대펀드도 특허 등의 원활한 유통촉진을 통해 이노베이션 창출이나 신규 사업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이나 유효성에 대해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경제산업성)

4)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기능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전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경영관리는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역에까지 전개되어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에 관한 과제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 안고 있는 경영과제 전반에 대한 상담요청이 존재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에 섬세한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지식재산종합창구의 기능을 강화한다.

【추진시책】

-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및 기업방문도 포함한 신규상담자 개척을 강화한다. (경제산업성)
-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에서 글로벌전개,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등의 상담기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강화하면서 각 정부 부처에서 세미나 개최 등의 보급 계발 활동을 강화한다. (경제산업성)
-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의 연대를 돈독히 하여 다양한 지식을 갖춘 기업OB를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경영과제에 대해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담체제를 구축한다. (경제산업성)

5) 지역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의 지식재산활동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은 독자적으로 지식재산관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한편, 대학의 경우 지식재산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곳이 있다. 이에 외부전문가나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나 지역에서의 전문가나 관계기관의 지원체제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의 지식재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지식재산지원 네트워크강화를 추진한다.

【추진시책】

-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의 지식재산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지역의 산업구조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근거로 지역기업 및 대학이 심사관으로부터 권리취득, 심사절차 및 권리활용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받기 쉬운 체제를 구축한다. (경제산업성)
- 각 지역의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지역금융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식재산지원의 대처방안을 추진한다. (경제산업성)
-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사업전략의 관점에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식재산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지역의 지식재산인재와 전문가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과의 연대강화를 촉진하여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다양한 경영문제에 대해 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경제산업성)

(3) 디지털·네트워크사회에 대응한 환경정비

1) 콘텐츠산업의 변화에 대한 대응

클라우드 네트워크나 SNS 등 미디어 변혁에 따라 콘텐츠의 범위가 창작자에 더해 이용자가 작성한 이용자·생성·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s), 교육콘텐츠, 공공섹터가 보유하는 공공데이터, 빅 데이터에 포함되는 콘텐츠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의한 신산업 창출·확대가 기대된다. 이처럼 콘텐츠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콘텐츠 창조나 활용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 제도의 대상 범위 등이 실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한다.

【추진시책】

- 클라우드 네트워크, SNS 등의 미디어의 진전, UGC 확대 등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콘텐츠 창조와 자유로운 이용촉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creative commons license⁹²⁾와 같은 public license 보급에 대해 검토하여 산업상 콘텐츠 이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문부과학성)

- 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에서 공공데이터의 광범위한 2차 이용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공적 기관이 보유하는 공공데이터에 관해 비즈니스나 교육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의 이용촉진을 위한 통일적인 규칙 등의 기반정비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내각관방)

2) 콘텐츠정책의 우선순위 향상

일본의 콘텐츠시장은 세계와 비교하여 담보상태·축소경향이 계속되어 왔으며, 관련 예산도 감소세에 있다. 이에 콘텐츠시장, 콘텐츠 관련 예산 현황을 감안한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시행한다.

【추진시책】

- 소비재산업이나 관광산업 등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일본의 국격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콘텐츠산업에 대해 자원배분의 증점화와 정책자원의 충실화를 도모한다. (내각관방)

3) 콘텐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① 신산업 창출환경의 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

신산업 창출·확대에 기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미디어 변환 등의 촉진을 위해 사적복제에 사업자가 관여하는 경우 권리제한규정의 재검토와 사업실시를 위한 원활한 실시허락체제 구축 등 필요한 제도를 검토한다.

【추진시책】

- 저작물의 공정 이용과 보호의 조화를 통해 신산업과 문화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나 미디어변환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창출과 확대를 촉진하는 전체적인 법적 환경정비를 도모하고, 권리제한규정의 재검토나 원활한 실시허락체제 구축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문부과학성)

②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기환원제도 정비

일본저작권법상 정령으로 규정된 디지털방식의 녹음·녹화기기 및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사적인 녹음·녹화를 수행하는 자는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사적인 녹음·녹화 시에 이용되는 기기의 일부는 현행의 정령규정상 대상 외로

92) creative commons license란, 자신의 저작물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걸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라이선스 시스템을 의미한다.

되어 있으며, 보상금 총액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 제도가 상정하고 있던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환원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추진시책】

- 창작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환원되도록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재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해당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콘텐츠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을 도출해 내기 위한 구조를 구축한다.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③ 신산업 창출·확대를 위한 콘텐츠 권리 처리의 원활화

해외전개를 위한 권리 처리의 신속화 필요성, 콘텐츠의 전자송신 등의 증가에 따른 권리처리 방법이나 저작권 관련제도와 그 운용에 대해 검토한다.

【추진시책】

- 방송프로그램의 2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복잡한 권리 처리 절차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창구기관을 정비한다. (총무성, 문부과학성)
- 과거 방대한 콘텐츠자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자 불명의 경우에 실시하는 해결 방법을 재검토하여 권리자불명의 입증부담의 경감 및 표준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절차의 간소화, 신속화를 추진한다. (문부과학성)
-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에 대응하여 방송콘텐츠의 인터넷송신에 관한 권리 처리의 원활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2차 이용 허락을 포함한 계약방식이나 방송 후 일정기간 내의 인터넷송신·Webcasting⁹³⁾에 관한 권리처리의 해결방법 등과 같은 계약이나 관련 법제도상의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총무성, 문부과학성)
- 산업재산적으로 제작되는 콘텐츠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라이선스계약 등으로 저작물 등의 권리귀속을 일원화한 실시권자(licensee)를 보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나 2차 이용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문부과학성)
-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과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에 ID를 부여하고, 권리처리에 관계되는 정보를 집약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참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비와 콘텐츠이용에 관한 대가의 징수·분배 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 (총무성, 문부과학성)
-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의 글로벌전개,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등의 상담기능에 대해

93) Webcasting이란, Web을 통하여 동화(動畵)를 송신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계기관과 연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각 부처에서 세미나 개최 등의 보급 계발 활동을 강화한다.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④ 원활한 지식재산활동을 위한 통상 관련 협정의 활용

산업계에 정부 간 교섭의 자리에서 교섭상대국의 지식재산제도 정비나 실효적인 법집행 확보를 촉구하여 TRIPS협정 등의 규정 이상으로 지식재산보호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추진시책】

-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연대협정(EPA)이나 투자협정 등과 같은 2국간·다국간 협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과제해결·개선을 도모한다. 특히, 환태평양파트너십(TPP)협정에 대해서는 산업계를 비롯한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국익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추구한다.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업성, 문부과학성, 재무성)

⑤ 전자서적의 보급 촉진

최근 전자서적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여 일본에도 해외기업이 참가하고 있으나, 일본 국내 전자서적의 이용률은 해외 전자서적의 이용률에 비해 저조하다. 이에 전자서적 보급촉진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지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한다. 그리고 개개의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검토한다.

【추진시책】

- 해외 거대 플랫폼사업자 등에 대한 교섭력 향상이나 모방품·해적판 대책 등을 위해 출판자에 대한 권리 부여나 서적출판·전자송신에 관련된 계약에 관한 과제를 조기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개인작품이나 전문서적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서적 콘텐츠의 확보를 통해 이용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민간의 조직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경제산업성)
- 개방형 전자출판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전자서적교환 포맷의 표준화나 국내외로의 보급촉진을 도모한다. 또한 전자출판의 플랫폼이 되는 차세대 브라우저에서의 세로쓰기문화의 계승을 위해 일본어에 대응한 세로쓰기 레이아웃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가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에 대해 지원한다. (총무성, 경제산업성)

⑥ 플랫폼 형성의 추진

OS나 브라우저 등의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어 미국의 대기업은 압도적인 개발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본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플랫폼에 관해서는 일본 업계의 자주규제나 계약

상 해외플랫폼사업자와 국내 콘텐츠홀더 간의 불리한 조건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없는 NDA (비밀유지계약)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또한 플랫폼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한 수단을 플랫폼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추진시책】

- 출판, 음악, 사진, 영화, 애니메이션, TV프로그램, 게임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지원을 통해 콘텐츠가 플랫폼을 선도하는 생태계 실현의 촉진을 지원한다. (총무성, 경제산업성)
- 일부 해외기업의 시장독점화로 일본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OS, 브라우저, 데이터센터 등의 플랫폼 관련 산업성장의 촉진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총무성, 경제산업성)
- 창작자의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의 약정투명화나 규칙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업계의 자주규제나 관행 등의 재검토를 지원한다. (경제산업성)

⑦ 빅데이터 비즈니스의 진흥

디지털·네트워크사회의 진전에 따라 다양하고 광대한 디지털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서 생성, 유통, 축적되면서 이른바 빅 데이터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소셜미디어 데이터, 웹사이트 데이터, 멀티미디어 데이터 등의 빅 데이터를 경영자원으로 취급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추진시책】

- 정보통신기술 진전에 따라 각 사업 분야에서 대량으로 생성되는 이용자 정보, 영상·음성, 센서정보 등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신비즈니스 창출·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생 확보와 활용의 균형을 고려한 규칙 등을 규정하는 사업 환경 정비를 수행하면서 데이터 수집·축적·분석에 의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연구개발에 임한다.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4)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촉진의 기반 정비

① 문화자산의 디지털·아카이브화 촉진

새로운 지식재산 생산의 기반형성을 위하여 문화자산의 축적·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유럽의 Europeana, 미국의 World Digital Library 라고 하는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아카이브화의 진전,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보존이나 문화 자산의 디지털·아카이브화 및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기록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추진시책】

- 신산업이나 문화창조의 기반이 되는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서적, 영화, 방송프로그램, 음악,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디자인, 사진, 문화재의 문화자산 및 관련 자료의 디지털·아카이브화를 촉진하고, 각 아카이브 간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정비 및 해외발신 강화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내각관방,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② 교육정보화 추진

교육정보화의 추진을 위해 정보단말기의 공급이나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고, 실증연구를 통해 교육정보화추진이 다양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한다는 것을 검증한다.

【추진시책】

-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1인당 1대의 정보단말기에 의해 디지털교과서·교재를 활용하여 교육정보화를 전개하고, 실증연구 상황을 토대로 디지털교과서·교재의 자리매김 및 교과서 검증제도의 방향성과 저작권 제도상의 과제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문부과학성, 총무성)

(4)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

1)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일체적 활동 추진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 추진을 위해 All Japan 체제를 구축한다.

【추진시책】

- 각 부처가 소장 분야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파워 강화에 관한 시책을 일체적으로 전개하는 관점에서 콘텐츠 관련 시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한편, 정부의 종합적인 추진체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내각관방)

2) 일본 전통문화에 근거한 콘텐츠·제품 등의 발굴·창조

① 콘텐츠·제품의 제작 등에 관한 지원

해외전개의 대상국가와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관련제도를 조사한 후에 받아들여 지기 쉬운 콘텐츠나 제품제작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제작의 활용을 검토한다.

【추진시책】

- 일본고유의 문화력과 제작기술력을 융합한 콘텐츠나 제품제작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조직적인 활동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구한다.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 해외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콘텐츠 제작활동을 위해 국제공동제작 등의 국제적인 창조발 신헌동을 지원하여 콘텐츠의 질적 향상이나 노하우 축적을 도모한다.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총무성)

② 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인재 개발 거점 정비

세계 콘텐츠 공급국가로서의 인재육성, 개발거점 정비에 대해 검토한다.

【추진시책】

- 일본 콘텐츠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창조력을 비즈니스로 이어나가기 위해 각 분야의 콘텐츠 집적이나 일본의 전통·문화와의 융합과 그 발신에 의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인재육성 및 개발의 창조거점 정비를 지원한다.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③ 지역 브랜드의 확립

해외시장의 선점을 위해 인재나 기술이 모이는 체제를 구축하고 브랜드화 한다. 또한 일본 콘텐츠 활용과 함께 이를 도입하는 환경을 내실화시켜 지역진흥을 도모한다. 그리고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브랜드 이미지의 보호, 수출 촉진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추진시책】

- 지역의 우수한 상품이나 기술, 문화자산 등에 대한 브랜드 관리나 콘텐츠와의 연대에 의해 세계에 통용하는 브랜드로 확립시켜 해외전개나 관광 진흥, 지역 활성화를 진행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실시한다.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 국제 교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예정인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조직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문화예술창조도시」, 「창조도시 네트워크 일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브랜드 발신력을 강화한다. (문부과학성)

- 일본 식품의 고부가가치화·브랜드력 향상에 기여하는 지리적 표시(GI)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촉진을 도모한다. (농림수산업성)
- 지역브랜드에 의한 지역 활성화에 중점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등이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확충을 도모한다. (경제산업성)

④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제작 촉진

해외콘텐츠와는 차별화된 일본 콘텐츠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콘텐츠제작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창작자의 창조력 촉발, 창작을 뒷받침하는 기술기반정비, 고도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한다. 더불어 최첨단 과학기술을 다룬 작품을 반영하여 창작자의 창조력을 촉발하는 과학기술 보급제발에 대해 검토한다.

【추진시책】

- 일본의 고도기술력을 활용한 3차원 영상기술, 콘텐츠제작의 고도화·효율화 등에 유효한 첨단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등, 콘텐츠제작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총무성, 경제산업성)

3) 일본 브랜드의 글로벌 발신

① 방송분량 확보 및 이벤트 실시

해외에서 일본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효과적인 조직 활동을 실시하고, 이벤트⁹⁴⁾ 등에서의 효과측정도 병행한다.

【추진시책】

- 일본콘텐츠나 먹거리, 산업, 문화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과 연대 및 해외 현지 방송국·송신사업자와 연대하여 콘텐츠의 현지화, 판매, 해외채널이나 방송분량 확보

94) 이러한 이벤트에는 ① CoFesta(Japan 국제콘텐츠 페스티벌: 일본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방송, 음악, 영화와 같은 콘텐츠산업에 관계하는 이벤트가 연대한 것으로 이에는 다시 도쿄 국제영화제, 도쿄 게임쇼, CEATEC TOKYO 등이 있다), ② 미디어 예술제(예술(art), 예능(entertainment), 애니메이션, 만화의 4개 부문에서 우수한 작품을 시연하고, 수상 작품의 감상 기회를 제공하는 미디어예술의 종합페스티벌로서 수상작품은 해외에서 실시되는 전람회에 전시·상영된다), ③ Japan Expo(만화·애니메이션·게임, 음악 등 일본의 대중문화와 무도나 차도 등의 전통문화를 합한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적 일본문화소개 이벤트이다)가 있다.

를 촉진하고, 일본의 산업이나 문화가 일체된 콘텐츠를 공급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외무성, 총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 일본브랜드에 관한 이벤트 등의 발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콘텐츠나 생산품에 대한 팬을 확대하면서 팬과 연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에게 일본브랜드의 매력을 전하는 대책을 국내외에서 중점적·계속적으로 실시한다. (내각관방, 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② 국제회의 활용 등에 의한 발신 강화

일본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국제회의 등을 통해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검토한다.

【추진시책】

- 정상외교나 다보스회의 같이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서 일본브랜드가 지니는 강점이나 가치의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일본산 식재료나 일본산 주류 등의 보급촉진을 도모한다. (내각관방,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4) 전략적 해외전개 추진

① 해외전개를 위한 자금 공급

효과적·효율적인 자금 공급과 사업의 효과검증을 위한 구조를 검토한다.

【추진시책】

- 일본 제품·서비스의 해외수요 개척을 실시하기 위해 자금 공급이나 전문가 파견, 조언 등을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각 기관과 연대하여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해외전개 기업들의 조직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② 해외전개 지원을 위한 체제 정비

일본콘텐츠는 해외의 법제도, 종교문제, 민족감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분석 등의 기본적인 조사나 지식재산권 피해대책에 대해 검토한다.

【추진시책】

- 아시아신흥국에 관해서는 기업OB나 변리사를 포함한 지식재산인재를 활용하여 현지 대사관이나 JETRO 등 재외공관의 지원체제나 조직적인 활동을 강화하여 각국의 지식재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설득, 모방품 피해 실태파악에 노력하는 한편, 현지에서의 일본기업의 권리행사나 일본브랜드의 추진을 포함한 지식재산활동지원을 한층 더 내실화한다.
(경제산업성, 외무성)

③ 콘텐츠규제 철폐·완화를 위한 설득 강화

해외콘텐츠에 대해 진입규제가 있는 국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추진시책】

- 콘텐츠 규제 완화·철폐를 우선도가 높은 과제로 취급하여 고위급 정부관계자에 대한 설득을 추진해나간다. (외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바운드(in-bound) 추진**① 해외 영화·드라마촬영 유치 촉진**

해외 로케이션 촬영 유치에 관한 경제효과나 방일관광객 증대를 위해 콘텐츠특구의 성과를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는 한편, 새로운 규제완화나 제도운용의 재검토 등을 진행한다.

【추진시책】

- 해외 로케이션 촬영 유치를 위해 콘텐츠특구에서 얻어진 성과의 다른 지역에서의 운용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경찰청)
- 일본 각지에서 필름커미션 등의 연대나 영화·드라마 촬영지 정보의 집약·제공 등을 통해 지역에서의 영화·드라마 촬영 체제정비를 추진한다.

② 개인여행·비즈니스 관광에 대한 조직적 대응 강화

방일외국인 여행자 수 확대, 국제회의 등의 MICE⁹⁵⁾유치의 구체적인 촉진을 위해 효과적인 정보발신 등을 실시한다.

95) Meeting(회의/연수/세미나), Incentive tour(보장/초대여행), Convention 또는 Conference(대회/학회/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딴 조어로써, 비즈니스 여행의 한 형태를 말한다.

【추진시책】

- 방일외국인 여행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여행 촉진을 위한 정보발신 등을 강화하고, 각 시장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내각관방, 국토교통성, 외무성)
- MICE 유치를 위한 마케팅전략 구축, 도입 환경 정비 등을 통해 MICE 유치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성)
- 일본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의 해외전개지원, 일본의 콘텐츠, 패션, 먹거리 등의 발신, Visit Japan 사업과의 연대 등에 의해 방일외국인 여행자나 MICE의 효과적인 유치를 도모한다.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6) 모방품·해적판 대책 강화**① 정품 유통확대와 침해대책 추진**

모방품·해적판 대책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정품을 유통하는 환경을 정비한다.

【추진시책】

- 각국과의 연대에 의해 모방품·해적판의 단속이나 인터넷상에서의 삭제를 강화하면서 침해 대책과 일체가 된 정규 콘텐츠 유통촉진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외무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재무성, 농림수산성)
- 콘텐츠침해의 대응강화에 기여하는 저작권보호나 위법 콘텐츠 유통방지를 향한 보급계발 활동을 통해 국민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문부과학성)
- 침해발생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침해발생국의 지식재산제도 조사 및 정보제공, 침해콘텐츠 유통방지를 위한 보급계발 등의 조직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외무성)

② 국내단속 강화

모방품·해적판에 의한 피해는 일본의 국익상실로 이어지므로 일본에서 모방품·해적판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과 효과적인 대응을 검토한다.

【추진시책】

- 모방품·해적판의 일본상륙 저지대책, 불법 유통품 단속강화를 위한 일본 전역 세관·경찰의 집중단속, 지식재산침해물품의 수입 금지를 위한 권리자와의 연대강화 등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의 모방품·해적판에 대한 의식계발을 추진한다. (재무성, 경찰청,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③ ACTA 추진

일본 콘텐츠산업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ACTA의 조기발효나 참가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한다.

【추진시책】

- ACTA에 관해 기 서명국을 중심으로 비서명국에 대한 설득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협정조기발효를 목표로 하는 한편, 아시아를 비롯하여 외국에 대해 협정에 대한 이해·참가를 재촉한다. (외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법무성)

7) 콘텐츠인재 육성

① 창작자 저변 확대

창작자 저변 확대를 위해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늘리는 효과적인 시책을 검토한다.

【추진시책】

- 창작자의 학교방문, 순회공연이나 워크숍, 체험교실 개최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디어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게 하여 어린이들의 발상력이나 소통능력을 양성시켜 장래의 창작자 육성을 도모한다. (문부과학성)
-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창조활동, 지식재산교육, 정보윤리교육을 실시한다. (문부과학성)

② 젊은 창작자 육성

콘텐츠 제작현장에서 종사하는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젊은 창작자 육성지원을 실시한다.

【추진시책】

- 젊은 창작자 육성을 위해 제작(모노즈꾸리)을 포함한 콘텐츠제작 현장에서 창조·발신활동을 하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한 표창제도나 작품제작 및 발표기회를 제공한다. (문부과학성)

-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의 활용 및 교류를 위해 인터넷과 같은 효과적인 창작자 육성을 지원한다.

③ 글로벌 인재 육성

해외전개를 염두한 작품제작을 할 수 있는 창작자나 프로듀서를 육성한다.

【추진시책】

- 유학·해외연수나 해외의 창작자·프로듀서와의 교류를 통해 해외에서의 콘텐츠 제작 기능·지식을 습득시키는 한편, 국제적 감각을 익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창작자·프로듀서를 육성한다.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 전문학교, 대학 및 업계단체의 산학연 콘소시엄을 활용하여 글로벌하게 활약하는 창작자·프로듀서의 육성 강화를 도모한다. (문부과학성)

④ 콘텐츠 제작환경 개선

우수한 창작자 확보를 위해 창작자의 처우개선, 이익의 적절한 환원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다.

【추진시책】

- 콘텐츠 제작현장에 적절한 비즈니스 활동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 및 하청대금 지불 연기 등 방지법을 엄정하게 운용하는 한편, 창작자가 종사하는 제작거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보급개발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산업성, 총무성)

2. 2018년 지적재산전략비전

(1) 2013년 지적재산정책비전 이후의 상황⁹⁶⁾

1) 가치관·사회상황의 변화

경제활동의 주도권이 공급자에게 있었던 과거에 일본을 비롯한 세계는 새로운 기술에 의한

96) 이하의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 지식재산전략비전(Ⅰ)”, 『National IP Policy』 제2018-17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6., 8쪽 이하 참고.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기반으로 사회를 바꾸는 ‘직선형 이노베이션 모델’을 취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사용자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자 눈높이의 아이디어와 이에 관한 다양한 기술적 식견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이를 사회에 보급하는 ‘복잡형 이노베이션 모델’로 변화했다. 이에 일본은 기업과 사용자가 제휴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상의 주류가 물건에서 가치나 서비스로 변화함에 따라 ‘물건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가치소비’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본의 기업에서는 물건과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제공하거나, 상품의 주 내용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보급됨에 따라 SNS상에서의 승인이나 공감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SNS상의 광고가 확대되어 본업화 되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광범위한 보급은 현실세계가 아닌 사이버 공간·버추얼 가상공간의 급속한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에 SNS의 보급과 공감문화의 확대가 더해져 가상공간에서의 생활이나 인간관계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건을 개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고가 생겨남에 따라 공유경제가 등장 및 보편화 되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GDP로 대표되는 경제지표를 대신하는 웰빙지표가 모색되고 있다.

일본은 건강수명연장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감소 및 성숙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하나의 조직에서 일하는 ‘구시대의 표준적 인생’은 종료되고, 복수의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단독의 ‘조직’을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가 ‘개인’에 의한 사회참여로 변화되어 가치관 및 라이프 디자인의 다양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2) 신기술의 진전과 침투

최신 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화는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술, 3D 프린터와 무설비 생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양자 컴퓨팅, 5G, 게놈 편집기술 등이 대표적인 신기술이라 할 수 있다.

▼ 표 IV-4-1 | 신기술의 개념과 응용 사례

사물인터넷 (IoT)	• 물건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의하여 상호제어하는 체계.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오는 데이터양의 폭발적 확대가 전망됨.
빅데이터	• 일반적 데이터 관리·처리 소프트웨어에서 다루기 힘든 거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의 집합. 컴퓨터 계산능력의 증대 및 소프트웨어 진전에 따라 취급이 가능하게 됨.
인공지능 (AI)	• 인간의 지적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의미.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도입된 딥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에 의하여 인간이 데이터를 이해하지 않아도 시사하는 바를 얻는 것이 가능해짐.

블록체인기술	• 블록이라고 불리는 순서가 있는 레코드의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리스트를 갖는 분산형 장부기술. 가상 통화나 권리의 관리(스마트계약),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에 응용됨.
3D프린터 무설비생산	• 컴퓨터상의 3D 데이터를 설계도로 하여 그 단면형상을 부가가공으로 점차 쌓아가는 것 등에 의하여 입체물을 형성하는 기술. 제조업을 중심으로 건축·의료·교육·항공우주·첨단연구 등 폭넓은 분야에 보급되어 공업적인 소량생산이 저비용으로 가능하게 됨.
VR·AR	• 가상현실(VR)은 컴퓨터에 의하여 만들어진 세계인 인공환경·사이버공간을 현실로서 지각시키는 기술 이고, 증강현실(AR)은 주변을 둘러싼 현실환경에 정보를 부가·삭제·강조·감퇴시켜 문자 그대로 인간 이 바라본 현실세계를 확장하는 기술임. 이에 따라 실제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저렴하게 수행하는 것 등, 가상공간상의 작업이 가능해 짐.
양자컴퓨팅	• 양자역학적 축적을 활용하여 병렬성을 실현하는 컴퓨팅 기술. 조합 최적화 문제 등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현재 컴퓨터의 계산능력을 훨씬 능가함.
5G	• 2020년 실용화를 목표로 한 제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통신속도와 취급데이터의 양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IoT를 뒷받침하는 통신규격으로 기대됨.
게놈편집기술	• DNA를 절단하는 효소 등을 활용하여 DNA에 변이를 도입하는 기술. 효율적으로 생물의 특정 형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 질환의 치료·진단 또는 유용품종의 육종 등 다방면의 산업에 변혁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음.

이와 같이 신기술과 그 주변기술은 각각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각 분야를 추월하여 조합 및 활용되고 있는데, 이렇듯 신기술과 수요자의 니즈데이터가 결부된다면 일본의 모든 산업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변화로서 ‘실제’와 ‘사이버’의 결합이 강화되어 데이터를 매개로 타 업종 간 또는 공급자와 고객이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현상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콘텐츠의 작성·배포가 용이해짐에 따라 종래의 사용자가 공급자가 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일본은 사용자가 깨닫지 못한 잠재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디자인적 사고를 더욱더 중시하고 있다.

3) 국제관계의 환경변화

국제사회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기술력에 있어 상위권을 선점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Google, Apple, Amazon, Facebook, Microsoft 등 거대 IT기업과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IT기업 같이 국가에 필적하는 경제규모를 가진 기업이 대두되어 국제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형 기업은 사용자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한편, 일본은 지금까지의 국제경제가 각 국가들의 협조 하에 자유화·글로벌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나, 최근 보호주의적 경향이나 지역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2) 미래의 ‘가치’와 창출 체계⁹⁷⁾

1) 미래의 중요 ‘가치’

일본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활약하는 개인의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본다. 나아가 개인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조합됨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이나 감성을 오픈 및 융합시켜 새로운 결합을 창출하고, 이를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

물건이나 서비스의 간단 입수가 가능한 시대가 되고, 사이버 공간, 버추얼 세계가 확대됨에 따라 물건소비에서 체험형의 가치소비를 보다 중요시한다. 이러한 가운데 확장성이 있는 디지털·버추얼 세계와 다른 리얼의 가치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대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프라이버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변하지 않는 역사나 전통, 문화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

2)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치’ 창조 체계

① 다양한 개성을 창출하는 체계

일본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개인이 존재하고 또 활약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성이 창출되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먼저, 다양한 개성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개인의 관심이나 발달에 따른 교육방식을 모듈화하여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다양한 개성이 공존할 수 있도록 타인과의 접촉을 늘리고, 차이를 수용하기 위한 감성이나 커뮤니케이션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감성, 감각, 감동에 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리얼한 체험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는 기억·체험 등의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나 오감을 체현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② 다양한 개성이 활약하는 환경 정비

다양한 개인이 그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일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성을 발휘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소득체계⁹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개인의 다면적인

97) 이하의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 지식재산전략비전(II)」, 「National IP Policy」 제2018-17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6., 4쪽 이하 참고.

98)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의 일종으로 정부가 모든 국민에 대해서 최저의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하다고 하는 액수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능력, 아이디어, 시간을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협동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③ 지식의 플랫폼화

일본은 복잡형 이노베이션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각각의 조직이 갖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개성이 풍부한 개인의 다양한 수요가 매칭되어 쉽게 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SDGs, 지역·중소기업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를 창출하는 자가 이익을 느낄 수 있도록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금의 순환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나아가 지식자산이 누적되어 그 공유나 이용으로 새로운 가치가 발생하고, 원래의 지식자산 가치도 향상될 수 있도록 사람이나 산업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④ 다양한 가치를 포섭하는 사회 시스템

이와 같이 다양한 개인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출된 가치를 포섭하는 시스템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정부, 경제·금융, 교육, 문화, 생활 등 사회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종래와 다른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는 이질적인 것과의 공존과 융합을 주저하지 않는 것, 융합에 의한 의외의 결과를 소중히 하는 것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3) ‘가치’ 체계를 위한 검토 과제⁹⁹⁾

1) ‘가치 디자인 사회’로의 도전

일본은 다양한 개성이 다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전파하는 이른바 ‘가치 디자인 사회’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디자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탄생시키기 위한 원천인 ‘지식’을 키우고 집적하여, 그 교류·융합 공유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지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일본 전문조사회 위원들은 이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7개의 키워드를 통해 제시하였다.

99) 이하의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 지식재산전략비전(II)”, 「National IP Policy」 제2018-17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6., 15쪽 이하 참고.

▼ 표 IV-4-2 | '가치 디자인 사회'의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키워드와 향후 방향성

키워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
1. 탈평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행정 구분이 아닌 기호에 따른 커뮤니티에 (복수)소속이 가능하게 한다. • 재능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 재능의 구심점을 형성한다. • 상식에서 벗어난 시나리오 창작을 장려한다. • 우수한 인재에 대한 후원, 가이드, 멘토를 늘린다. • 외국인에 일본을 전하는 앰배서더는 외부사고를 편입시키는 프로모터도 된다.
2. 스텝크워크 ¹⁰⁰⁾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독자노선을 가는 「미니 갈라파고스」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아이디어를 취사선택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어도 새로운 아이디어의 기반으로 한다. • 국가 전체로서 신비로운 요소를 잃지 않는다. •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 프라이버시를 중층화하여, 참가자가 안심하고 창조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 「지식과 재능의 3원칙 플러스 1」(아이디어를 갖고, 만들고, 외부에서 편입시키고 + 사용하는)을 실천한다. • 배타적 소유권을 완화하여 법률상 권리로 공유권을 설정한다. • 데이터를 취급하는 일정한 체계, 이를 활용하는 파이프나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공간을 만든다.
3. 돌격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分) 단위로 개인이 다수의 역할을 담당한다. • Active Fullmoon(인간의 시간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고령자의 시간과 잠재능력을 다양한 형태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Hit and Away의 정신으로 많이 도전한다. •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시행착오를 실시한다.
4. 신용경제, 평가위주의 공헌 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과 같은 기존의 평가함수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을 창출한다. • SDGs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지표를 만든다. •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는가의 평가를 기초로 창조한 가치를 카운트한다. • SDGs 관련 플랫폼을 만들어 시즈와 수요를 결부시키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디자인 능력을 비즈니스화 한다. • 플랫폼에 참가하는 각 주체의 SDGs 달성에 대한 공헌을 핵심화해 공표한다.
5. 콘텐츠 창조·활용 에코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의 창출, 활용, 2차 이용, 분배의 플랫폼, 에코 시스템을 만든다. • 블록체인기술로 창작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명확화 한다. •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창작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분배. • 금전적 대가에 더해 팬으로부터의 평가를 베이스로 인센티브를 만든다.
6. 부도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를 비롯한 제도에 적합한 여백을 준비한다. • 가시화되지 않는 곳에서 발전하는 「은신처 이노베이션」에 면죄부를 부여한다. • 과도한 「복중」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 안전보다 보장,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 무엇을 해도 좋다는 감각을 소중히 한다. • 한정적·확일적인 도그마에 굴하지 않는 이른바 집단적 모델을 육성한다.
7. 신진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업을 만들어 산업의 신진대사를 진행한다. • 대학의 기존 학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 지금 형태가 잡히지 않은 대처에 열중하는 국가여야 한다. • 성장기에 맞추어 만들어진 국가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성장적 철수를 해야 한다. • 기존 산업을 지키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 거의 모든 혁신은 20대 청년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100) '스텝 크워크'란 본래 미국의 방위·항공기 메이커에서 비밀개발 부분의 통칭이었으나, 그것이 바뀌어 혁신적인 제품·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조직과는 별도로 설치되는 (비밀) 독립형 연구개발팀을 의미한다. 나아가 기술자 개인이나 소수 팀이 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2) ‘가치’ 창출의 장을 제공

① 새로운 가치창출을 수행할 인재의 육성【단·중기】

수요자 측에 어필하는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일본이 가진 정신이나 연구성은 살리면서 발상능력, 문제대처능력, 미래구체화능력(디자인 능력), 도전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등을 갖고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특히 창조성, 디자인능력, 수리응용능력, 예술적 소양 등을 초·중등교육 단계부터 키움과 동시에 이들을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학생 또는 사회인이 몸에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추진시책】

- 초등교육 단계부터 창조성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각 지역의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교재의 수집·작성이나 교직원에 대한 교육, 성공사례의 발신 등을 진행한다.
- 대학생이나 사회인이 사회가 요구하는 창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등에서 문과·이과·예능이 일체가 된 배움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작된 것을 조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이에 더해 창작된 것을 사회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한다.
- 사람 및 기업 등의 조직에 있어서 큰 미래의 모습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려서 실현하는 능력을 제고하여 실천을 촉구한다.

② 가치창출 메커니즘의 시각화와 이를 활용한 조직 경영【단·중기】

조직이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직 내의 가치창출 메커니즘을 시각화해서 파악하는 대처를 촉구하여 조직 내 자원분배 최적화, 자원조달 다양화·원활화를 도모하고 일본 기업 등의 가치창조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추진시책】

- 유형자원보다 무형자원의 비중이 늘고 있는 점, 지식자산의 공유·공동의 체계가 확대되는 점 등이 예상됨에 따라 가치창출 메커니즘의 시각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식자산이 담당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대처를 보급한다.
- 금융기관이 하는 사업성 평가나 통합보고 등 기업정보의 기존 시각화 대처에 있어서, 조직 내외의 인재를 활용하여 지식자산을 포함하는 가치창출 메커니즘을 시각화한 결과가 활용되도록 한다.

③ 다양한 가치를 시각화, 평가하는 시스템 또는 지표 생성【중·장기】

‘산포요시’¹⁰¹⁾와 같은 일본의 독특한 사고를 축으로, 타인에 대한 공헌이나 타인으로부터 얻은 공감 등 비금전적 가치를 평가·계측하는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평가는 엄격한 규칙에 기한 특정한 자에 의해서가 아닌 많은 참가자에 의한 민주적인 프로세스로 하고, 블록체인기술 등을 활용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④ 다양한 가치를 만족시키는 사업에 도전하는 벤처기업 지원 체계【단·중기】

기존 기업과 벤처기업 사이에 제품·서비스의 시험적 조달, 시제품의 공동 개발, 공동 마케팅, 자금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일본 정부는 공공조달·공공사업에서 벤처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험품으로서 조달하는 체계를 만든다.

3) ‘가치’를 확대하는 체계의 구축

① 다양한 인재·조직이 모이는 장의 형성【단·중기】

도전하는 사람들을 일본과 해외로부터 모집한다. 이들이 이노베이션이나 크리에이션을 창출하기 쉽도록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재·조직이 모여서 배우고, 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추진시책】

- 대학 등 가운데, SDGs의 추진을 통한 과제해결과 기타 특정 목적하에서 다양한 인재·조직이 모이는 장을 형성하여, 서로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촉진한다.
- 국제적인 교육·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다양한 인재를 모집하므로 일본발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촉진한다.
- 다양한 인재·조직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에서의 지식재산 취급 등에 대해 정리한다.
- 다양한 인재가 갖고 있는 개인의 능력 또는 시간과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측이 매칭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Fullmoon Project)한다.
- 일본이 다양한 인재·조직이 도전하기 쉬운 장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첨단 인재가 집적하고 있음을 세계에 홍보한다.

101) 산포요시(三方よし)란 고객도 종업원도 거래처도 모두 좋은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는 사람도 좋고, 사는 사람에게도 좋고, 세상에도 좋은 즉, 장사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사회에 공헌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② SDGs 등의 실현을 위한 지식자산 플랫폼【단·중기】

기업은 사회와 함께 발전한다는 사고를 실천하여 SDGs의 달성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의한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사회적 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지식자산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에 참가하는 기업은 일정한 지식자산을 공공재로서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를 조성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틀이 되고, 기업은 오픈 앤 클로즈(Open & Closed) 전략의 틀로서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추진시책】

- SDGs에 관련된 기술, 데이터, 인재·조직정보(시즈)와 해결해야 할 과제 등(수요)으로 이루어진 지식자산 플랫폼을 만들고, 정보제공자와 이용자는 등록제로 하여 관심 있는 자의 매칭이나 제휴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창출을 촉구한다.
- 지역·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식자산의 플랫폼과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과의 제휴를 도모함으로써 수요, 시즈의 매칭을 하기 쉬운 환경으로 정비하여 지역·중소기업에 관련된 다양한 시즈와 수요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을 촉구한다.
- Fullmoon project를 시행한다.

③ 차세대 콘텐츠 창조·활용 시스템의 구축 【중·중기】

정규 콘텐츠가 신속하고 폭넓게 배포되어 적절한 대가가 관계자에게 환원되도록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권리의 관리나 이익분배의 자동화·간략화를 진행하고, 콜라보레이션의 활성화,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의 구축, 2차적 이용 시장의 확대 등을 원활화하면서, 해적판을 근절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AI의 이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새로운 창작표현의 실현, 마케팅과 번역 등 지역화의 원활화 등을 촉구한다. 한편, 새로운 재능을 창출하는 장이기도 한 User Generated Contents(UGC)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키텍처의 도입이나 분쟁처리시스템을 검토한다.

【추진시책】

- 블록체인기술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전달하고」, 「활용한다」는 과정이 적절하게 순환하여, 참가자가 적절한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의 관리와 원활한 이용·이익분배 시스템의 구축을 촉진한다.
- 콘텐츠 제작 현장에 AI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선진적인 콘텐츠 제작·표현기술에 관한 최적의 활용 방법 보급을 도모한다.
- 콘텐츠 세계 동시전개의 대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 리치사이트 등을 통한 침해 콘텐츠의 유도행위에 대한 법적조치의 명확화와 사이트 블로킹의 법적근거의 명확화 등,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다층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항 수단을 도입한다.

4) 기타 향후 검토 과제

사회 다양한 부분에서의 캐리어, 비즈니스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샌드박스(sandbox) 제도, 테스트 에어리어(test area), 시한부 규제 완화 등을 추후 검토한다. 또한 정책의 기획 입안에서의 인공지능(AI)의 활용도 검토한다.

3. 소결

일본은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 사회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고,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보호·활용하여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식재산입국'을 선언하였다. 이후 2002년 7월, '지적재산전략회의'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전략에 관한 기본방향과 구체적 행동계획이 총망라된 '지적재산전략대강'을 발표하여, '지식재산입국'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02년 12월 제정된 지적재산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전 각료가 참석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정책비전(2013)'과 '지적재산전략비전(2018)'을 통해 미래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전망 및 시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각 관계부성이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인 연도별 단기·중기 시책은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다.

먼저, 일본의 '지적재산정책비전(2013)'은 ① 신흥국의 지위 향상, ② 중소·벤처기업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의 글로벌화, ③ 콘텐츠 미디어의 다양화 등 지식재산정책의 전제가 되는 산업 및 사회정세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 ②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경영지원 강화, ③ 디지털·네트워크사회에 대응한 환경정비, ④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강화라는 4대 전략을 중시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콘텐츠와 관련하여서는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콘텐츠창조입국」을 선언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향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비전(2018)' 2013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① 직선형 이노베이션에서 복잡형 이노베이션으로의 변화, ② 오픈 이노베이션의 고조, ③ 가치소비의 선호, ④ SNS와 공유경제의 보급, ⑤ 사이버·가상현실의 확대, 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기술의 진전 등과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① 탈평균에 기반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조직의 육성 및 이노베이션의 장 마련, ② 기술·데이터·콘텐츠 등 지식자산의 교류 및 공유를 통한 가치 확대 체계의 구축, ③ 세계에 공유되는 가치 또는 감성의 지속적인 생산·발신·전개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당 비전에서는 특히, 다양한 개성이 다면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세계에서 공감 받는 ‘가치 디자인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지적재산정책비전(2013)’과 ‘지적재산전략비전(2018)’의 수립 이후,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9년 6월, 가치 디자인 사회의 실현을 위한 ‘지적재산추진계획(2019)’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은 ‘가치 디자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3개축으로써 ① 탈평균: 탈평균의 발상으로 개개인의 주체를 강화하여 도전을 촉진, ② 융합: 분산된 다양한 개성의 융합을 통한 신결합을 가속화함, ③ 공감: 공감을 통하여 가치가 실현되기 쉬운 환경 조성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20년 5월, ‘신형 코로나’의 세계적 만연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향하여야 할 사회상인 ‘뉴 노멀(새로운 일상)’을 향한 지적재산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적재산추진계획(2020)’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은 사회 전체의 DX가 가속화되고, 가치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보급되는 ‘뉴 노멀’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적재산·표준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이노베이션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① 사회 전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도, ②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국가 지원, ③ 지적재산의 보호와 이용의 밸런스(공익과 사권의 균형), ④ 가치 디자인의 실천 확대를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5절 ●● 소결

이상으로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 개발 지표를 살펴보았다.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WIPO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IP가 잘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IP 거버넌스 중심으로 지표들이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 중국의 경우에는 IP 거버넌스 구축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으므로, IP 창출, 보호, 활용, 인프라(기반)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 과제를 중심으로 지표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은 보다 선언적인 형태로 목표지향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IV-5-1 |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국가 IP 전략 개발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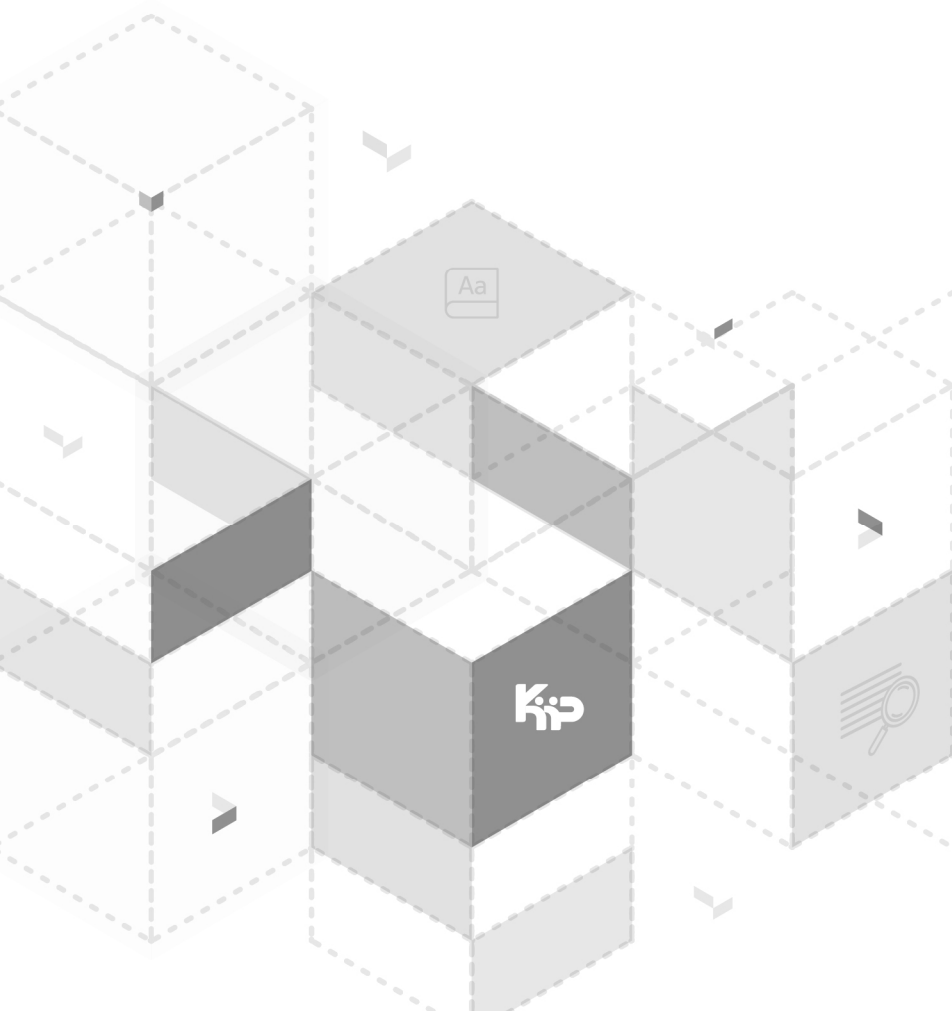
구분	과제 1	과제 2	과제 3	과제 4	과제 5	과제 6
WIPO	IP 행정 및 관리	대학, 연구 기관, 비즈니스, 산업, 중소기업 및 개인별 IP 창출	대학, 연구 기관, 비즈니스, 산업, 중소기업 및 개인의 IP 및 기술 이전, 상업화	저작권 및 저작권 산업	식물 다양성 권리 및 종자 산업 (식물 다양성 보호)	
한국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중국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창출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 협력 강화	조직 실시 및 보장 강화
일본	미래사회로 연계될 환경변화 및 징조	예측되는 미래의 사회상(인간이 행복한 세상)	미래 가치 및 가치창출구조	일본의 특징을 활용한 가치 디자인	미래 구조(가치 디자인 사회)를 위한 검토 과제	

국가 IP 전략 수립 모델 구축

제1절 서설

제2절 국가 IP 전략 수립 프로세스

제3절 국가 IP 전략 수립 지표 설정



제1절 ●● 서설

지식재산(IP) 전략의 개념은 널리 논의되어 왔으며, 전략적 접근법 채택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합의되었다. 특히, 개발경제와 전환경제는 개별 국가의 특정 상황과 요구에 기반을 둔 구조화되고 계획적인 접근방식에 끌리며, 시민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과 더 많은 내부 투자 유치, 더 발전된 시장 경제국의 기업들과 사업 파트너쉽 구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다. 또한 선진경제는 혁신 프로세스에서 IP 사용에 대해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이들 경제는 과거의 경제발전이 IP 전략에 기반을 두지 않았지만 모든 경우에 IP가 성공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그들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IP 전략의 기획과 실행에 상당한 자원을 할당하고, 혁신, 창의성, 그리고 IP에 대해 고도로 계획된 접근법을 채택한 주요 신흥국들과 경쟁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IP 전략의 수립은 개도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지식재산(IP) 전략을 수립하는 첫 단추는 해당국의 지식재산 시스템(IP system)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국가 IP 전략 수립을 해야 하는 대상국의 IP 환경분석¹⁾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다.

해당국의 IP 환경분석을 통하여 지식재산 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P 환경분석’을 위한 절차와 지표(indicator)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본 국가 IP 전략 수립 모델은 WIPO의 국가지식재산 전략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기존에 국가 IP 전략 수립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의 국가 IP 전략의 수립절차와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이 모델은 한국이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개도국 등 국가 IP 전략 수립 지원을 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하에서는 국가 IP 전략 수립 프로세스와 IP 환경분석 및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
국가 IP 전략 수립 프로세스

1. 사전준비단계

(1) 국가 IP 전략 수립 목적 파악

전략 수립국의 IP 전략을 수립하는 이유와 목적을 파악한다.

(2) 컨설팅 팀

해당국의 국가 IP 전략 수립을 지원할 컨설팅 팀을 설치한다.

(3) IP 분야별 이해관계자 선정

IP 창출, 활용, 보호, 기반 및 신지식재산분야 등 컨설팅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를 구성한다.

▼ 표 V-2-1 | 국가 IP 시스템의 주요 분야(예)

IP 분야	내용
IP 창출	• IP 창출을 지원하는 구조 및 정책을 의미
IP 활용	• IP 권리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구조 및 정책
IP 보호	• IP 권리의 보호 범위나 대상 등을 포함한 국가의 IP 법률을 의미. IP 법률에 포함된 세부 사항은 IP 권리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권리침해에 적용되는 집행 관련 조항을 포함
IP 기반	• IP 출원 및 등록을 포함하여 IP 권한을 관리하는 정부 기능과 이러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자원을 의미 • IP 권리를 침해할 경우 민사, 행정 및/또는 형사 절차와 구제 수단을 통해 IP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IP 집행 메커니즘을 의미

2. 제1단계: 컨설팅 팀의 사전준비

대상국 국가 IP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컨설팅 팀이 사전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1) 대상국에 대한 프로 파일 검토

국가 IP 전략 수립 대상국이 지식재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이는 대상국의 사회 전반적인 환경과 지식재산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 표 V-2-2 | 대상국가의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요소

구분	검토 항목
1. 지리적 현황	지역, 평균고도, 지형, 기후 등
2. 인적 요소	인구, 연간 인구 증가율, 종교 등
3. 경제적 현황	GDP, GDP 성장률, 일인당 GDP, 천연자원, 무역 현황 등
4. 정부 형태	정부유형, 헌법, 행정구역 등
5. 교육	초, 중, 고, 대학의 교육, 대학 수, 연구소 수 등
6. IP 관리 기관	산업재산, 저작권, 식물 육종가 권리, 전통지식 및 유전 자원 등 IP 분야별 관리기관 현황 등
7. IP 법률 현황	IP 관련 각종 법률 현황

(2) IP 전문가 확보 및 과업준비

대상국의 국가 IP 전략 수립을 자문해 줄 수 있는 현지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대상국에서 IP 전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과업을 준비한다.

(3) 대상국의 IP 전략 수립팀과의 국가 IP 전략 수립 프로그램 협의

컨설팅 팀과 대상국 IP 전략 수립팀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 IP 전략 수립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 표 V-2-3 | 국가 IP 전략 개발을 위한 작업계획

S/N	활동	년(분기 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	국가 IP 전략 수립 승인					
2	프로젝트 팀을 임명					
3	전체 프로세스에서 프로젝트 팀을 교육					
4	데스크 조사 수행					
5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데이터 수집).					
6	IP 환경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국가 전문가 회의					
7	최종 환경분석 보고서 준비					
8	최초의 국가 IP 전략 초안을 개발.					
9	최초 국가 IP 전략의 초안 검증을 위한 전문가 회의					
10	국가 IP 전략 초안 준비					
11	이해관계자 포럼에 초안 발표.					

S/N	활동	년(분기 별)				
12	국가 상담 중에 얻은 피드백을 기반으로 최종안을 준비					
13	최종 전략 문서를 준비					
14	도입을 위해 정부에 제출					
15	도입 전략 수립					

3. 제2단계: 데이터 수집절차의 기획과 관리(환경분석단계)

(1) 데스크 조사

일반적인 문헌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1. 국가의 장기개발 계획의 존재여부와 전략목표
2. 국가의 주요 경제 및 사회적 목표와 관련된 주요 전략 부분
3. IP 전략을 통해 위의 국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컨설팅 팀과 대상국 국가 IP 전략 수립팀은 다양한 기관 및 정부 부처의 웹사이트, 도서관 등에 접속하여 국가 IP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수집한다.

1. IP를 담당하는 사무소의 위치, 해당 사무소가 정부 부처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부서인지의 여부, 또는 반자율 단체인지 여부
2. 해당 국가의 다양한 유형의 IP 권리(산업재산, 저작권, 식물품종법 및 전통지식)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
3. 해당 국가의 다양한 유형의 IP 권리에 적용되는 법률
4. IP 권리의 활성화, 창출, 사업화, 법집행을 위해 해당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인프라
5. IP 시스템과 관련한 해당 국가의 국제적 의무

(2)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1) 데이터 수집계획: 대상국의 IP 환경분석을 위하여 데이터 수집계획을 마련한다.

2) 수집이 필요한 데이터

1. IP 권리와 관련된 기존의 법적, 행정적 및 법집행 구조는 물론 경제, 사회 및 문화 개발과 관련된 국가 정책 및 전략에 대한 데이터
2. 기존의 비즈니스 및 혁신 지원 인프라와 국가 정책 및 전략 등이 있는 경우, 이것들은 비즈니스를 촉진 및 지원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대학 및 연구 개발 기관이 IP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3. IP 시스템의 사용 수준은 각 부문과 각 유형의 출원인과 관련된 IP 권리의 출원, 등록 및 허여 수를 고려

4.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IP와 공공 정책 영역 관계성이 있는 데이터
5. IP가 개발 도구로써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재의 IP 시스템과 국가의 전략적 목표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채우기 위한 국가적 요구
6. 유엔 및 기타 정부간 기구(IGO)에 의해 수행된 IP 및 기존에 있는 관련 이니셔티브.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무역 지원, 민간 부문 개발, 무역 관련 기술 지원 및 입법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다른 IP 관련 기술 지원 제공자(즉, 미국 특허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과 같은 조직),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를 지원도 포함
7. 해당국의 국내외 거시경제, 산업동향 분석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를 발굴하고, 대상국에 필요한 지식재산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여 변화될 세상에 대한 지식재산 이슈를 예측하여 정책화할 수 있는 데이터

3) 데이터 수집 대상자

기본적으로 IP 관련 업무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IP 법률 제정 또는 IP 권리 출원 처리를 담당하는 지식재산청(특허청) 공무원
2. IP 변호사, 기술 관리자, IP 평가자 및 감사자와 같은 IP 전문가
3. IP 권리 법집행을 다루는 공무원 및 대리인
4. 공공 부문 또는 민간 부문에서 활동하는 발명가 및 창작자
5. 단체 관리 조직, 출판사 협회, 음악 협회, 발명가 및 제작자 협회와 같은 비즈니스 지원 협회
6. 혁신적인 상업 기업 개발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및 기관
7. IP 자산의 상업적 이용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책임이 있는 공무원 및 대리인
8. 산업, 무역, 농업, 건강 및 환경과 같은 주요 경제 부문의 공무원

4) 데이터 수집절차

기관에 대한 개별 방문하거나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인터뷰 또는 이 2가지 방법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4. 제3단계: 국가 IP 전략 수립 대상국의 전문가에 대한 의견 청취

지식재산 현안 및 핵심 어젠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민간위원, 관계부처,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현안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정부,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집된 데이터 공유 및 이해관계자의 국가 IP 전략 참여를 권장하기 위함이다.

5. 제4단계: 국가 IP 전략 초안 작성의 기획 및 관리

(1) 전략적 목적과 목표의 기준

IP 환경분석 단계에서 밝혀진 약점 부분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강점 부분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IP 시스템 요소의 분석이다.

(2) 초안 작성시 고려 사항

- 1) IP 전략과 국가개발 아젠다와의 연결
- 2) 비전, 미션 및 목표 설정
- 3) 목적 및 전략설정: 주요 지표를 고려
- 4) 특정 프로젝트 등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 5) 국가 IP 전략 조정기구: 국가 IP 전략의 효과적인 이행, 조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

첫째, 국가 IP 전략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부처간 기구)로 구성된 상위 기관

둘째, 국가 IP 전략 운영위원회 설치

셋째, 단위조직 마련. 즉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전략 수행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 / 그룹에 일상적인 지원 제공

6. 제5단계: 벤치마킹 및 대표사례 적용

(1) 대표사례 벤치마킹

국가 IP 전략을 이미 수립한 국가가 운영하는 IP 시스템 중에서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2) 벤치마킹 절차

- 1) 아래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1. IP 시스템의 어떤 측면이 벤치마킹되는가
2. 어느 국가의 IP 전략이 벤치마크로 사용되는가
3.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는가

2)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비교

1. 대표사례 벤치마크 국가의 성과는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성과는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3. 그 나라들은 어떤 면에서 더 우수한가.
4. 우리는 그 나라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5. 우리는 어떻게 그들 나라에서 배운 교훈을 우리나라의 IP 전략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가.

3) 벤치마크 국가 선택기준

이하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벤치마크 국가를 선택한다.

- 경제발전의 같은 단계에 있는 국가
- 더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달성한 국가
- 자원이 비슷한 국가.
- 귀하의 국가에서 구현하려는 IP 시스템의 특정 요소에 대해 최근에 경험이 있는 국가
- 미래의 경제 개발 계획이 유사한 국가
- 특정 IP 요구 사항이 유사한 국가
- 귀하의 국가가 속한 것과 동일한 경제 블록에 속하는 국가
- 국제 조약, 의정서 및 협약
- 경쟁력

7. 제6단계: 국가 IP 전략 초안 마련

제3절

●●
국가 IP 전략 수립 지표 설정

1. 단계별 주요 고려

IP 환경은 대상국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개도국과 같은 경우에는 IP에 대한 기본적인 거버넌스, 즉 지식재산청의 기능이나 역할, IP 출원 등에 대한 시스템, 각종 국제규범 등을 비롯하여 IP 거버넌스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 1단계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사용하여 IP 환경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대상국의 IP 전략을 수립하여 전략을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지표(안)

지표는 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IP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한 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2단계는 구체적인 정책추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우선 제1단계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IP 행정 및 관리 체계를 비롯한 IP 거버넌스 자체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할 때 고려해야할 지표이다.

▼ 표 V-3-1 | IP 거버넌스 구축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지표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1단계	IP 거버넌스	1. IP 행정 및 관리	산업 재산권	특허청의 법적 지위
				특허청의 자율성
				특허청의 주요 기능
				특허청의 직원 및 인적자원 개발 계획
				방식 및 실체 심사
				특허청의 자동화 및 현대화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IP 출원 및 권리부여	
			IP에 대한 국내법	
			IP 법원	
			TRIPS 준수	
			TRIPS에서의 유연성(강제 라이선스 및 병행 수입)	
			국제 계약, 조약 및 의정서 준수	
			IP 등록 전문가(변호사 및 대리인)	
			저작권	저작권 부서의 법적 지위
		저작권 부서의 자율성		
		저작권 부처의 주요 기능		
		저작권 부서의 직원 및 인적자원 개발 계획		
		국가 문화 정책		
		저작권 및 관련 산업의 경제적 영향		
		창조적 산업 촉진		
		단체 관리 조직		
		전통지식과 민속		
		IP 및 정보 통신 기술(ICT)		
		신지식 재산권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법적 지위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자율성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주요 기능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 직원 및 인적 자원 개발 계획	
			농업 정책	
			유전자원과 제품	
			지리적 표시	
			식물 다양성 권리의 사업화	
			사업 협회	
		IP 권리집행	지적재산권 집행에 적용되는 법률	
			IP 집행 범위	일반
	민사(또는 행정) 절차 및 구제			
	임시 조치			
	국경 조치			
	형사 절차 및 처벌			
	IP 집행 기관			
IP 집행 담당자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IP 창출	대중/소비자 교육 및 인식 제고	
		과학 기술 및 혁신(STI) 정책	
		산업 혁신 및 특허 프로모션	
		IP 정책	
		연구 개발 자금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국가 혁신 시스템	
		기술 및 IP 정보 서비스	
		IP 인식 및 홍보 프로그램	
		IP 활용	
	IP 자산의 평가		
	P 자산의 상업화 자금 조달		금융 상품
			담보
			사업 계획
			재무보고
			민영화
			수익 창출 또는 유동화
			벤처 캐피탈
			조인트 벤처 또는 합병
			정부 금융 기관
			비즈니스 (기술) 인큐베이션
			제품 및 프로토타입 개발 시설
			과학 기술 단지
			기술 이전 정책
			IP 상업화 전문가(평가, 감사, 라이선스 및 기술 관리자)
			저작권 부서의 자율성
			저작권 부처의 주요 기능
			저작권 부서의 직원 및 인적자원 개발 계획
			국가 문화 정책
			저작권 및 관련 산업의 경제적 영향
		창조적 산업 촉진	
		단체 관리 조직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전통지식과 민속		
		IP 및 정보 통신 기술(ICT)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법적 지위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자율성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의 주요 기능		
		식물 육종가 권리 사무소 직원 및 인적 자원 개발 계획		
		농업 정책		
		유전자원과 제품		
		지리적 표시		
		식물 다양성 권리의 상업화		
			사업 협회	
			지적재산권 집행에 적용되는 법률	
			IP 집행 범위	일반
				민사(또는 행정) 절차 및 구제
				임시 조치
		국경 조치		
		형사 절차 및 처벌		
				IP 집행 기관
				IP 집행 담당자
				대중/소비자 교육 및 인식 제고

제2단계는 이미 IP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IP 정책 수립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표이다. 이는 IP 창출, 활용, 보호, 기반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었다.

▼ 표 V-3-2 | IP 전주기적 세부 정책 강화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지표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정의/의미	측정방법
2단계	IP 창출체계 촉진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R&D 전 과정에서 IP 전략 적용 및 확대, 특허전담관제도 도입, IP-R&D 지원 등으로 특허의 질적 수준 제고	정부R&D 우수 IP 비율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추진	국가R&D-특허-표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통한 표준화 성과 평가	표준특허 확보 비율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정의/의미	측정방법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R&D 기획 시 특허정보 활용 확대, 지재산 선점 가능성을 고려한 기술로드맵 구축 지원 성과 평가	특허동향조사 분석 실시 비율
		차세대 콘텐츠 발굴 및 창출 촉진	기기-콘텐츠-플랫폼 통합 추세 대응, 스마트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융합형 콘텐츠(가상현실 3D 홀로그램) 육성 성과 평가	콘텐츠 수출액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유망 문화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문화기술R&D에서 콘텐츠 스타트업비중
		글로벌 브랜드·디자인 창출 기반 마련	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 권리화 및 해외진출 지원, 디자인과 기술R&D의 융합 및 전문인력 고도화 성과 평가	디자인 국제경쟁력 순위
		창조적 지식재산 창출 환경 조성	소규모 연구자 그룹의 기초연구, 도전적·창의적 연구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창의력 중심 평가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 특허 수
		개방형 연구개발 및 해외 우수인재의 활용 촉진	산학연 협력연구 사업 우대 강화, 해외 우수 지식재산 창출인력의 유치 및 교류 활성화, 연구소, 연구자 간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성과 평가	국제공동연구비 비중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 고도화	기관별 보유 IP에 대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 평가 및 관리 규정 마련 등 우수 지식재산 중심 관리 성과 평가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재산 전문인력 확보율
		중소기업의 핵심·원천 특허 창출 역량 강화	지재산 경영전략 수립 지원 및 분쟁대응 등 강한 지재산 창출 및 확보 지원 성과 평가	전담인력 보유 중소기업 비율
IP의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 질서 구현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관리 강화를 통해 IP의 활용가치 제고	보유특허 수 대비 자사활용, 타 기관이전, 현물출자 등의 활용 건수의 비율	
	IP·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공공연구기관의 IP를 이전받은 기업의 사업화 지원 펀드 마련	특허기술 사업화 펀드 확대 (특허기술 사업화 펀드 조성규모)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마련(신규)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조성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중심의 IP 금융 고도화	은행이 조성한 NPE 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한 지원 확충	IP 투·융자 규모 (IP 금융: IP 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투·융자규모)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치평가·금융지원 확대	문화기술R&D 투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 확충	가치평가연계 펀드조성금액	
	문화계정 투자재원 조성금액	문체부		
	신규 콘텐츠 기업 육성펀드금액	콘텐츠진흥원		
	완성보증제도 활성화/지원 금액	문체부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정의/의미	측정방법	
		IP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IP 서비스업 관련 인프라 확대 및 전문인력 수급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 육성	IP 서비스산업 규모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마련(신규)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조성 규모)	TLO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미활용 기술의 아웃소싱을 통한 이전 및 공동기술 사업화 등 성과확산 평가	기업의 온라인 거래시스템 DB 활용률	
		공공·공유 지식재산의 상업적 이용 확대	국유특허 공공정보 활용 촉진, 공유저작물 수집 관리체계 구축, 저작물 이용환경 개선 등 성과 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연구생산성	
		다양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육성	강한 특허 풀 확보를 위한 창의 자본 조성 운용 성과 평가	기술신탁 이전 건수	
		지식재산 민간투자 활성화	기술가치평가와 금융상품 간 연계 강화 및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투자 활성화 유도 성과 평가	창의자본 조성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	서비스산업 실태 조사 분석, 표준 산업분류 내 독자적 분류체계 마련 및 관련법령 정비 성과 평가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시장 규모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중소기업 기술자료 제공 강요 및 유용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 성과 평가	중소기업 기술임치 건수	
		불공정한 권리남용에 대한 대응 강화	지재권 남용 사전예방 기능 강화 및 국가간 부처간 공조 강화 성과 평가	동반성장협약 체결 기업 수(누계)	
	IP의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동 강화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보호 강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선진화	24시간 온라인 침해 감시 시스템 및 긴급대응 시스템을 가동하여 불법복제물 등 저작물 침해율 저감	저작권 침해율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IP 보호체계 정비	SW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단속 강화	SW 불법복제율	
		산업재산권 심사제도 개선 및 고도화	적정 심사처리 기간 유지를 위한 심사 인력 증원 및 효율적 운영, 맞춤형 심사 처리제도 내실화 성과 평가	특허 심사처리기간	
		지식재산 침해물품 불법 유통 방지 체계 구축	새로운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온라인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성과 평가	저작물 합법시장 침해율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국경조치 강화를 위한 단속시스템 개선, 신고 침해여부 판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성과 평가	지식재산 보호지수(I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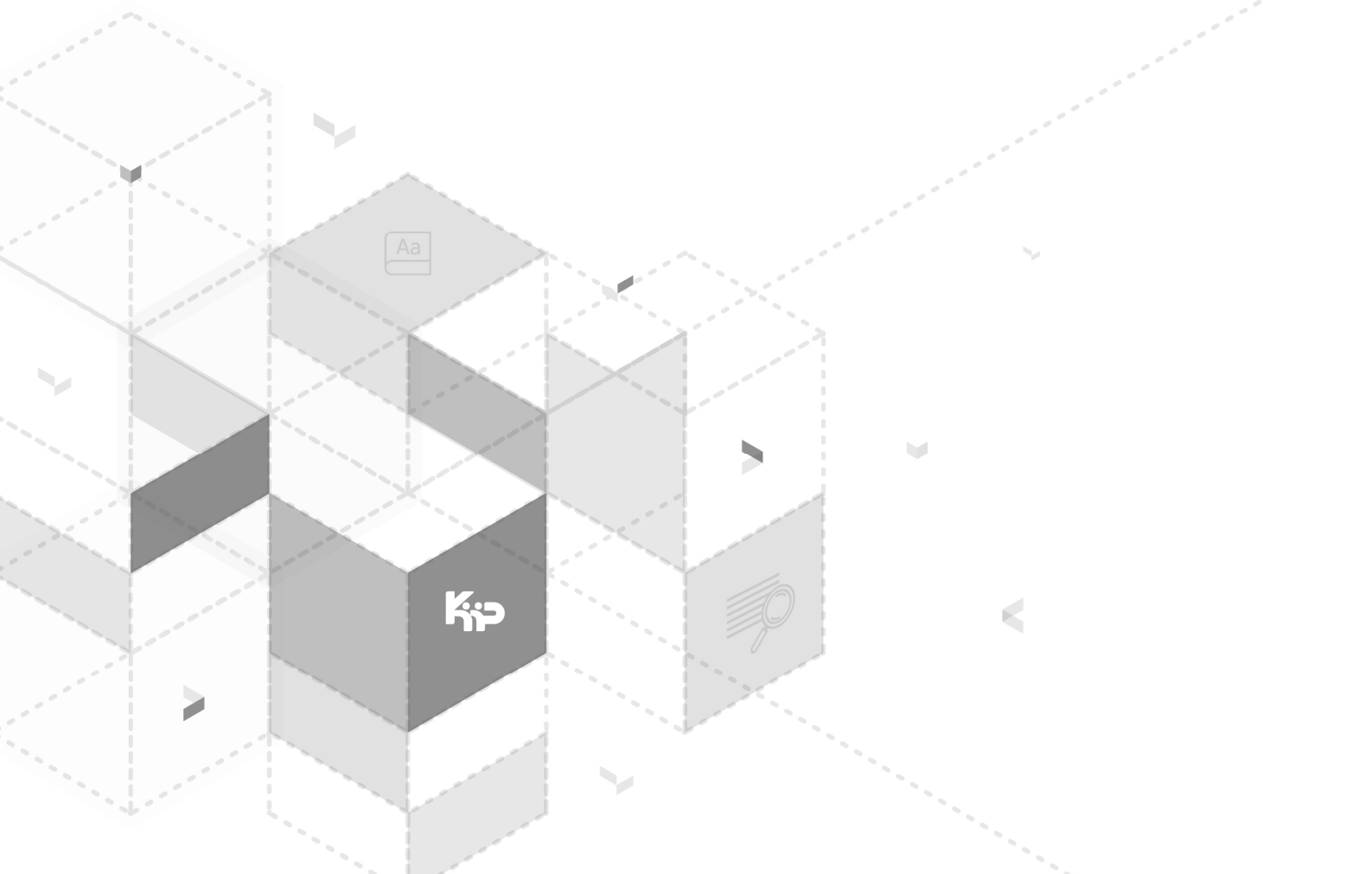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정의/의미	측정방법
		해외 지재권 보호 기반 조성	해외 지재권 침해실태 조사 및 관련 정보 동향 제공 등 지재권 침해 예방 인프라 구축 성과 평가	해외진출 저작물 인증 건수
		침해 대응 현지 지원 체계 구축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기관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설치 확대, 지재권 소송보험제도 이용 활성화 성과 평가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컨설팅 건수
		지재권 소송 실효성 및 전문성 확보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성과 평가	심결 취소율 제고
		산업재산 심판의 신속성 제고 및 품질 고도화	심판관 역량 강화 및 심판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심판관 내실화 추진 성과 평가	심판처리기간 단축
IP의 기반조성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성과 평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기업 비율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지재권 보유 활용의 균등 기회 제공 및 접근성 제고 성과 평가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창출 비율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강화	인력 수급 현황, 미래예측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인력 육성 활용 및 처우개선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성과 평가	지식재산 연구인력(누계)	
	지식재산 지원인력 양성	법조인력(변리사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성과 평가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누계)	
	지식재산 선도대학을 설치하고 IP 커리큘럼을 내실화하여 IP 교육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 선도대학 수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데이터 보급 및 확산	국가지식재산 표준분류체계 수립, 지식재산 통합 포털 구축 등을 통한 지식 확산 활용 기반 마련 성과 평가	산업재산권 정보 건수	
	IP 국제공조강화 및 글로벌 위상제고			
	생물·유전자원 관련 新국제규범 대응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선도	국제규범 형성과정 적극적 참여, 국가간 법 제도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지식재산제도 선진화 효율화 성과 평가	지식재산을 활용한 ODA 사업 수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역실정에 적합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법체계 마련 등 지식재산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조성 성과 평가	지역 기업 대상 지식재산 컨설팅 회수	

단계	항목	주요 고려 지표	정의/의미	측정방법
신지식재산 보호·육성 체계 정립	신품종 육종 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	연구단지 센터 조성, 인턴제를 활용한 육종 인력 양성, 전략품 목R&D 투자 확대 등 품종개발 기반 구축 성과 평가	연구단지 센터 조성, 인턴제를 활용한 육종 인력 양성, 전략품 목R&D 투자 확대 등 품종개발 기반 구축 성과 평가	식물 품종보호 출원 건수
	품종보호 체계정비 및 국제 교 류·협력 강화	품종보호제도 실시기관 간 효율 적 운영체계 확립, 개도국 품종 보호제도 정착 지원 등 국제 교 류 및 협력 강화 성과 평가	품종보호제도 실시기관 간 효율 적 운영체계 확립, 개도국 품종 보호제도 정착 지원 등 국제 교 류 및 협력 강화 성과 평가	신품종 종자 수출액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 창출지원	정기적 생물자원 실태조사, 생물 자원 발굴 확보,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 확보 기반 구축 성과 평가	정기적 생물자원 실태조사, 생물 자원 발굴 확보,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 확보 기반 구축 성과 평가	고유 생물자원 확보 수
	전통자원 기반 창작·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전통자원의 개발가치 평가 및 복 원 재생 방안 연구, 전통자원 기 반 창작 개발 활성화 지원 성과 평가	전통자원의 개발가치 평가 및 복 원 재생 방안 연구, 전통자원 기 반 창작 개발 활성화 지원 성과 평가	전통지식자원 활용 소득화사업 지원 수
	전통자원 관련 국제적 대응 및 제도개선 추진	민관 합동으로 전통자원 보호 관 련 국제적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성과 평가	민관 합동으로 전통자원 보호 관 련 국제적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성과 평가	무형문화유산 국가대표 목록 수
	식별표지의 창출·활용 강화 및 보호제도 개선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제도 보 완, 등록품 품질관리 및 인증기 관 사후관리 강화 성과 평가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제도 보 완, 등록품 품질관리 및 인증기 관 사후관리 강화 성과 평가	지리적 표시품 출하량
	유망 신지식재산 발굴·활용을 위 한 기반구축	퍼블리시티권, TV 포맷 관련 국 내외 동향 분석, 법적 보호 필요 성 및 보호범위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모색 성과 평가	퍼블리시티권, TV 포맷 관련 국 내외 동향 분석, 법적 보호 필요 성 및 보호범위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모색 성과 평가	지리적 표시 관련 등록 건수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개도국의 IP 전략 수립을 지원할 때 고려해야할 지표 및 요소들을 IP 거버넌스 구축 단계와 구체적 IP 정책 수립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가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상황이 모두 다를 것이므로 이 지표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 IP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국가의 명확한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국가 개발 계획과 조화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위 지표들을 가감하는 형태로 대상국가와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국가 IP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이상 논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 IP 전략은 IP 영역 내에서만 좁게 구상되고 개발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 IP 전략에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또는 저작권과 산업 재산권이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 관련 부처) 외에 경제 이슈, 과학 및 기술, 무역 및 서비스, 관세, 시장 감독, 문화, 사법, 교육 및 재정 등 국가의 경제 및 사회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정부 부처의 일부가 참여해야 한다.

지식 재산권의 국제적 차원을 감안할 때, 많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교부가 전략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더불어, 보건, 지역적 질문 또는 관련된 해당되는 정부 기관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보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국가별로 정부 구조가 다르며, 따라서 개별 국가는 자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IP 전략의 요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경쟁하고 번성하여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이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IP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조, 엔지니어링, 첨단기술 부문, 서비스 및 창조 산업의 요구, 그리고 국가 고유의 문화 및 기타 제품으로부터 혜택을 창출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학 연구의 결실이 산업계에 의한 제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기술 이전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창작자(저자, 공연자), 발명가, 제조업자, 출판사 및 제작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된 조직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당될 경우(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공동 관리의 경우와 같이) 권리의 관리(management)도 포함된다.

IP 전략을 작성하기 전에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함께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필요하다. 현재 IP 활동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IP 전략을 구현하려면 인정된 프로젝트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된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행동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계획은 이해관계자가 프로그램에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식별된 변경 사항이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에는 식별된 목표가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는 방법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포함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도국 등에 국가 IP 전략 수립을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절차와 IP 환경분석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지표를 정리하였다. 이는 국가 IP 전략 수립을 위한 하나의 모델에 해당하며, 우리나라가 개도국 등에 국가 IP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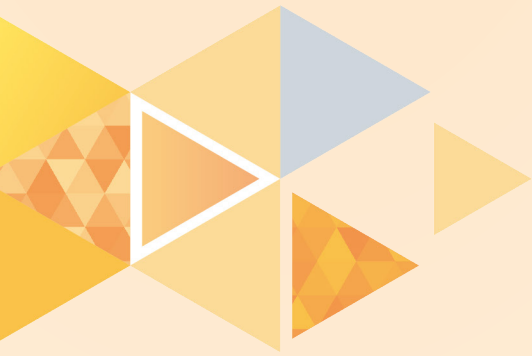
- 김송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ISSUE & FOCUS on IP.
- 김혁준 외 6인, “주요 선진국 지식재산전략의 추진성과분석 및 한국전략에의 적용가능성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 심현주, “일본지적재산전략비전 및 지적재산추진계획 2019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심층분석 보고서」 제2019-16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8.
- 유예리, “중국의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의 주요 내용”, 맞춤형 법제정보.
- EUIPO, IPR-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2019.
- KALANJE, Christopher M.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innovation and new product developmen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06.
- USPTO,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2016 Update, 2016.
- USPTO,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2016 Update; EPO and EUIP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 Industry-level Analysis Report, 2nd edition, 2016.
- WIPO, Methodology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2016.
- 2017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우리나라 지식재산전략”, 2017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7.
- 국가지식재산연구원, 제2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지침, 2016. 4.
- 국가지식재산위원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및 업무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3. 12.
- 国务院, 『2018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 2018. 11.
-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2018 인터넷 시장 감독관리 특별행동 방안” 2018. 6.
- 지식재산연구원,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2~16) 및 '16년도 시행계획 점검·진단 연구, 2017.
- 지식재산연구원, 제1차 지식재산기본계획 추진 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2017.
- 지식재산연구원, 제2차 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2016. 12.
- 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に関する専門調査会에 관한 설치근거 및 구성원은 일본内閣官房内閣広報室 홈페이지 참조.(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senryaku_vision/. 2020.09.14.방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 지식재산전략비전(I)”, 「National IP Policy」 제2018-17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6.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 지식재산전략비전(II)”, 「National IP Policy」 제2018-17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6.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 국가지식산업권 등,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방안 발표”, 2014. 8.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강국전략강요 제정 방향 논의”, 2019. 10. 17.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비전”, 「National IP Policy」 제2013-10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6.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 & FOCUS on IP, 2016.

대외협력 - 국가별 환경분석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모델 연구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행인 권택민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화 02-2189-2600
홈페이지 www.kiip.re.kr
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대외협력

국가별 환경분석 ...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모델 연구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1544-8080 Fax : 042)489-0194
<http://www.kipo.go.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2189-2600 Fax : 02)2189-2694
<http://www.kiip.re.kr>

ISBN : 979-11-91116-33-5
DOI : 10.8080/P9791191116335